

Finance Solution?

2020 지방재정의 해답은?

LOCAL FINANCE ASSOCIATION

지방재정

MAGAZINE Vol. 49

특집 주제

2020년 지방재정의 전망과 운용 방향

LOFA의 도약

김동현 이사장 인터뷰

연간 Focus 논단

일본 자치단체의
공공시설관리 개혁



2020. No. 1

+

LOFA의 전망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나아갈 밝은 미래를 제시합니다.
대한민국을 이루는 각 지역과 그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씁니다.

LOFA C&A 2023 VISION

| LOFA C&A 전력경영 체계도 |



지방재정발전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지역경영을 뒷받침한다



회원과 함께 성장·발전하는
지방재정 및 옥외광고 전문기관



지속가능한
미래성장기반
구축

고객동행의
경영시스템
확립

사회적
가치창출 경영의
내재화

4대 전략목표

주력사업
고도화 및
미래 성장동력
발굴

지방재정 선진화
지원을 위한
조직역량 확대

상생과
협력 기반의
옥외광고진흥
선도

열린 경영혁신
지원체계 강화

- ① 회원 니즈를 반영한
공제사업 혁신 가속화
- ② 자산운용 전문성
제고로 수익창출
극대화
- ③ 전사적 역량 결집으로
신사업 발굴 본격화

- ① 지방재정 정책연구 및
조사·분석 기능 강화
- ② 회원에 대한
재정업무 지원
서비스 다양화

- ①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옥외광고 산업
육성 추진
- ② 국민 참여형 고품격
옥외광고 문화
확산 지원

- ① 조직성과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업무환경 조성
(소통·신뢰·혁신)
- ② 공동체 발전과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업 발굴 추진

핵심가치



열정
passion



고객중시
customer focus



신뢰
trust



전문성
professionalism



책임
responsibility

상호부조의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 및 재해복구지원을 위하여 1964년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공제이념을 바탕으로 상호지원하는 재해복구사업, 공공청사정비사업, 지방관공선사업, 손해배상공제사업, 지방회계통계사업 및 회원지원사업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인으로서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특별 법인입니다.

→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연혁 |

1960	1980	1990
1964. 06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사단법인 설립발기	1983. 01 공공청사정비사업 신설 1988. 06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법인 명칭 변경 1989. 06 공공시설 및 재산조성사업 추가	1992. 01 목적사업추가 및 상임이사제 등 실시 1993. 05 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국제협력업무 신설 1994. 01 지방관공선 공제사업 신설 1998. 02 지방자치단체배상공제사업 신설
1964. 09 사단법인 지방공유건물재해복구공제회 설립등기		
2000	2010	
2002. 10 사업명 변경 및 경영공시 명시	2010. 05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설립	2016. 02 지방회계통계센터 개소
2003. 05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정 (법률 제6872호)	2012. 09 창립 제48주년 기념식 및 CI 선포식 개최	2017. 05 지방회계전문기관 지정
2008. 01 옥외광고사업 추가	2013. 01 정관개정, 행정종합배상 공제사업 및 지역개발지원 공제사업 추가	2017. 07 시민안전공제사업 추가
2009. 12 공공청사정비공제사업 범위 확대	2014. 01 지방관공선건조비 사업 추가 2014. 09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기념 세미나 개최	2017. 08 건설공사공제사업 추가 2018. 12 공유재산 수탁기관 지정
	2015. 12 옥외광고 관련 통계작성지정기관 선정	2019. 05 지방계약 전문기관 지정 2019. 09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 | 주요 사업 |

Major Business



Business Organization

본부	부서	업무	전화번호
경영 혁신본부	기획조정부	회사 전사 안내	02-3274-0114
		지방재정 정책지원, '지방재정'지 관련 문의	02-3274-2045
		경영공시, 제규정 관련 문의	02-3274-2047
본부	부서	업무	전화번호
공제 사업본부	공제사업실	공제사업(재해, 영조물, 단체상해) 전반 문의	02-3274-2011
		시민안전공제사업, 건설공사공제사업 문의	02-3274-2013
		지방재정용자, 행정종합배상 문의	02-3274-2016
		e공제 시스템 및 회원 포털 문의	02-3274-2016
	공제보상부	보상 접수 및 보상일정 등 문의	02-3274-2023
	안전관리부	안전관리 컨설팅, BCMS컨설팅 사업 문의	02-3274-2052
	지방재산부	공유재산 수탁 등 지방재산 사업전반 문의	02-3274-2432
		공유재산 업무정보방, 법령집/편람 관련 문의	02-3274-2434
본부	부서	업무	전화번호
지방회계 통계센터	연구기획부	지방회계제도 개선 방안 및 정책 대안 연구 관련 문의	02-3274-2322
		재무분석 컨설팅 사업(원가, 재무지표) 관련 문의	02-3274-2321
		찾아가는 지방재정 세미나, 연구 관련 문의	02-3274-2323
	통계관리부	지방재정통계 산출·분석 및 DB 관련 문의	02-3274-2315
	지방교육부	지자체 회계 공무원 집합 교육	02-3274-2332
		지자체 회계 공무원 현장 교육	02-3274-2333
	계약지원부	지방계약e정보방, 계약 컨설팅 관련 문의	02-3274-2342
	계약연구부	지방계약제도 연구, 법령집/편람 관련 문의	02-3274-2352
본부		업무	전화번호
옥외 광고센터	옥외광고센터 관련 종합 문의		02-3274-2813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문의		02-3274-2846
	경관개선사업 관련 문의		02-3274-2851
시·도자부	소속	E-mail	전화번호
서울	자산관리과	seoul@lofa.or.kr	02-2133-3298
부산	회계재산담당관실	pusan@lofa.or.kr	051-888-2271
대구	회계과	daegu@lofa.or.kr	053-803-3095
인천	재산관리담당관실	inchon@lofa.or.kr	032-440-2704
광주	회계과	kwangju@lofa.or.kr	062-613-3136
대전	토지정보과	daejeon@lofa.or.kr	042-270-6493
울산	회계과	ulsan@lofa.or.kr	052-229-6372
세종	예산담당관실	less9862@lofa.or.kr	042-270-6493
경기	자산관리과	gyeonggi@lofa.or.kr	031-8008-4180
강원	회계과	gangwon@lofa.or.kr	033-249-2339
충북	회계과	chungbuk@lofa.or.kr	043-220-2836
충남	세정과	chungnam@lofa.or.kr	041-635-3645
전북	회계과	chonbuk@lofa.or.kr	063-280-2334
전남	회계과	chonnam@lofa.or.kr	061-286-3481
경북	회계과	kyongbuk@lofa.or.kr	054-880-8543
경남	회계과	kyongnam@lofa.or.kr	055-211-3857
제주	회계과	jeju@lofa.or.kr	064-710-6918

CONTENTS

2020

VOL. 49



지방재정



L

Local Finance

함께 키우는 지방재정

통권 49호(2020년 제1호) 격월간

발행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발행인 김동현(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발행일 2020년 3월 31일

디자인·제작 경성문화사

홈페이지 www.lofa.or.kr

전자책 서비스 홈페이지 ebook.lofa.or.kr

편집인 박병열(한국지방재정공제회 경영혁신본부장)

편집위원

이방무(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이창규(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장)

황순조(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

김경태(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장)

신현준(서울특별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곽채기(동국대학교 교수)

배정아(전남대학교 교수)

손희준(청주대학교 교수)

유태현(남서울대학교 교수)

이삼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LIMAC센터장)

이원희(한경대학교 교수)

주민수(한양대학교 교수)

편집부장 이종원(한국지방재정공제회 기획조정부장)

편집간사 지성현(한국지방재정공제회 기획조정부)

[특집 주제]
2020년
지방재정의 전망과
운용 방향

010 재정정책과

2020년 지방재정 및 예산 운용 방향

024 재정협력과

2020년 지방재정제도 운용 방향

046 교부세과

2020년 지방교부세제도 운용 방향

062 회계제도과

2020년 지방회계·계약 및 공유재산제도
운용 방향

076 지방자치단체 이슈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

084 정책 이슈

2020년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개정 내용

094 한눈에 보기

지방재정 경제 관련 학술논문



모바일에서도
격월간 〈지방재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



Orange Wing

오렌지 날개가 간다

100 LOFA의 도약

김동현 이사장 인터뷰

108 공제회 성공 인포그래픽

한눈에 보는 5대 신사업



Focus

지방재정은 지금

112 연간 Focus 논단

일본 자치단체의 공공시설관리
개혁

134 세계 속 현장

영국 지방재정의 최신 동향과 특성

150 글로벌 이슈

미국·핀란드 지방재정 현황

152 지방재정 Q&A

지방재정 질의회신 사례



And People

사람을 생각하는 지방재정

158 읽고 보고

HOT한 책과 넷플릭스 콘텐츠

162 건강 가이드

마스크 착용의 오해와 진실

164 U in life

미니멀리스트 유튜버 '히조'

168 일상의 재발견

유화 그리기

172 LOFA 뉴스

174 편집실에서





with LOFA

Local Finance

함께 키우는 지방재정

● 특집 주제 – 2020년 지방재정의 전망과 운용 방향

- 010 **– 재정정책과**
 2020년 지방재정 및 예산 운용 방향
- 024 **– 재정협력과**
 2020년 지방재정제도 운용 방향
- 046 **– 교부세과**
 2020년 지방교부세제도 운용 방향
- 062 **– 회계제도과**
 2020년 지방회계·계약 및 공유재산제도 운용 방향
- 076 **지방자치단체 이슈**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
- 084 **정책 이슈**
 2020년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개정 내용
- 094 **한눈에 보기**
 지방재정 경제 관련 학술논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재정 지원 서비스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제사업과 지원 서비스를 통해 지방재정을 튼튼히,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 이방무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2020년 지방재정 및 예산 운용 방향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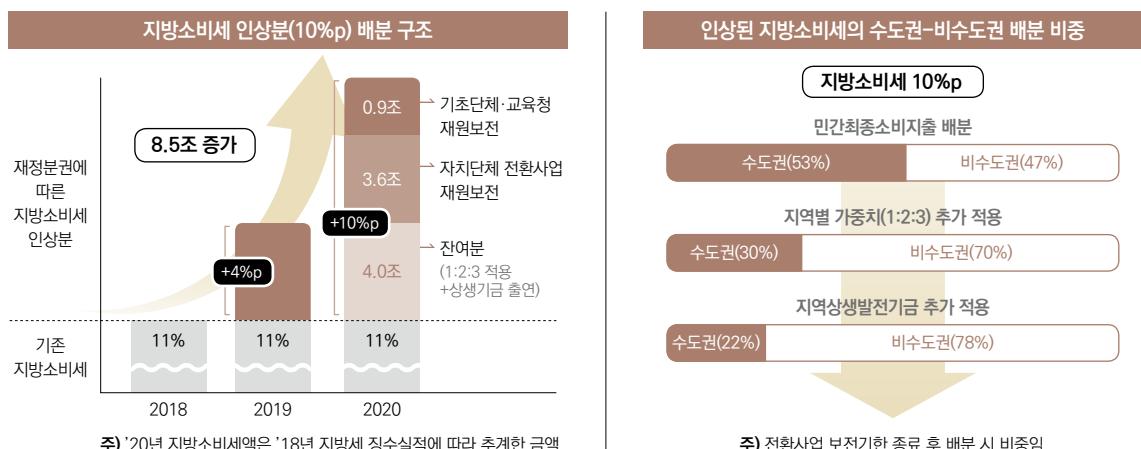
전 세계 경제의 저성장 국면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지방재정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2020년 당초 예산 규모(순계 기준)는 전년 대비 9.6% 증가한 약 253조 원에 달한다. 또한, 2020년은 지방재정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되는 해이다. 지난해 재정분권 1단계가 마무리되어 올해 지방세가 대폭 확충되었고, 지방재정 순기 개혁 등 다양한 재정제도 개혁의 효과가 2020년 예산에 반영되었다. 본지에서는 2020년 전반적인 지방재정 및 예산 운용 방향을 중심으로 주요한 지방재정 제도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I. 서론

지난해 12월,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등 7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역 사적인 1단계 재정분권이 마무리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10%p 인상되어 8.5조 원 규모의 지방세가 확충되는 한편, 3.6조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높아졌다. 이로써 국세 대 지방세의 비중이 '18년 기준 78:22에서 '20년 75:25로 개선되었다. 아울러, 인상된 지방소비세는 지역별 기증치를 적용하여 비수도권에 많이 배분되고, 수도권은 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함으로써 균형발전을 도모하였다. 현재는 추가적인 지방세 확충과 지방이양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치분권위원회 산하에 TF를 구성해 운영되고 있다. 작년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지방재정 운영 일정이 전면 개편되면서 재정 여건이 최대한 반영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가능케 되었다는 점이다. 교부세 통보와 재정분석이 3개월 앞당겨지고, 예산편성 지침 및 중기 지방재정 계획 지침도 당겨졌다. 이로써 2020년 예산에 정확성과 예측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1단계 재정분권 내용



한편, 지방재정의 규모가 커지면서, 지방재정이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에 서의 역할 또한 증대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2020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및 예산 현황을 개관하고, 예산편성 기준, 지방투자 심사, 지방채, 주민참여예산제 등 지방재정 제도 개선 방향도 살펴보고자 한다.

II. 2020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및 예산 현황

1. 2020년도 통합재정 현황

통합재정 규모는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과 기금을 합한 재정 규모에서 이월금, 보전거래 등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것으로, 당해 회계 연도의 정확한 재정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이에, 지난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 규모를 관리하고 있다.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 수입 규모는 229조 5,8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조 1,852억 원(11.1%) 증가하였고, 통합재정 지출은 252조 2,7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조 5,255억 원(10.3%) 증가하였다. 통합재정수지는 22조 6,863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순세계잉여금을 수입에 포함한 재정수지도 4조 9,178억 원의 적자로 전망된다.

〈표 1〉 통합재정수지 (단위 : 억 원, %)

구 분	2019년		2020년 (C)	증감	
	당초(A)	최종(B)		C-A	C-B
통합재정수지(I)	△223,460	△296,936	△226,863	△3,403	70,072
통합재정 수입	2,084,028	2,332,523	2,295,880	211,852	△36,643
통합재정 지출	2,307,488	2,629,459	2,522,743	215,255	△106,716
순세계잉여금	200,686	338,469	177,685	△23,001	△160,783
통합재정수지(II)	△22,774	41,533	△49,178	△26,404	△90,711

통합재정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통합재정 수입에서는 일반회계가 203조 7,165억 원으로 전체의 88.7%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특별회계 10.3%, 기금 1.0% 순이다. 통합재정 지출에서는 일반회계가 197조 5,403억 원으로 78.3%를, 특별회계와 기금이 각각 19.8%, 1.9%를 차지한다.

〈표 2〉 회계별 통합재정 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2019년		2020년 (C)	증감	
	당초(A)	최종(B)		C-A	C-B
통합재정 수입	2,084,028	2,332,523	2,295,880	211,852	△36,643
일반회계	1,843,968	2,074,460	2,037,165	193,197	△37,295
특별회계	217,741	232,485	236,211	18,470	3,726
기금	22,319	25,578	22,504	185	△3,074
통합재정 지출	2,307,488	2,629,459	2,522,743	215,255	△106,716
일반회계	1,794,210	2,048,899	1,975,403	181,192	△73,496
특별회계	471,498	526,676	499,064	27,565	△27,613
기금	41,779	53,884	48,277	6,497	△5,607

자치단체 유형별로 보면 특별시, 광역시와 도는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반면, 기초단체가 없는 특별자치시(세종)와 특별자치도(제주) 및 시·군·자치구는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시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광역-기초 자치단체 간의 재원 이전 때문이다.

〈표 3〉 자치단체 유형별 통합재정 현황

(단위 : 억 원)

구 分	2019년		2020년 (C)	증감	
	당초(A)	최종(B)		C-A	C-B
통합재정 수입	2,084,028	2,332,523	2,295,880	211,852	△36,643
특별시	282,941	279,517	302,005	19,064	22,488
광역시	375,759	407,776	412,145	36,386	4,369
특별자치시	11,513	12,260	11,733	221	△527
도	663,987	746,934	736,191	72,204	△10,743
특별자치도	47,580	50,716	49,998	2,417	△718
시	423,652	506,963	468,355	44,704	△38,608
군	191,769	233,622	215,833	24,064	△17,789
자치구	86,827	94,735	99,620	12,793	4,885
통합재정 지출	2,307,488	2,629,459	2,522,743	215,255	△106,716
특별시	196,400	210,994	212,083	15,684	1,090
광역시	227,711	251,987	249,765	22,054	△2,222
특별자치시	14,695	16,152	15,167	472	△985
도	249,591	281,863	267,392	17,801	△14,471
특별자치도	50,723	55,001	56,191	5,468	1,190
시	822,351	970,553	905,946	83,595	△64,607
군	358,702	429,047	396,210	37,508	△32,837
자치구	387,314	413,863	419,989	32,675	6,126

수입과 지출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2020년 수입의 경우 지방세(39.6%), 보조금(26.5%), 지방교부세(21.5%), 세외수입(10.9%) 순으로 비중이 높고, 지출은 사회복지(29.8%), 인력운영비(12.5%), 환경보호(10.1%) 순으로 나타난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총 75조 1,2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9조 78억 원(13.6%)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렇듯 사회복지 분야, 인력운영비 등 경직성이 높은 항목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방재정의 지출 경직도가 높고 가용 재원의 규모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표 4〉 분야별 통합재정 현황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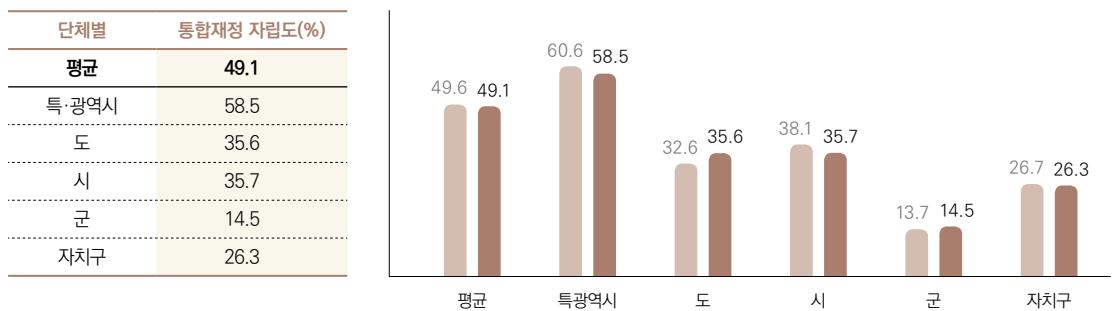
구 분	2019년		2020년 (C)	증감	
	당초(A)	최종(B)		C-A	C-B
통합재정 수입	2,084,028	2,332,523	2,295,880	211,852	△36,643
지방세	830,387	855,359	909,501	79,114	54,142
세외수입	235,007	270,709	250,539	15,532	△20,170
지방교부세	432,954	561,822	493,320	60,366	△68,501
보조금	549,963	607,718	608,005	58,042	288
융자회수 등	35,715	36,915	34,514	△1,201	△2,402
통합재정 지출	2,307,488	2,629,459	2,522,743	215,255	△106,716
일반공공행정	112,035	137,614	123,831	11,796	△13,783
공공질서및안전	37,843	52,776	41,423	3,580	△11,353
교육	134,461	148,334	139,438	4,978	△8,896
문화및관광	108,920	140,491	120,302	11,382	△20,188
환경보호	223,908	273,242	254,764	30,856	△18,478
사회복지	661,191	714,240	751,269	90,078	37,029
보건	37,608	41,558	40,546	2,938	△1,012
농림해양수산	143,477	181,178	160,475	16,997	△20,704
산업·중소기업	59,300	81,860	75,080	15,780	△6,780
수송및교통	181,007	233,920	194,590	13,583	△39,330
국토및지역개발	165,501	224,638	174,642	9,140	△49,996
과학기술	5,579	6,680	3,725	△1,854	△2,955
예비비	55,744	53,427	45,483	△10,260	△7,944
인력운영비	298,946	298,366	315,350	16,404	16,984
기본경비 등	81,967	41,133	81,825	△142	40,692

주) 융자회수 등 = 융자회수 + 공사공단 전입금 +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한편 통합재정 수입 대비 자체 수입의 비중인 통합재정 자립도는 49.1%로, 2019년 49.6% 대비 0.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세외수입(재산매각수입 제외) 등 자체 수입의 증가보다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이전 수입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표 5〉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통합재정 자립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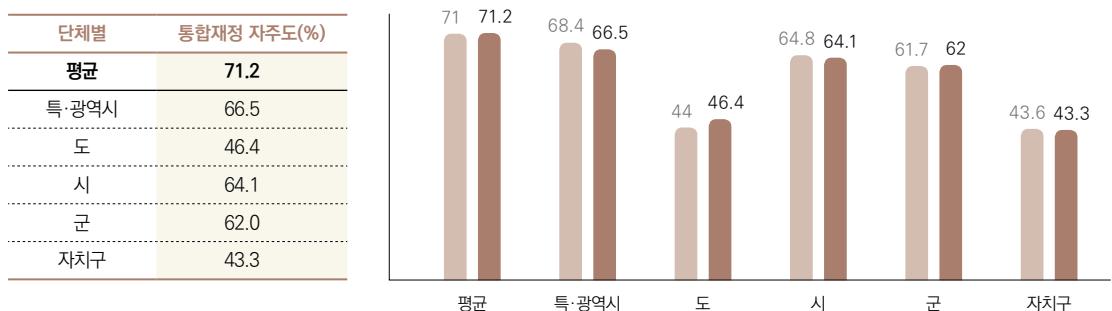
■ 2019년 ■ 2020년, 단위: %



통합재정 수입 대비 자주 재원 비중인 통합재정 자주도는 2019년 71.0%에서 0.2%p 증가한 71.2%로 나타났다. 자주 재원은 자체 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으로 구성된다.

〈표 6〉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통합재정 자주도 현황

■ 2019년 ■ 2020년, 단위: %



2. 2020년도 지방예산 개요

2020년도 당초 예산 순계 규모는 잠정 253조 2,263억 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 231조 152억 원에 비해 22조 2,111억 원(9.6%) 증가한 규모이다. 이로써 2018년 이후 3개년 연속 9%가 넘는 예산 규모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세입 여건이 크게 나빠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재정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7〉 예산 규모 변동 추이

(단위: 억 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전년 대비	2019년	전년 대비	2020년	전년 대비
당초 예산(A)	1,931,532	2,106,784	9.1	2,310,152	9.7	2,532,263	9.6
최종 예산(B)	2,279,676	2,431,210	6.6	2,720,533	11.9	-	-
((B-A)/A)	18	15.4	-	17.8	-	-	-

다음으로 연도별·세입자원별 규모를 살펴보면, 자체 수입의 비중이 2019년도 대비 10.1% 증가하였으며, 이전 수입은 전년 대비 12.1% 증가하였다.



〈표 8〉 연도별·세입재원별 순계예산 규모

(단위: 억 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전년 대비	2017년	전년 대비	2018년	전년 대비	2019년	전년 대비	2020년	전년 대비
계	1,732,590	1,845,825	6.5	1,931,532	4.6	2,106,784	9.1	2,310,152	9.7	2,532,263	9.6
	1,999,764	2,147,816	7.4	2,279,676	6.1	2,431,210	6.6	2,720,533	11.9	-	-
자체수입	797,012	866,726	8.7	935,253	7.9	1,006,057	7.6	1,044,104	3.8	1,150,043	10.1
	898,123	951,213	5.9	1,008,350	6.0	1,060,003	5.1	1,115,164	5.2	-	-
지방세	594,523	648,401	9.1	711,891	9.8	779,140	9.4	818,267	5.0	909,501	11.1
	649,029	689,207	6.2	750,239	8.9	799,525	6.6	855,359	7.0	-	-
세외수입	202,489	218,326	7.8	223,362	2.3	226,917	1.6	225,837	△0.5	240,541	6.5
	249,095	262,006	5.2	258,111	△1.5	260,477	0.9	259,804	△0.3	-	-
이전수입	733,766	749,718	2.2	778,057	3.8	858,760	10.4	982,652	14.4	1,101,193	12.1
	783,169	824,187	5.2	901,666	9.4	977,629	8.4	1,169,021	19.6	-	-
지방교부세	315,849	319,527	1.2	337,384	5.6	378,699	12.2	432,954	14.3	493,705	14.0
	342,200	373,103	9.0	433,792	16.3	478,986	10.4	561,809	17.3	-	-
보조금	417,917	430,191	2.9	440,673	2.4	480,061	8.9	549,698	14.5	607,488	10.5
	440,969	451,085	2.3	467,874	3.7	498,643	6.6	607,212	21.8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3,605	191,615	24.7	195,465	2.0	222,062	13.6	246,108	10.8	225,423	△8.4
	262,957	331,843	26.2	345,484	4.1	372,948	7.9	396,032	6.2	-	-
지방채	48,207	37,766	△21.7	22,757	△39.7	19,905	△12.5	37,287	87.3	55,605	49.1
	55,515	40,573	△26.9	24,176	△40.4	20,631	△14.7	40,316	95.4	-	-

주) 상단은 당초 예산, 하단은 최종 예산

지역별로는 경기도 예산이 50조 8,380억 원으로 전체 자치단체 예산의 20.1%를 차지하여 가장 높고, 서울특별시 예산이 40조 2,358억 원(15.9%)으로 그다음이다. 인천광역시의 12조 5,356억 원을 합친 수도권의 예산 규모는 103조 6,09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0.9%를 차지하고 있다.

〈표 9〉 시·도별(기초 포함) 예산 규모

(단위 : 억 원)

시·도별	순 계	총 계 (A+B)	일반회계 (A)	특별회계(B)	
				기 타	공기업
합 계	2,532,263	3,450,197	2,901,536	364,324	184,337
특별시계	402,358	570,386	436,574	116,415	17,397
서울특별시	402,358	570,386	436,574	116,415	17,397
광역시계	526,378	729,615	609,342	81,326	38,949
부산광역시	137,745	190,695	159,176	23,313	8,206
대구광역시	99,163	138,072	114,189	15,318	8,565
인천광역시	125,356	174,134	139,942	21,650	12,543
주광역시	59,923	82,776	70,735	8,953	3,088
대전광역시	56,987	80,647	70,396	7,042	3,209
울산광역시	47,204	63,291	54,904	5,050	3,338
특별자치시계	15,210	16,051	12,006	2,432	1,613
세종특별자치시	15,210	16,051	12,006	2,432	1,613
특별자치도계	56,473	58,229	49,753	4,034	4,442
제주특별자치도	56,473	58,229	49,753	4,034	4,442
도 계	1,531,844	2,075,916	1,793,862	160,120	121,936
경기도	508,380	684,509	557,100	63,813	63,597
강원도	121,861	161,817	144,380	9,663	7,775
충청북도	96,081	131,363	115,415	9,346	6,602
충청남도	133,623	180,892	161,099	10,706	9,087
전라북도	130,089	179,431	163,097	9,751	6,583
전라남도	159,745	215,293	194,614	14,961	5,718
경상북도	192,540	264,631	231,478	22,091	11,062
경상남도	189,525	257,980	226,679	19,789	11,512



III. 2020 지방재정 제도 개선 및 운용 방향

1. 예산편성 운영기준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담긴 지방재정운용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지역경제 활력제고 및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적극적 지방재정 운용’을 통한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여 3+1 전략과 15개 세부 과제를 선정하였다(그림 2 참조). 주요 내용은 첫째,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등 4개 과제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고 둘째,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4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셋째, 살기 좋은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3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운용 과제로는 재정운용의 계획성 제고, 주민참여 및 공개 등을 통한 책임성 강화 등 4가지 핵심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번 예산편성 기준에서 달라진 점 중에서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지방의원의 역량과 책임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원 국외여비 위법집행 시 폐널티 적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정책개발비를 신설하였다. 국외여비 폐널티 관련 제재 수단은 의원 국외여비 삭감, 주민 공개 등 다

〈그림 2〉 지방재정 운용 기본방향

2020년도 지방재정 운용 기본방향

“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 ”

적극적 지방재정 운용을 통한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전략 1 활력 있는 지역경제

-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전략 2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 양극화 해소
- 주민참여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 정보기술 활용 인구 감소 지역 협약 해결

전략 3 살기 좋은 안전환경

- 생활SOC 등 투자 확대
-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강화
- 미세먼지 저감 등 투자 확대

재정 운용 적극적 지방재정

- 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계획성 제고
- 주민참여 및 공개 등을 통한 책임성 강화
- 세출 구조조정 및 지출관리 강화 등 건전성 제고
- 지방자치단체 세입 확충

양한 방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업무수행경비 및 업무추진비 관련 명확하지 못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보좌기관에도 보조기관과 같이 동일한 기준으로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4급 합의 제행정기관에 대해서도 기관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다. 셋째, 이번에 1단계 재정분권으로 인해 지방으로 이양되는 3.6조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양된 국고보조사업들은 보조금 총액한도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사업에서 이양된 보조금 사업들은 e-호조에서 구분해 표시하여 모니터링 및 관리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넷째, 이·통장들의 역할 확대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이·통장 수당 상한액을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하였다. 이·통장 수당 상한액은 2004년 월 20만 원으로 책정된 이후 15년 동안 인상되지 못했었다. 그 외에도 사회보장적수혜금 편성 범위를 확대하여 금전적 보상금 외에 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관련 급여를 신설·변경할 경우에는 관련 부처와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2. 지방재정 투자심사

투자심사제도는 신규 투자사업, 청사·문화·체육시설 건립, 행사성 사업 등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으며,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의 사업은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미리 받고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객관성을 제고하고 있다. 올해는 투자심사제도를 내실화하면서도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투자심사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투자심사 다음 연도를 3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재심사 없이 지방채 조달 계획을 신설할 수 있는 범위를 자체 재원의 40%에서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타제도와의 합리적 관계 정립을 위해 국무회의를 거쳐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에 투자심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리고 학교 복합화 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를 행안부와 교육부 각각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것을 공동 투자심사위 등의 구성을 통해 단일화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정비하여 관련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과 부령에 명시할 계획이다. 셋째,

환경 변화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타당성 조사 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계획이다. 사회적 가치 항목인 형평성, 지역공동체, 일자리, 환경, 안전 등을 정책적 분석 틀 내에 신설·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체크리스트 항목, 지표·지수 등)을 개발하여 매뉴얼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넷째, 자치단체 지원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중앙투자심사의 횟수를 확대하고(정기 3회 → 4회 / 수시 3회 → 4회), 조사 기관 단축 및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기관을 복수로 추가 지정하는 한편, 지방 공공투자사업관리센터의 역량강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자체 투자심사 내실화를 위해 심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지방의회, 지역주민의 감시를 강화하고, 일정금액 이상 사업은 이력관리를 통해 사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지방채무 관리제도

지방채무는 지방채(지방채증권+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이행책임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결산 기준으로 24.5조 원이다. 그동안 재정건전화 노력에 따라 지방채무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나, 최근 확장적 지방재정 기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10〉 연도별 지방채무

(단위 : 조 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8.0	27.9	26.4	25.3	24.5
지방채 27.7	지방채 27.7	지방채 26.3	지방채 25.2	지방채 24.48
채무부담 0.2	채무부담 0.1	보증채무이행 0.1	보증채무이행 0.1	채무부담 0.02
보증채무이행 0.1	보증채무이행 0.1			보증채무이행 0.04

한편, 올해 1월에 지방채 발행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시행령 개정을 4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권한이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자치단체장으로 변경되고, 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협의만 거치면 초과 발행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예산 대비 채무 비율 25% 이상의 초과 발행은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제를 유지한다.



4. 주민참여예산 및 예산낭비 신고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지방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은 자치단체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0.2조 증가한 1.6조 규모이고 주민제안 건수도 전년 대비 1만여 건이 증가한 4만 9천여 건이다. 또한, 주민참여예산기구도 224개로 전년 대비 10개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예산 대비 0.6%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전히 활성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올해에도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상시 컨설팅을 활성화하고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연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환류 등 전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실시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는 잘되지 않았던 집행과 결산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 운용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올해 1월 공포·시행됨에 따라 공개를 확대해 나갈 뿐만 아니라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예산낭비를 막고 감시하기 위한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3기가 지난해 출범하여 운영 중에 있다. 300여 명의 감시단이 위촉되었으며, 900여 명의 시·도 감시단과 긴밀히 연계하여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지방 예산낭비신고 포상금지급 규정을 마련하여 한도 1,000만 원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 및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등 주민감시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할 예정이다.

IV. 결론

2020년 새로운 기대를 안고 시작했던 지방재정은 예산을 집행하기 시작한 지 2개월도 안 되어 커다란 위기를 맞이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전염병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충격을 받고 있고, 지역경제도 심각한 위협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방역에 힘쓰면서도 급격하게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속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 이미 약 3,050억 원의 자체 재원을 집행하였으며(3월 25일 기준), 향후 약 1조 3,600억 원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생계를 보전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하고 있다. 1차 추경의 규모도 전국적으로 18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의 위기로 국가재정은 물론 지방재정도 시험대에 올랐다. 어려운 세입 여건하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쓸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방법을 찾기가 쉽지는 않다. 변화된 여건에 맞게 최대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부족할 경우 기금으로부터 융자를 받거나 지방채 발행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방재정이 충실히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



✓ 이창규

☰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장

2020년 지방재정제도 운용 방향



I. 서론

2020년도 지방재정의 화두는 그동안 예측된 세입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짜고 이러한 예산을 문제없이 단순 집행하는 것에서 벗어나,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와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에 대한 것이다. 지방재정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 231조 원이었던 지방예산이 올해는 250조 원으로 증가하였고 연평균 8% 정도의 가파른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완료된 1단계 재정분권의 영향으로 기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1%를 지방소비세로 받던 지방자치단체가 올해부터 21%를 받게 되었고 총액 규모로 8조 원이 넘는 국가 재원이 지방 재원으로 넘어오게 된다.

이렇게 커진 지방재정의 규모와 함께 지방재정의 효율적이고 과감하고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지난해 국가 GDP 성장을 이끄는 데에 국가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중요한 뒷을 담당하였고, 실제로 재정이 현장에서 집행되는 지방자치단체, 그중에서도 기초자치단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2020년도 지방재정제도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50조 원에 달하는 지방예산이 적시에 적재적소에 남김없이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II.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 개편

1. 제도운영 현황

2010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경제위기로 우리나라 역시 영향을 받아, 국가재정뿐만 아니라 지방세수 감소 및 지방채무 급증 등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고,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즉,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중 채무 등에 대해 재정위험 수준을 점검해야 하는데, 점검 대상은 다음과 같다(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

1) 가목의 금액을 나목의 금액으로 나눈 비율(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 가. 해당 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순(純)지출에서 순수입을 뺀 금액
- 나. 해당 연도 순지출과 순용자를 합한 금액

2) 가목의 합계액을 나목의 예산액으로 나눈 비율(예산 대비 채무 비율)

- 가.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 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지방자치단체가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시행자(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자’라 한다)에게 순지방비로 지급해야 할 총액 및 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액의 총합계액
- 나. 해당 연도 최종 예산액

3) 가목의 금액을 나목의 금액으로 나눈 비율(채무상환비 비율)

- 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미래 4년간 순지방비 채무상환액(임대형 민자사업
자에게 순지방비로 지급해야 할 총액을 포함한다)의 연평균 금액
- 나. 가목과 같은 기간의 경상 일반 재원(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지방세, 행정안
전부 장관이 정하는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총 합계
액을 말한다)의 연평균 수입 예상 금액

**4) 해당 연도 분기별 지방세 누적 징수율(과년도분 과오납환급금을 차감한 실제 누적
징수율을 말함. 지방세 징수율)****5) 해당 연도 분기별 금고의 총 잔액을 최근 3년간 해당 분기별 평균 금고 총 잔액으로
나눈 비율(금고 잔액 비율)****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 순자산 대비 부채 비율(공기업
부채 비율)**

위 항목에 대해 전 지방자치단체를 점검한 결과 재정위험 수준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단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2.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3. 채무상환비 비율이 100분의 12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4. 지방세 징수율이 100분의 8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5. 금고 잔액 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6. 공기업 부채 비율이 100분의 40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 재정진단을 실시한 결과 등을 토대로 지방재정위
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재정위기단체 :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1.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2.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3. 채무상환비 비율이 100분의 17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4. 지방세 징수율이 100분의 7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5. 금고 잔액 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6. 공기업 부채 비율이 100분의 60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주의단체 :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재정의 건전성 또는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1.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100분의 25~100분의 30인 지방자치단체
2.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00분의 25~100분의 40인 지방자치단체
3. 채무상환비 비율이 100분의 12~100분의 17인 지방자치단체
4. 지방세 징수율이 100분의 70~100분의 80인 지방자치단체
5. 금고 잔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인 지방자치단체
6. 공기업 부채 비율이 100분의 400~100분의 600인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단체 및 재정주의단체 지정 기준

관점	재정 지표	산정 방식	주의단체 기준	위기단체 기준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세입-지출 및 순용자)/ 통합재정 규모	25%초과	30%초과
채무관리	예산 대비 채무 비율	지방채무 잔액/총예산	25%초과	40%초과
	채무상환비 비율	지방채무 상환액/일반 재원	12%초과	17%초과
세입관리	지방세 징수율	당해 연도 지방세 징수액/ 당해 연도 지방세 부과액	80%미만	70%미만
자금관리	금고 잔액 현황	당해 연도 분기말 잔고/ 최근 3년 평균 분기 말 잔고	20%미만	10%미만
공기업	공기업 부채 비율	부채/순자산	400%초과	600%초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방채 발행이나 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 등 여러 활동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된다.

2.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5년에 부산·대구·인천광역시, 태백시가 예산 대비 채무 비율 주의 기준(25%) 초과로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이후 재정 지표 개선으로 부산·대구(2016년 5월), 태백(2016년 12월), 인천(2018년 2월) 모두 재정주의단체에서 해제되었다.

이 기간에 해당 자치단체들은 각자 수립한 재정 건전화 계획에 따라 지방채 무 규모 및 비율 감소(부산, 대구, 인천, 태백)를 이행하였고, 지방채 상환액 대비 축소 발행을 통한 채무 감축(부산, 대구), 지방채 발행 상한제 및 억제(부산, 인천), 순세계 잉여금의 기금 적립(부산, 대구), 지방채 및 보증채무이행액 조기 상환(인천, 태백) 등의 자구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듯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라는 목표 달성을 있어서 작지 않은 성과를 거둔 바 있고, 지방재정이 무리 없이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제도 존립의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2015년 이후에는 현행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기준을 벗어나 재정주의단체 또는 위기단체로 지정된 자치단체가 하나도 없는 등 관리 기준들이 현 지방재정의 운용 상황에 부합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인 제한 기준들을 설정해 놓은 것이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이고도 중장기적으로 재정 위기 상황을 스스로 예측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 운용의 기본 틀을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3. 제도 개편 방향

첫째, 현행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에 위협이 되고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지표화하여 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정 위기를 예측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로부터 확보하는 국고보조금에 대해 시도비 또는 시군구비를 얼마나 매칭하고 있고 이 금액이 매년 얼마나 증감하는가에 대한 사항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내려주는

국고보조금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기초연금 등 복지지출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치단체가 이러한 국고보조금에 대해 매칭하는 지방비 역시 급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 대비 국고보조금 비율’ 또는 ‘자주 재원 대비 지방비 매칭 비율’ 등을 지표화하여, 전년 대비 급증하였거나 재정 상황이 유사한 타 자치단체보다 많은 비율을 부담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향후 지방재정에 미칠 위기 요인을 미리 점검하여 대비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전체 지방예산에서 경직성 경비인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10년 33.4% → '19년 34.7%)함으로써 인해 지방예산 운영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보편복지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18년 대비 '19년 지방대응비가 23.5조 원에서 26.5조 원으로 3.0조 원이나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연도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현황

(당초 예산 기준/ 단위: 조 원)

구 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연증가율
지방예산(A)	139.9	141.0	151.1	156.9	163.6	173.3	184.6	193.2	210.7	231.0	5.7%
국고보조사업(B) (비중 B/A)	46.7 (33.4%)	48.6 (34.5%)	52.6 (34.8%)	56.7 (36.2%)	61.1 (37.3%)	64.4 (37.2%)	67.1 (36.4%)	65.2 (33.8%)	70.7 (33.5%)	80.1 (34.7%)	6.2%
국고보조금 (구성비)	29.2 (63%)	30.1 (62%)	32.1 (61%)	34.0 (60%)	37.8 (62%)	41.4 (64%)	42.8 (64%)	43.5 (67%)	47.2 (67%)	53.6 (67%)	7.0%
지방비 (구성비)	17.5 (37%)	18.5 (38%)	20.6 (39%)	22.7 (40%)	23.3 (38%)	23.0 (36%)	24.3 (36%)	21.7 (33%)	23.5 (33%)	26.5 (33%)	4.7%

자료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10년~'19년)

또 하나 검토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자치단체의 인구 증감,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에 관련된 사항이다. 자치단체의 인구 규모는 지방 세입 및 교부세 산정 등의 근간이 되는데, 이러한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우 지방재정의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노령인구 비율 또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데, 급속한 노령화로 인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 지출이 급증하거나 기초연금 등 국가복지사업 의무 매칭 비가 급증하게 된다. 따라서 ‘인구 증감률 및 인구 규모’ 또는 ‘노령인구 비율 및 사회복지비지수’ 등을 지표로 하여 이에 대한 변화 추세를 지속적으로 자치단체

가 체크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국가의 복지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지방예산 중 복지지출 비중 역시 ('10) 20.6% → ('15) 27.0% → ('19) 30.2%로 증가하였다. 즉 국가의 복지지출도 증가했으나 지방은 더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2010에서 2019년까지의 국가 복지지출 연평균 증가율이 7.9%인데 반해 지방은 10.4%로 더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연도별 복지지출 비중

(당초 예산 기준/ 단위: 조 원)

구 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연증가율
중앙 총지출(A)	292.8	309.1	325.4	342.0	355.8	375.4	386.4	400.5	428.8	469.6	5.4%
복지지출(B) (비중 B/A)	81.2 (27.7%)	86.4 (28.0%)	92.6 (28.5%)	97.4 (28.5%)	106.4 (29.9%)	115.7 (30.8%)	123.4 (31.9%)	129.5 (32.3%)	144.7 (33.7%)	161.0 (34.3%)	7.9%
지방 지출(A)	139.9	141.0	151.1	156.9	163.6	173.3	184.6	193.2	210.7	231.0	5.7%
복지지출(B) (비중 B/A)	28.8 (20.6%)	30.5 (21.6%)	33.0 (21.8%)	37.3 (26.0%)	42.5 (26.0%)	46.8 (27.0%)	49.5 (26.8%)	52.6 (27.2%)	60.7 (28.8%)	69.9 (30.2%)	10.4%

※ (중앙) 보건·복지 분야 VS (지방) 사회복지 분야와 보건 분야 합계

자료 나라살림 예산 개요(기재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둘째, 현행 지방재정 위기관리 기준에 대해서도 일부 개편을 검토하고자 한다. 위기관리 기준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1) 실제 위기 상황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2)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정 활동이 반영되어야 하며, 3) 중앙부처로부터의 재정분석·진단과 동시에 각 자치단체가 재정 상황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자체 평가 기능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현재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지표의 경우, 실제 자치 단체의 재정압박 정도를 보여주고 있지 않으므로 전체 수지가 아닌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한 지표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의 경우, 지방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날로 중요시되고,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용지를 지방채 발행을 통해 매입하고자 하는 자치단체가 증가하는 추세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재정주의단체 지정 요건인 25% 비율 등을 보다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공기업 부채 비율 지표의 경우, 일반회계 외에서 발생하는 공기업 활동에 대한 재무건전성 지표로서 별도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400% 기

준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분석 등 기준의 지방재정 관리제도와의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지방재정 분석 결과 일부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자치단체의 경우, 부진하게 평가된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재정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담당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자치단체에 맞춤형으로 여러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 위기관리 지표들을 새로 발굴하고 이러한 지표들을 자치단체 스스로 점검하며, 장래에 지방재정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것들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재정컨설팅을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해 체계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인다.



III. 지방재정분석제도 운영 개선

1. 2019년도 재정분석 결과

지방재정분석제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및 성과를 전년도 결산 자료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대표적인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로서, 분석 결과 우수단체에 특교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부진단체 대상으로는 재정진단을 하거나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함으로써 지방 재정의 건전성·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재정분석·진단제도 절차



지난해에는 지방재정분석 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을 개선하였는데 이를 다시 정리해 보면, 첫째, 분석 결과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적시 활용되고 지역 주민에 의한 지방재정 평가·감시에 제때 활용될 수 있도록 매년 말에 공개되던 결과를 3개월 앞당겨 발표하였다. 통상 자치단체가 다음 연도 예산을 당해 연도 10 월에 편성하므로 분석 결과가 자치단체 예산안 편성 및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에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었다 하겠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현행				지표 개선 TF	지표 공개	편람 발간	지표 입력 협동 작업	현지 실사				결과 발표
순기 조정			지표 개선 TF 지표 공개	편람 발간	지표 입력 협동 작업	현지 실사	결과 발표					

둘째, 재정 여건이 상이한 자치단체끼리 경쟁하는 불합리함을 방지하고 유형 분류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분류 기준을 개편하고 유형을 다양화하였다. 즉, 기존 행정 단위별(시·군·구)로 이루어진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인구·재정 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별 평가로 개편함으로써 분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자치 단체 간의 상호 견전한 경쟁을 촉진하며 우수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8년 분류 기준		2019년 분류 기준	
동태 지표	·인구 규모(19%) ·재정력지수(19%) ·세출 규모(19%) ·예산 규모(19%) ·지방세 규모(19%)	동태 지표	·인구 규모(35%) ·인구증감률(10%) ·(추가)노령인구 비율(5%)
정태 지표	·인구증감률(5%)	정태 지표	·재정력지수(35%) ·세출결산 규모(10%) ·(추가)사회복지비 비율(5%)

예를 들면, 그간의 행정단위별 평가에서는 경기 성남시와 수원시가 경북 문경시, 충남 논산시 등과 함께 평가되었으나, 평가 방식 개편으로 성남시와 수원시는 시-I 유형, 문경시와 논산시는 시-IV 유형으로 분류되어 인구·재정 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 간 평가가 이루어졌다.

셋째, 1년에 한 차례 실시하는 분석으로는 수시로 발생하는 지방재정의 현안 사항을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지방재정 컨설팅 사업을 도입한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비 과다 지출 자치단체 등 현안 이슈 컨설팅, 자치단체 수요를 받아 실시하는 맞춤형 컨설팅 등을 추진했다.

이러한 개선 사항을 바탕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2018 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 운용 현황 및 성과를 재정 건전성·효율성 등 3개 분야 14개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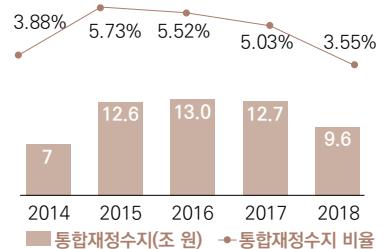
《 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18년 3.55%로 전년 대비 1.48%p 하락하고, 재정수지는 흑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흑자 규모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는 바,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복지사업 확대 등을 위한 확장적 지방재정 운용으로 수입보다 지출의 증가 폭이 커진 결과라고 판단된다.

통합재정 수입 및 지출 5년간 추세

연도	통합재정 수입		통합재정 지출	
	규모	증가율	규모	증가율
2014	212.9조	5.47%	205.9조	4.06%
2015	233.5조	10.38%	220.9조	7.32%
2016	249.0조	6.63%	236.0조	6.84%
2017	266.2조	6.45%	253.4조	6.45%
2018	280.7조	5.47%	271.1조	6.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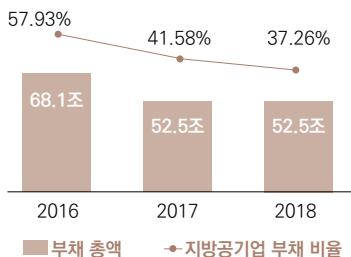
통합재정수지 비율 5년간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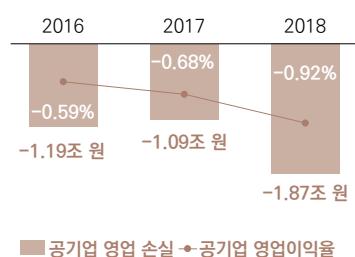
《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의 '18년 부채 비율은 37.26%로, 최근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에 영업이익률은 0.92%가 감소하여 3년 연속 적자 상태로 전년 대비 적자 규모가 증가하였다. 이는 각 자치단체 직영기업으로 운영 중인 하수도 분야, 그리고 도시철도 분야의 경영적자가 증가되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하겠다.

지방공기업 부채 비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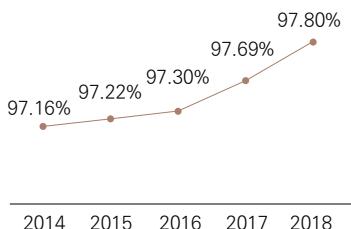
지방공기업 영업이익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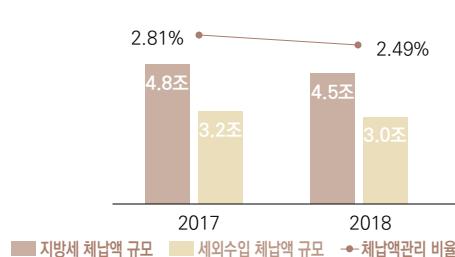
《 세 입 》

지방세징수율은 '18년 97.8%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에 힘입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체납액 관리 비율 역시 '18년 2.49%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모두 감소하였다.

지방세징수율 5년간 추세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관리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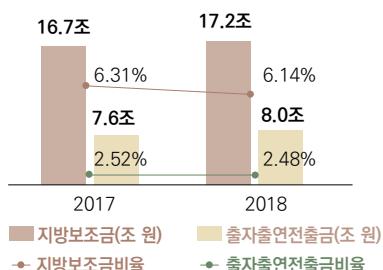
- ① 전국 최초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One-stop’ 통합징수시스템 구축(경기 성남)
- ② 성실납세자에 상품권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세 납부 독려(경북 예천)
- ③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징수 대책 T/F 및 징수 특별 대책 보고회 운영(서울 금천)

지방세증가율과 관련해서는 지방세 수입은 증가했으나, 지방세증가율은 전년대비 1.73%p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증가율이 둔화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하겠다.

《세출》

외부 지원 지표에 해당되는 지방보조금과 출자출연전출금 모두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세출결산 대비 비율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복지·환경 분야 보조금 및 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 하겠고, 내부 경비와 관련하여 지방의회경비 절감률은 22.61%, 업무추진비 절감률은 19.10%로 전년 대비 개선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불필요한 지출 절감 노력을 지속한 결과라 하겠다.

지방보조금 및 출자출연전출금 현황



지방의회경비 및 업무추진비절감률 현황



외부 지원 및 내부 경비 지출 효율화 사례

- ① 지방보조금사업 성과 평가를 적극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보조사업 173건 지금 중단
(경기도)
- ② 외유성 국외연수 방지를 위해 의원 국외여비 미편성 결정(충북 괴산)
- ③ 업무추진비 기준액의 70%를 자체 기준액으로 별도 설정함으로써 경비 절감 도모
(경기 안성)

2. 재정분석제도의 개편 방향

앞서 설명한 대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제도는 올해 제도 도입 20년을 넘어서면서 전면 개편을 실시하여 재정분석 결과에 대한 자치단체 수용성 및 적시 반영성 등이 제고되는 등의 효과가 있었으나, 추가적인 문제점이 확인되어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먼저, 재정분석의 대상 측면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의 지난해 결산을 분석하기 때문에 이 결과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재정분석 결과의 시의성 및 즉각적인 정책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분석기준에 있어서도 예산집행률, 이·불용액 비율 등 재정집행 관련 지표들이 중요 지표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여 당초 계획 대비 재정 운용을 얼마나 계획성 있게 하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였다.

분석 방법에 있어서는 현재 각 지역별로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할당된 지역에 대한 재정분석 및 보고서 작성은 전담시키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현장 점검 과정에서 일부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고 전문가들의 역량이나 노력 등의 차이로 보고서 결과물에 편차가 컸다.

마지막으로, 재정분석의 결과에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 주민들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를 한눈에 보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올해 알기 쉬운 재정분석 보고서 작성은 위해 신호등 방식 도입, 그래프 추가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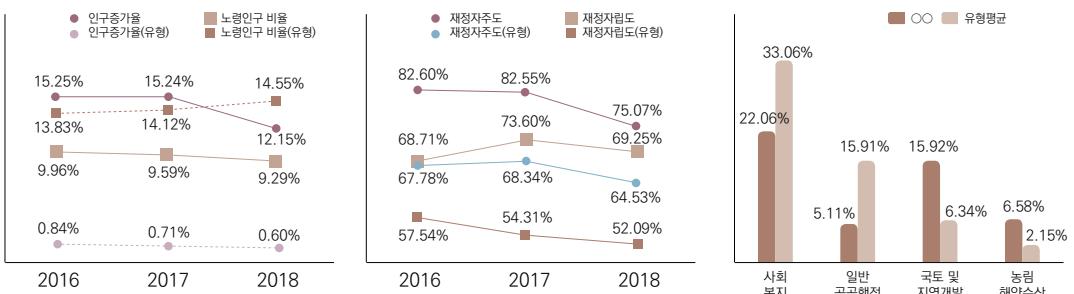
○○시

기본 현황

- 인구(명):
- 면적(km²):
- 재정력지수:

세입	총계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등
규모(억 원)	14,327	6,707	608	730	-	2,329	-	3,954
비율(%)	100%	46.8%	4.2%	5.1%	-	16.3%	-	27.6%
세출	총계	일반공공행정	교육	환경보호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규모(억 원)	11,725	6,707	878	871	2,587	772	881	1,867
비율(%)	100%	5.11%	7.49%	7.43%	22.06%	6.58%	7.51%	15.92%

인구·재정 여건



I 재정 건전성

구분	수지관리		채무관리		공기업관리	
	통합재정 수지비율	경상수지 비율	관리채무 비율	통합유동 부채 비율	부채 비율	영업이익률
○○ (전년도)	-4.55% (5.29%)	73.07% (65.38%)	6.01% (5.35%)	4.72% (4.88%)	9.38% (1.15%)	-3.32% (-3.75%)
유형 평균	0.48%	67.63%	16.33%	29.39%	29.41%	-0.95%
전국 평균	3.55%	67.58%	7.35%	23.26%	37.26%	-0.92%

II 재정 효율성

세입 관리	지방세 수입 비율	세외 수입 비율	지방세체납액 관리 비율	세외수입체납액 관리 비율
○○ (전년도)	43.10% (45.81%)	4.24% (신규)	1.64% (1.56%)	0.62% (0.55%)
유형 평균	42.19%	3.56%	2.25%	0.25%
전국 평균	25.90%	4.28%	1.51%	0.99
세출 관리	지방 보조금 비율	출자출연 전출금 비율	업무추진비 절감률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 (전년도)	6.17% (7.16%)	5.93% (4.87%)	13.36% (14.65%)	30.43% (4.62%)
유형 평균	2.79%	3.86%	22.69%	15.6%
전국 평균	6.14%	2.48%	22.61%	19.10%

III 참고 지표

구분	환금자산대비 부채 비율	자본시설 지출 비율	실질수지 비율	민간위탁금 비율증감률	정책사업 투자비 비율	예산불용액 비율
○○	29.65%	31.34%	26.21%	12.28%	43.31%	18.60%
유형 평균	114.97%	11.23%	10.49%	-15.52%	23.37%	7.06%
전국 평균	43.09%	16.99%	18.19%	-8.51%	30.71%	9.75%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2020년 올해 지방재정분석제도는 다음과 같은 개편 방향을 잡아서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1) 분석 대상 관련

우선적으로 당해 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 집행 현황 분석에 초점을 맞출 계획에 있다. 국가경제 성장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이를 위한 신속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들이 집중되고 있는 현 시점은 고려하여, 예산집행률, 채무 비율, 지방세징수율 등 당해 연도 재정 집행 현황을 분기별로 분석하여 집행이 부진한 자치단체에 대한 독려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시스템을 통해 분기별로 집계할 수 있는 재정통계 자료를 조사하여, 일자리 사업이나 지방보조금 등 중요한 항목들에 대한 집행 현황 등 추가 재정분석 지표를 발굴·분석해 나가기로 한다.

아울러, 재정분석에 당해 연도 집행평가 항목을 추가하여 재정분석 평가 시, 작년도 재정 집행과 더불어 당해 연도 집행 실적도 함께 평가하여 우수 기관을 선정하는 방식도 적극 도입해 나가기로 한다.

2) 분석 지표 관련

현재 3개 분야 14개 세부지표로 운영되는 재정분석 지표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효성이 낮은 지표를 통폐합하고 적시성 있는 새로운 지표를 추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분야	세부 지표(14개)	배점
건전성(6개)	(수지관리) ① 통합재정수지 비율, ② 경상수지 비율 (채무·부채관리) ③ 관리채무 비율, ④ 통합유동부채 비율 (공기업관리) ⑤ 공기업부채 비율, ⑥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500점
효율성(7개)	(세입관리) ⑦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비율, ⑧ 지방세징수율, ⑨ 체납액(지방세+세외수입) 관리 비율 (세출관리) ⑩ 지방보조금 비율, ⑪ 출자출연전출금 비율, ⑫ 지방의회경비절감률, ⑬ 업무추진비절감률	500점
책임성(1개)	(법적 책임성) ⑭ 재정법령 준수(지방재정법 위반 등 6개 분야)	감점

우선, 재정책임성 분야의 경우에는 지표가 재정법령준수 하나뿐인데, 이 지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돌아가면서 실시하는 감사원 감사가 평가 결과에 큰 영

향을 끼쳐 감사를 받는 자치단체가 당해 연도 책임성 분야 분석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크므로 평가 결과가 왜곡되는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이 지표를 삭제하거나 평가에 영향이 없는 참고 지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자치단체 적극적 재정 집행 및 예산 수립·편성의 계획성 제고를 위한 신규 지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참고 지표로 분류되어 있는 예산집행률, 순세계잉여금 비율, 예산 이월 비율 등을 본 지표로 상향 조정하고, 예비비 집행률 등 계획성 관련 지표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예산 수립의 계획성과 관련해서는 중기재정계획 운영 비율, 추경예산편성 비율 등도 추가할 수 있다.

3) 평가 및 시상 관련

현행 재정분석은 재정건전성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탈피하기 위한 새로운 평가 방법의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표별 순위를 공개한다든가, 각 부문별로 우수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의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용 촉진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치단체별 시상 규모 조정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2019년 평가 결과를 보면, 우수단체 전체 포상 비율(17%)에 대비, 서울시 자치구(23%, 25%) 및 특·광역시(38%)와 도(33%)가 현저하게 높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 및 광역자치단체의 포상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구분	합계	특·광역	도	시				군				구				
				I	II	III	IV	I	II	III	IV	서울	I	II	구	
단체 수	243	8	9	15	21	19	20	21	20	20	21	21	13	12	22	22
시상 수	42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비율	17%	38%	33%	20%	14%	16%	15%	14%	15%	15%	14%	23%	25%	14%	14%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굴하고 논의하기 위하여 재정분석 제도 개선 TF를 운영하고 있다. 이 부서는 행안부의 재정분석 제도 담당 공무원, 지방재정 및 예산 담당 공무원, 그동안의 재정분석 연구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재정분석의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도지사협의회, 시군구청장협의회 등이 대표로 참석하고 있다.

IV.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착수

행정안전부에서는 기존 지방재정관리의 모든 과정을 고도화하고, 지방보조사업 관리를 전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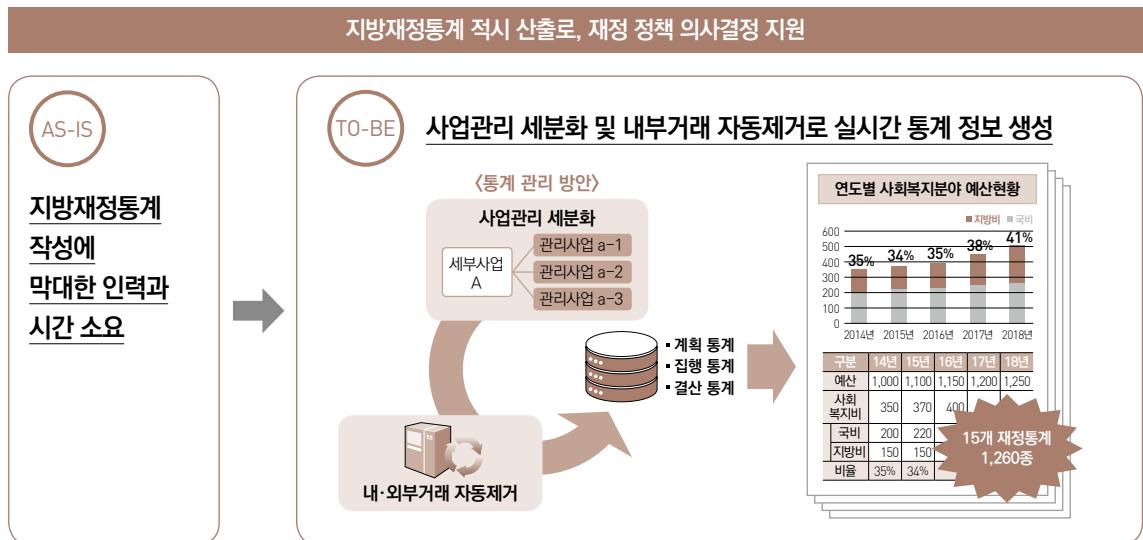
지방재정관리(e호조)시스템은 서울시를 포함한 243개 전 자치단체, 33만 지방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지방재정관리의 핵심 인프라로서, 2005년 구축 이후 약 14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예산편성, 지출, 결산 등 지방재정 12개 분야 74개 업무에 사용되며, 하루 평균 1.1조 원의 예산과 5만 여 건의 지출을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지방재정 관리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핵심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재정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방보조금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사업자·단체에서 자치단체에 대금을 청구할 때 아직도 수기로 처리하고 있는 등 노후화로 인한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행안부는 지방재정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 위해 2019년도 1/4분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차세대시스템 구축사업을 포함하였고 2020년 4월 이전에 예타 절차를 모두 종료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총 1,700여억 원 규모의 3개년 구축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사업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2020년도 정부편성 예산안에 예타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사유로 포함되지 않았던 1차 연도 구축 국비 예산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89억을 확보한 바 있다. 현재 계획으로는 2020년도 차세대시스템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2022년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2023년에 전국 서비스를 시작하고자 한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현재의 지방재정 업무가 다음과 같이 획기적으로 바뀔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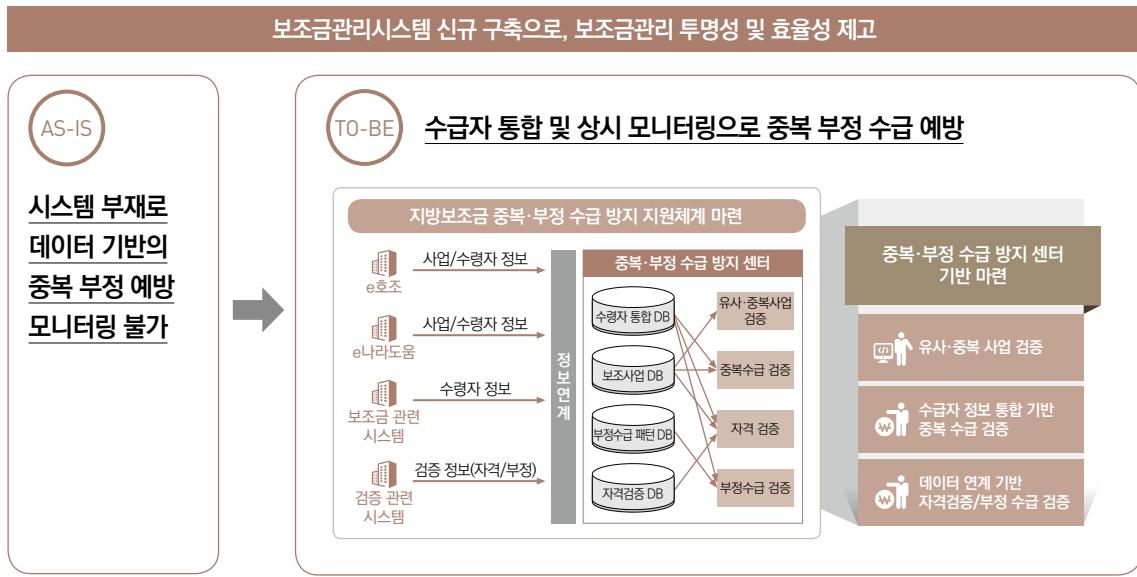
첫째, 지방재정 통계 적시 산출 및 가용 재원, 재정추이 정보 등을 공무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지방재정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최신기술 기반의 스마트시스템 구축을 통해 더 신속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치단체별로 분산 운영 중인 재정데이터를 통합하여 시스템 기반으로 통계를 자동 산출함으로써 지방재정데이터의 정합성 및 적시성이 강화되고, 국가·지방·교육 재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범국가 재정 정책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또한 243개 자치단체 개별 인프라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하여 효율적 자원 공유로 예산을 절감하고,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등의 신기술을 반영하고 챗봇을 활용한 대화형 상담 서비스도 가능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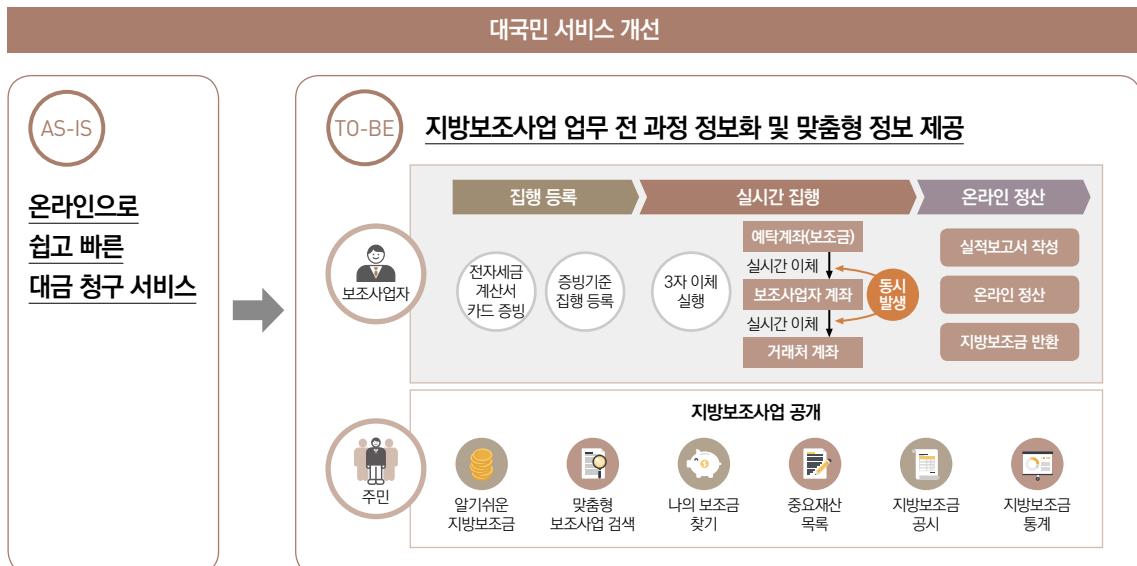


둘째, 수기 처리하는 지방보조금 관리를 전자화함으로써 보조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243개 전 자치단체에서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 정보를 통합하고, 유관 시스템과 연계해 보조금 수급 자격을 검증하고 중복 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고보조금관리(e나라도움)시스템과 연계하여 보조금통합관리체계를 구현함으로써,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의 이원화 관리로 인한 자치단체 담당자의 업무 가중 해소 및 국가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시너지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셋째,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업 관련 예산정보의 신속한 검색, 온라인 대금 청구 및 보조금관리 포털 서비스 등 주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재정정보를 공개하고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할 것이다. 자치단체와 거래하는 업체가 온라인으로 대금을 청구하고 처리과정을 조회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비용도 절감하게 된다.



또한,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신청서 제출 및 심사 결과 확인, 교부신청서 제출, 건별 지출 처리 및 정산보고서 작성 등을 자치단체 직접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맞춤형 보조사업정보를 제공하는 보조금포털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러한 효과들을 사례를 들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1



지방재정은 통계 수집 대상 범위가 다양하고(243개 자치단체, 405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 685개 / 2,140개 회계, 2,461개 기금), 데이터가 방대해(1,300여종), 정확한 자치단체 세입·세출 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17개 시·도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오프라인 협동 작업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

(차세대) 시스템 기반의 통계 자동 산출로 재정통계 적시 활용 및 재정정책 의사 결정 지원

사례2



부모와 자녀가 같은 집에 살면서 2년간 각자 수산직불금을 신청해 수령하다가 적발되는 사례, 임대한 땅을 영농법인에 재임대하여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쌀직불금 수령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

-

(차세대) 보조금 수급 자격 및 중복 수급 사전 검증으로 보조금 부정 수급 원천 차단

사례3



◇◇업체는 ○○시청에 납품 물품의 대금을 받기 위하여 정부24에서 지방세납 세증명서를, 흠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기타 서류를 모두 구비한 후, 직원이 ○○시청을 직접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자치단체 담당자의 처리가 늦어졌고, ◇◇업체에서는 언제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여러번 문의 전화까지 해야 했다.

-

(차세대) 온라인으로 대금을 청구함으로써 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고 서류준비 시간과 비용 절감 기대

특히,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눈여겨봐야 할 점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방세 관리와 지방재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차세대 지방세·세외수입관리시스템이 함께 구축된다는 것이다.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지방재정 시스템은 지방재정의 대표적인 3대 시스템으로 지방세 부과와 징수는 물론 예산편성·집행·결산에 이르기까지 지방재정 전 과정을 관리하므로 이러한 3대 시스템이 동시에 구축이 된다면 지방재정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지방세·지방세외수입)은 행안부가 1,923억 원을 투입해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접목한 전국 통합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이용하는 온라인납부시스템과 세무직 공무원이 사용하는 업무용 시스템으로 나눠 개발된다.

이러한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온라인 세금 신고와 납부가 편리해지는 것은 물론 인공지능 스피커, TV 등을 통한 지방세·과태료 납부, 인공지능 챗봇 상담 서비스를 통한 365일 24시간 맞춤형 상담이 가능해질 것이다.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시스템은 2019년부터 차세대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였으며 2022년 본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스템 구축을 모두 완료하면 시스템 간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차세대 지방재정 3대 시스템이 모두 서비스되는 2023년부터 세입정보와 재정정보의 실시간 연계로 지방 재정의 세입부터 세출까지의 전체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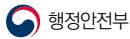
이렇게 되면 세입과 재정 시스템 간 정보 공유가 활발해져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실시간으로 가용 재원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재정 정책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체납자를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고 보조금 부정 수급도 방지할 수 있어 지방세입이 증가되고 재정건전성도 좋아진다.

이밖에도 차세대 지방재정 3대 시스템은 클라우드 형태로 구축돼 자치단체별로 분산된 세입과 재정 시스템을 통합해 네트워크 장비, 통신망, 보안 등에 대한 중복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19~'21년, 총 1,608억, '22년 2월 3일부터 본격 서비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19~'21년, 총 315억, '22년 2월 3일부터 서비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20~'22년, 총 1,700여억 원, '23년부터 서비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달라지는 미래 지방재정 서비스



현재 시스템
('08년)

차세대 시스템
('23년 개통)

대민서비스

대금 청구 위해 서류 행거 직접 방문

계약 대금 청구 시 세금계산서 등 구비서류 행거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청구



온라인 대금 청구

홈페이지에서 대금을 청구하고, 필요한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 처리 현황도 집에서 조회

보조사업 처리 위해 일일이 직접 방문

지자체 보조사업 참여자는 신청부터 심사 결과 확인, 지출 증빙, 정산 모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보조금포털을 통해 어디서든, 손쉽게

보조금포털을 통해 신청부터 정산까지 언제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처리 OK

복잡하고 어려운 재정정보

기존 재정정보는 복잡하고 어려워 활용도가 낮고, 주민이 예산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부재



개별 꼭 필요한 재정정보 맞춤 제공

사용자 생애주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재정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 예산플랫폼을 통해 주민 참여 활성화

재정행정

통계 산출에 막대한 인력, 시간 소요

예산, 결산 등 지방재정 통계 산출을 위해 전국의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작업, 많은 시간 소요



실시간 통계 정보 자동 생성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통계를 산출해주어 간편하고, 정확하게 실시간 통계 제공

보조금 중복·부정 검증 미비

자치단체별로 보조금 수급 정보를 따로 관리, 수작업 기반 업무 처리로 비효율적인 검증



중복·부정 수급 원천 방지

전국 수급자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복 및 부정 수급 원천 차단

인프라

자치단체별로 개별 관리되는 인프라

전국 자치단체별로 인프라를 관리해야 하여 비효율적, 한정된 자원으로 과부하 대응 불가



클라우드 중앙관리로 더 안전하게

클라우드센터 통합관리로 안전 UP 보안 UP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여 효율성도 UP



황순조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



| . 서론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부족하고 편재된 지방세원으로 인한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도 완화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내국세의 일정률을 법률로 정함으로써(법정률) 지방의 고유 재원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특히 최근 지역균형발전과 사회적가치 총족과 관련한 국민의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소요되는 재원의 공급처이자 지방재정 형평화를 위한 마지막 보루(堡壘)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20년 지방교부세 총규모는 52조 2,068억 원으로, '20년 세수추계액이 감소함에 따라 2019년 52조 4,618억 원보다 2,550억 원 감소하였다. 여기서는 국가와 자치단체 간 재정조정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제도의 2020년도 운용 현황과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2020년 지방교부세 현황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로 산정되는 정률분(定率分) 교부세,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액의 45%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로 나뉘는데, 각각의 규모를 보면, 정률분 교부세 48조 1,715억 원, 부동산교부세 3조 3,210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7,143억 원이다. 이 중 정률분 교부세는 다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나뉘는데, 가장 중요한 지방재정 보전(補填) 기능을 수행하는 보통교부세는 46조 7,264억 원이고, 특별교부세는 1조 4,451억 원이다.

2020년도 지방교부세 예산 규모

(당초 예산 기준, 단위 : 억 원)

구 분	'19예산	'20예산	증 감	증감률
총계	524,618	522,068	△2,550	△0.49
계	490,749	481,716	△9,033	△1.84
정률분 (19.24%)	보통교부세(97%)	476,026	467,264	△8,762
	특별교부세(3%)	14,723	14,452	△271
부동산교부세	28,494	33,210	4,716	16.55
소방안전교부세	5,375	7,143	1,768	32.89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비율 변화 : (~'04년) 90.9:9.1, ('05년~'13년) 96:4, ('14년~) 97:3

다만, 2020년도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직 국가직화 시점(20.4.1. 예정)과 연계하여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액 증가분 25%p(20% → 45%)의 3/4인 18.75%p 만 예산에 반영되었다.

1. 보통교부세

가) 보통교부세 제도 개요

보통교부세는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한 자치단체에게 교부되어 자치단체 상호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해 주는 기능을 한다. 즉,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기준으로 산정·교부하는 일반 재원으로서, 지방교부세 전체의 89.5%를 차지한다. 여기서 일반 재원이란, 자치단체가 어떤 재원을 용도의 제약

없이 재량껏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기준재정 수요는 기초수요, 보정수요, 자체 노력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기초수요는 4개 분야(일반행정, 문화환경, 사회복지, 지역경제)의 16개 측정항목 별 측정 단위(인구수, 공무원 수, 행정구역 면적 등)에 각각 단위비용과 보정계수를 곱하여 합산함으로써 산정된다. 보정수요도 법정수요, 낙후지역 등 지역균형 수요 그리고 사회복지균형수요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체 노력은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행사·축제성 경비 등 경상경비 절감 등에 대한 자구 노력을 수요액으로 환산하는 항목이다.

기준재정 수입액은 지방세 중 보통세 수입액의 80%로 산정하는 기초수입, 지방세 외의 경상세외수입, 일반조정교부금, 부동산교부세 등과 그 정산분의 80%로 산정하는 보정수입, 그리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등 세입 확충과 관련한 자체 노력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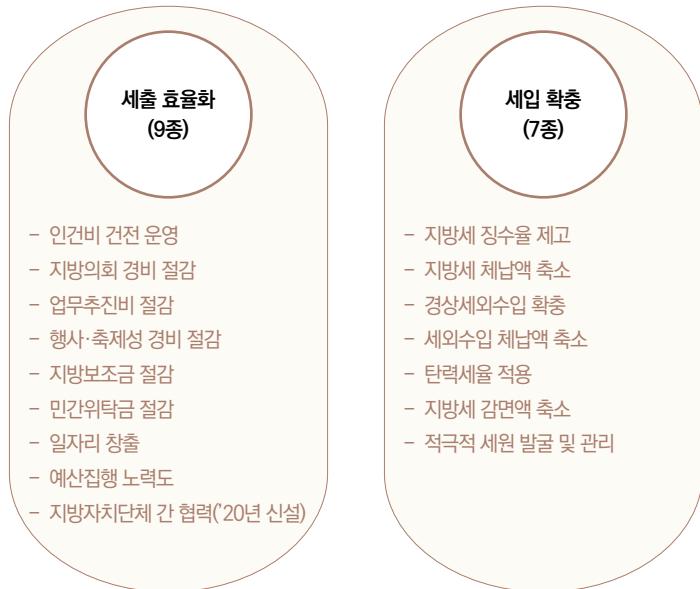
이렇게 산정된 기준재정 수요액과 기준재정 수입액의 차이를 재정 부족액이라고 하는데, 전국 보통교부세 교부단체의 재정 부족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분모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우선 교부될 3% 및 불교부단체에 교부될 분권교부세 보전 분을 공제한 보통교부세 총액을 분자로 하여 조정률을 구한 후, 이를 각 자치단체 별 재정 부족액에 곱하면 보통교부세액이 산정된다.

보통교부세 산정 절차 개요



이러한 산정 과정에서 비중은 작지만, 자치단체의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한 유인기제로서의 자체노력 항목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2020년에는 자치단체의 과도한 불용액에 대한 페널티 외에 이월액 축소에 대한 인센티브 항목을 추가하여 재정 부족액 보전이라는 보통교부세 제도의 취지를 좀 더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항목



나) 2020년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내용

그동안 보통교부세 제도는 산정 과정이 보다 객관화·합리화·형평화·단순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과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2020년에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고용 감소 지역 및 낙후·인구 감소 지역의 수요를 확대하였으며, 국가적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미세먼지 수요를 신설하였다. 또, 자치단체의 적극적 재정 운용을 독려하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체 노력 분야를 일부 개선하였다.



〈 기준재정 수요 분야 〉

① 고용 감소 지역수요 확대

최근 조선·자동차산업 경기 침체로 인해 고용위기·재난지역 또는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 중 2년 이상 지정된 자치단체의 수요를 추가 반영하여, 계속되는 고용위기 상황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였다.

② 낙후 인구 감소 지역 발전을 위한 보정수요 강화

성장촉진지역, 접경지역, 폐광지역 등 대표적인 낙후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기존 보정수요의 가중치를 20%p 확대(20% → 40%)함으로써, 해당 자치단체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였다.

③ 미세먼지 수요 항목 신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 간 유기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대기 부문 투자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을 장려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항목을 신설하였다.

④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 반영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자치단체의 복지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령화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5% 이상인 단체에 대해 노인복지비 수요를 30%p(150% → 180%) 추가 반영하였다. 또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 수의 급증, 교통 발달에 따른 유동인구 확대 등 인구 구성 요소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지역관리비 내 외국인 및 유동인구 관련 수요를 추가적으로 반영하였다.

〈 자체 노력 분야 〉

① 예산집행 노력도 확대 적용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 저조 및 과도한 잉여금의 증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0년에는 예산집행 노력도 항목 내에 동종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이월률이 낮은 자치단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였다.

②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항목 신설

전국 어느 곳이든 국가 최소 기준의 행정 서비스 공급이 필요하나, 지역마

다 서비스를 각각 공급하기에는 비용 증가 및 투자 비효율의 문제점이 발생 한다. 따라서 자치단체 간 협약을 통해 대규모 비용이 소요되는 기관·시설의 공동 사용을 장려하고, 자치단체 세출 효율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항목을 신설하였다.

다)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 결과 개요

먼저,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를 포함한 기준재정 수요액은 127조 6,9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고, 기준재정 수입액은 77조 6,782억 원으로 0.9% 증가했다.

2020년도 기준재정 수요액과 수입액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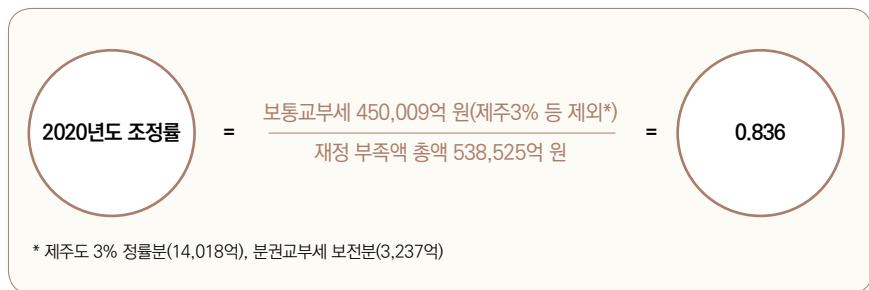
구 분	기준재정 수요액				기준재정 수입액			
	'19년	'20년	증 감	%	'19년	'20년	증 감	%
계	(1,262,443)	(1,276,975)	(14,532)	(1.2)	(769,743)	(776,782)	(7,039)	(0.9)
	1,000,399	1,031,783	31,384	3.1	470,114	493,258	23,144	4.9
특별시	(144,634)	(145,685)	(1,051)	(0.7)	(165,686)	(165,691)	(5)	(0.0)
광역시	213,248	215,002	1,754	0.8	153,985	153,161	△824	△0.5
세종시	8,592	7,407	△1,185	△13.8	8,008	6,730	△1,278	△16.0
도	(237,981)	(243,899)	(5,918)	(2.5)	(169,573)	(177,828)	(8,255)	(4.9)
	160,597	163,817	3,220	2.0	84,565	87,611	3,046	3.6
시	(423,874)	(429,072)	(5,198)	(1.2)	(223,540)	(224,094)	(554)	(0.2)
	383,849	409,646	25,797	6.7	174,606	196,479	21,873	12.5
군	234,114	235,911	1,797	0.8	48,951	49,278	327	0.7

※ () 내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수치를 합산한 금액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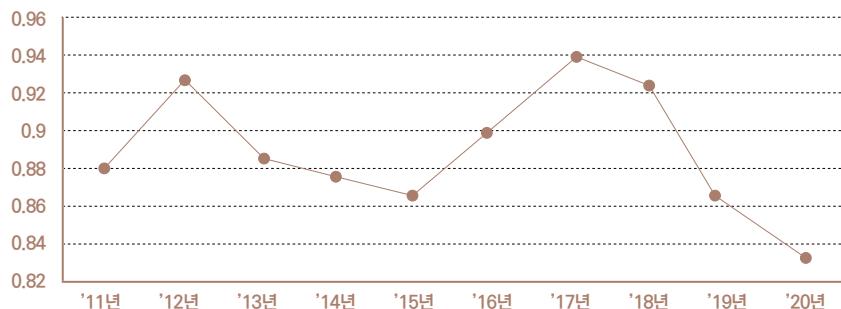
자치단체 유형별로 기준재정 수요액 분포를 보면 시가 가장 큰 33.6%(429,072억/1,276,975억)를 차지하고, 그다음으로 도, 군, 광역시, 특별시의 순으로 나타난다. 기준재정 수입액에서도 시가 가장 큰 28.8%(224,094억/776,782억)를 차지하고, 그다음으로 도, 특별시, 광역시, 군 순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군의 기준재정 수요와 기준재정 수입 간의 불균형(18.5% 대 6.3%)은 열악한 재정 상황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보통교부세 조정률은 0.836으로 전년의 0.864보다 0.028 하락했는데,

이는 2020년 기준재정 수요액이 기준재정 수입액보다 크게 증가한 반면, 보통교부세 총액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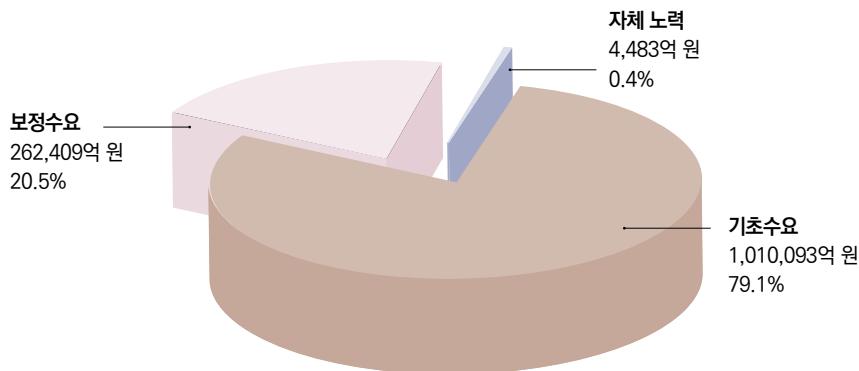
연도별 조정률(재정 부족액 충족률)



기준재정 수요액을 항목별로 보면, 기초수요가 101조 83억 원으로 7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100조 9,995억 원에 비해 0.01% 증가했고, 보정수요는 26조 2,409억 원으로 20.5%를 차지하며 전년도 24조 2,069억 원에 비해 8.4% 증가하였다. 한편 자체 노력은 4,483억 원으로 0.4%를 차지하며 전년도 1조 379억 원 대비 56.8% 감소했다.

보정수요는 지역균형수요 12조 2,744억 원, 사회복지균형수요 7조 5,940억 원, 조정교부금 5조 9,314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체 노력은 인센티브 7,009억 원과 폐널티 2,52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센티브는 지방보조금 절감 항목(2,377억 원), 폐널티는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항목(1,556억 원)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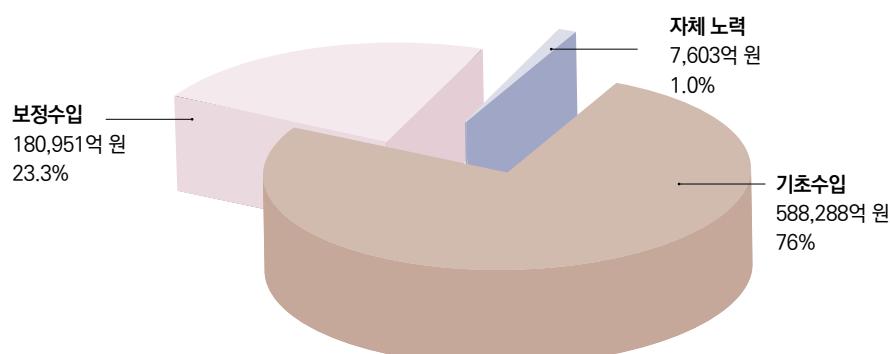
2020년도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액 구성



기준재정 수입액은 기초수입이 58조 8,228억 원으로 75.7%를 차지하며 전년도 56조 9,630억 원 대비 3.3% 증가하였고, 보정수입은 18조 951억 원으로 2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19조 5,339억 원 대비 7.4% 감소하였다. 한편, 자체 노력은 7,603억 원으로 1.0%를 차지하며 전년도 5,044억 원 대비 50.7% 증가하였다.

보정수입은 지방세 정산분 6조 2,502억 원, 조정교부금 5조 3,283억 원, 경상세외수입 3조 6,072억 원, 부동산교부세 2조 6,089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체 노력은 인센티브 1조 763억 원과 폐널티 1조 8,364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센티브는 경상세외수입 확충(4,987억 원)과 지방세징수율 제고(4,030억 원)에서, 폐널티는 지방세 체납액 축소(1조 3,428억 원)와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3,128억 원)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입액 구성





수요·수입 자체 노력의 2020년 총규모(절댓값)는 3조 8,662억 원으로, 수요 자체 노력 9,535억 원(인센티브 7,009억 원+페널티 2,526억 원), 수입 자체 노력 2조 9,127억 원(인센티브 1조 763억 원+페널티 1조 8,364억 원)으로 구성되며, 인센티브는 1조 7,772억 원, 페널티는 2조 890억 원이다. 자체 노력 총규모는 전년 대비 717억 원(1.8%) 감소하였으며 인센티브는 감소하고 페널티는 증가하였다.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규모 비교 (단위 : 억 원, %)

반영 항목	'19년	'20년	증감	증감률
합 계(규모)	39,379	38,662	△717	△1.8
계(수요+수입)	인센티브	22,356	17,772	△4,584
	페널티	17,022	20,890	3,868
수요 자체 노력	인센티브	11,429	7,009	△4,420
	페널티	1,050	2,526	1,476
수입 자체 노력	인센티브	10,927	10,763	△164
	페널티	15,972	18,364	2,329

2020년도 보통교부세 규모는 46조 4,027억 원(분권교부세 보전분 3,237억 원 제외)으로, 자치구를 제외한 174개 자치단체 중 재정 부족액이 발생한 170개 자치단체가 교부 대상이다. 자치구는 특별·광역시 본청에 합산하여 산정되기 때문이다. 분권교부세 보전분은 2015년 분권교부세가 폐지됨에 따라 불교부단체의 재정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재원 일부를 교부하는 것으로, 2020년도에는 4개 단체(서울, 경기, 성남, 화성)에 총 3,237억 원(서울 1,464억 원, 경기 1,610억 원 등)이 교부된다.

2020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결과 자치단체 유형별 분포
(단위 : 억 원, %)

구 분	'19년 산정액	'20년 산정액	증감액	증감률	비 고(최고/최저)
합 계 (170)	472,610	464,027	△8,583	△1.8	
소계 (169)	458,329	450,009	△8,320	△1.8	
특별시 (0)	-	-	-	-	
광역시 (6)	51,224	51,676	452	0.9	부산 10,339 / 울산 4,479
세종시 (1)	505	566	61	12.1	
도 (7)	65,719	63,681	△2,038	△3.1	경북 11,621 / 경남 6,677
시 (73)	180,895	178,129	△2,766	△1.5	안동 5,188 / 하남 143
군 (82)	159,986	155,957	△4,029	△2.5	해남 3,534 / 기장 655
제 주 도 (1)	14,281	14,018	△263	△1.8	

자치단체 유형별 교부액의 비중을 보면, 기준재정 수요와 기준재정 수입 간 차이인 재정 부족액이 가장 큰 시가 17조 8,129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38.4%)을 차지하고 있으며, 군은 15조 5,957억 원으로 33.6%, 도가 6조 3,681억 원 13.7%로 그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먼저 교부받는다.

2.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개별적 사정에 따라 발생하는 수요 또는 보통교부세 산정 이후의 지방재정 여건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수요에 충당하는 재원으로서,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획일성과 일회성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2020년도 재원 규모는 총 1조 4,4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1억 원이 감소되었는데, 지역현안수요 5,780억 원(특별교부세 재원의 40%), 국가지방협력 수요 1,445억 원(10%), 재난관리수요 7,226억 원(50%)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사용된다.

당초 특별교부세의 3개 수요는 모두 행정안전부가 통합 운용해 왔으나, 2014년 조직 개편으로 분리·신설된 국민안전처에서 재난관리 수요를 관掌하도록 하고 나머지 2개 수요만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에서 관掌하도록 변경('15년~'17

년 7월)되었는데, 2017년 국민안전처가 다시 행정안전부로 통합된 후에도 그 운영은 국민안전처의 후신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맡고 있다. 다만 특별교부세 전체적인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역현안수요와 재난관리수요를 연계하여 운용하고 있다.

2020년도 특별교부세 예산 및 지원 분야

(단위: 억 원)

수요별	비율	'19년	'20년	증감	지원 분야
총 계		14,722	14,451	△271	
지역현안	40%	5,889	5,780	△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단체 지역현안사업 - 도로, 복지관 등 지방공공시설
국가지방 협력	10%	1,472	1,445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적 장려사업 및 지역 역점 시책 등 -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생활 안정, 지방행정 기능 강화 등 - 행정·재정 우수 자치단체 재정 지원 등
재난관리	50%	7,361	7,226	△1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복구 및 예방사업 - 응급복구, 항구복구,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

3. 부동산교부세

부동산교부세는 서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으로 2005년 12월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여 자치단체에 배분된다. 2009년까지는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분(시·도는 취·등록세, 시·군·구는 재산세)을 우선 보전한 후, 나머지를 시·군·구(제주특별자치도 포함)에 배분하였는데, 2010년 지방소비세가 시·도세로 도입되면서부터는 그 전액을 시·군·구(제주특별자치시는 '12년부터 포함)에 교부하도록 변경되었다.

비록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은 국세이지만, 세원 자체가 지방세(주택, 토지 등)를 근원으로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고유 재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가 그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일반 재원이다. 배분 기준은 재정 여건 50%, 사회복지수요 35%, 지역교육수요 10%, 부동산보유세 규모 5%를 적용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총액의 1.8%를 먼저 교부한다.

최근 10년간 부동산교부세 재원 규모

(단위: 억 원)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교부액	10,620	11,214	11,630	11,391	14,104	14,457	15,328	17,801	28,494	33,210

부동산교부세는 2009년에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과세 방식에 대한 ‘일부 위헌’ 판결, 1주택 장기보유에 대한 과세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의 영향으로 그 규모가 2조 원가량 감소함에 따라, 국가가 자치단체의 재정충격 완화를 위해 목적예비비 1조 8,600억 원을 보전해 주었다. 2010년부터는 이러한 지원이 없어져 그 규모가 1조 원대로 대폭 감소되었으나 점차적으로 재원 규모가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의 시행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2020년도 예산에는 전년 대비 4,716억 원 증가한 3조 3,210억 원이 반영되었다.





4. 소방안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는 당초, 지방재정 여건 악화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소방과 주민 안전관리 재원 확보의 어려움, 특히 119 소방장비 노후화 및 화재 진압 여건 악화 등 소방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의 곤란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담배 가격 인상에 맞추어 지방세의 목적세인 ‘소방안전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법안 검토과정에서, 국세인 개별소비세의 20%를 그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로 변경되었다.(14.12월 「지방교부세법」개정)

2015년부터 운용된 소방안전교부세 역시 2014년 조직개편으로 인해 분리 신설된 국민안전처에서 관장(15년~'17년 7월)해 왔으며, 2017년 국민안전처가 다시 행정안전부로 통합되면서 국민안전처의 후신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운영을 맡고 있다.

2020년도 예산은 7,1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68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소방직의 국가직화와 관련하여 그 인건비 충당을 위해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율을 45%로 인상한 것이 주요인이다. 다만, 2020년도 예산에는 소방직의 국가직화 시점(4.1. 예정)을 감안하여 개별소비세율 인상분의 3/4만 반영되었다.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기준은 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운용하고 있다(「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한편, 2017년 12월에는, 자치단체의 소방시설·장비의 보강을 위해 당초 2017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도록 하였던 특례규정을 2020년까지 3년간 연장하도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을 개정하였다.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규모							(단위: 억 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교부액	3,141	4,147	4,588	4,173	5,375	7,143	

5. 지방교부세 감액(減額)제도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는 교부세를 받는 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예산을 지출하거나 수입징수를 태만히 한 경우에 교부세를 감액하는 재정적 페널티를 부과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2004년도분 보통교부세부터 반영되고 있다(01.12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최근 자치단체의 재정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이에 상응하여 각 자치단체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거나 세입 등의 징수를 태만히 하여 재정손실을 초래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법령 위반 과다 경비지출이나 수입 징수태만 등의 행위가 감사원 감사, 정부 합동감사 등에서 확인되면, 이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법령 위반 사항 및 사실관계 등을 재차 확인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 수렴을 거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지방교부세위원회」 내 감액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감액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이후 지방교부세 감액 결정 내용은 「지방재정 365」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공개

되며, 감액된 재원의 일부는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한 우수 자치단체들에게 인센티브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감액되지 않은 다른 자치단체들에게 보통교부세 산정비율에 따라 보전 재원으로 배분된다.

2014년 이후 자치단체의 법령 위반 지출 등으로 인한 감액 심의 건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감액 금액도 증가해 왔으나, 2017년부터는 감액 반영 금액 및 심의 건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부터 교부세 감액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주요 사례들을 모아 감액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교부세 감액제도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온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위원회」 외부위원 수를 당초 13명에서 19명(지방 4대 협의체 추천 전문가 추가 및 관계 부처 실장급 위촉)으로 늘리고, 의견수렴의 창구도 현재보다 다양화하기로 하였다. 또 보통교부세 교부 결정 통지시기를 매년 12월 말에서 자치단체 예산편성 시기(10월 초순)까지로 당겨 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집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특히, 「지방교부세 정보화시스템」을 2020년 내로 구축하여 교부세 산정 및 집행관리 상의 인력과 시간 소모를 줄이는 한편 산정의 단순화와 객관성은 물론 분석 도구로서의 유용성을 제고하기로 하는 등 보통교부세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하기 위한 노력들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지방교부세 감액 심의 현황

(단위: 건, 억 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심의 건수	1,503	1,623	1,612	1,122	717
감액 반영 금액	382	489	308	259	66

III. 결론

문재인 정부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이라는 국정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자치분권이 재정분권의 뒷받침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재정분권 1단계(‘19년~‘20년)에서는, 지방소비세율을 현재의 부가가치세의 11%에서 2019년에는

15%로, 2020년에는 21%로 인상하고, 소방안전교부세율은 현재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의 20%에서 2019년에는 35%로, 2020년에는 45%로 인상하며, 국세: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3으로 하기로 하는 등 일련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18.10.30. ‘재정분권 추진 방안 합의문’ 발표).

또한, 재정분권 2단계(‘21년~’22년)에서 분권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조정 제도의 개편이나 중앙정부 기능의 추가 이양 외에도 국세의 지방세 이관,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 방안 등도 같이 논의될 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중앙-지방 간의 재정적 관계에 맞추어 지방교부세제도의 역할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합의문 발표를 전후로 해서 지방소비세 배분을 둘러싸고 시·도별 갈등이 빚어졌던 바와 같이, 지방세만 확충하는 경우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일정한 수준의 분배 장치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재원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지역 간 재정 격차를 확대시킬 것이 거의 분명하기 때문에, 균형 재원으로서의 지방교부세 기능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지방교부세 특히 보통교부세는 또 다른 숙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겠다. 즉, 그간 제도 운용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내·외부의 지적, 즉 자치단체 참여의 부족, 지방재정 확충 및 자율성 확대에 따른 자치단체의 자구노력 강화, 복잡한 산정 항목 개선을 통한 예측 가능성 제고, 자치단체의 예·결산 연계 산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위원회」의 외부위원 수를 당초 13명에서 19명(지방 4대 협의체 추천 전문가 추가 및 관계 부처 실장급 위촉)으로 늘리고, 의견수렴의 창구도 현재보다 다양화하기로 하였다. 또 보통교부세 교부 결정 통지 시기를 매년 12월 말에서 자치단체 예산편성 시기(10월 초순)까지로 당겨 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집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특히, ‘지방교부세 정보화시스템’을 2020년 내로 구축하여 교부세 산정 및 집행관리 상의 인력과 시간 소모를 줄이는 한편 산정의 단순화와 객관성은 물론 분석 도구로서의 유용성을 제고하기로 하는 등 보통교부세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하기 위한 노력들을 추진하고 있다.



김경태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장



I. 서론

민선 자치제가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특히 세원 불균형으로 자치단체 간의 재정 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 간, 지방과 지방 간 재정 및 사무 불균형 등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한계 등이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의 자율성·책임성 확보와 국가균형발전의 상생과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확정·발표(18. 10.)하고, 지방재정법 등 7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19. 12.).

이로 인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되어 지방소비세율이 10%p 인상되면서 국민의 세 부담 증가 없이 재원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되어 지방재정이 획기적으로 확충되는 한편, 국고보조사업(균특회계 등)을 자치단체의 일반사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1단계 재정분권을 완료하였다.

올해부터는 2단계 재정분권 확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세와 지방세 구조 또는 지방재정 조정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

(지방소득세, 교육세 등) 방안, 추가적인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정부 이양 방안, 지방재정 제도 등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처럼 앞으로 지방재정 분권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세입과 세출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이에 따라 자치단체의 다양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이를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예산편성부터 재정 집행 운영 전반에 걸친 제도적인 장치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세출예산(결산 기준) : (2016년) 291조 원, (2017년) 304조 원, (2018년) 325조 원

이를 위해 자치단체 재정 집행의 절차법인 지방회계법령을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정하는 한편, 지난해에 이어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를 전 자치단체가 작성하도록 의무화하여 지방분권 시대에 결산서가 자율통제 수단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지방재정의 신속한 집행에 있어서도 미·중 무역갈등과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정부지출로 보완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 목표를 최근 8년 내의 최고치인 60%로 설정하여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계약제도는 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대형 공사 낙찰자 결정기준’ 및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을 제정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전자조달시스템 미비로 인해 발주 기관의 행정력 낭비, 업체 부담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개선하여 계약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공유재산제도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 종합계획」을 ’19년 8월에 마련하여 사회적 가치 제고, 지방재정 수입 확보 및 개발 잠재력 활용 등 적극적 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공유재산의 전문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규제 개선을 통한 주민 부담 완화, 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가치 증대는 물론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II. 2020년도 지방회계·계약 및 공유재산제도 운용 방향

1. 지방재정 신속 집행 추진

지난해 미·중 무역 갈등 및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이 전망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등을 통해 부진한 민간 수요를 보완하고자 여느 때와 달리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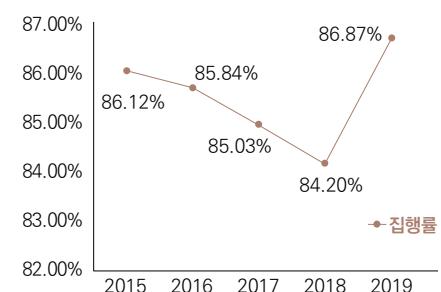
그 결과 지난해 상반기는 대상액 199.1조 원 대비 121.1조 원(60.82%)을 집행하여, 목표율(58.5%) 대비 2.32%p 초과 달성하였으며, 하반기는 대상액 377.5조 원 중 328.0조 원(86.9%) 집행, 목표율(90.0%) 대비 11.8조 원이 부족하였다. 하지만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은 86.87%로 최근 5년 내 최고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재정 집행 규모 면에서도 사상 최대의 재정집행(328.0조 원)으로 경제성장(GDP)의 마중물 역할을 하였다.

* '19년 GDP 정부기여도 : 1분기 △0.6 / 2분기 1.2 / 3분기 0.2 / 4분기 1.0

최근 5년간 집행액



최근 5년간 집행률



올해도 세계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1월 ‘코로나19’ 국내 감염자 발생으로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전망도 어둡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 둔화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및 SOC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 재정집행을 해야 할 것이며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율을 최근 8년 내 최대치(60%)로 설정·추진할 계획이다.

* ('13) 58.5% → ('14) 55.5% → ('15) 56.5% → ('16) 58.0% → ('17) 56.5% → ('18) 57.0% → ('19) 58.5% → ('20) 60.0%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 대상액(2. 21. 기준)은 지난해 199조 원보다 14.1% 늘어난 227조 원 규모로서 상반기 목표율 60.0%인 136조 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은 대상액 16조 원 대비 목표율 68%인 10.9조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일자리 확충 및 SOC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해서도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0년 상반기 신속 집행 대상액(2. 21. 기준, 잠정치)

(단위: 조 원)

구 분	대상액	목표율	목표액
합 계	227.6	60.0%	136.6
일반·기타·기금	206.2	60.0%	123.7
일자리 관련 사업	16.3	68.0%	11.1
지방공기업	21.4	56.7%	12.1

특히, 지방재정 신속 집행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실행하거나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20년 당초 예산 사업에 대해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의 점검을 통해 1회 추경 시 신속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하는 한편, 연중 일반예비비 한도(일반회계 1% 이내)를 준수하고, 불필요한 재난예비비 등의 편성을 지양도록 하였으며,

둘째, 대규모 시설비 사업(광역 50억 원, 기초 30억 원 이상)에 대해서도 '재정 분석시스템'을 활용, 실시간 집행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세부 사업별 집행 목표액을 설정하여 매월 집행 상황 점검 및 사업 절차별 추진 상황 관리 도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 국고보조사업의 중앙·지방 협력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1분기 내 공모 절차 및 확정 내시를 완료하고,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내역 조정 등을 통해 실 집행 관리를 강화하며, 국고보조금의 과도한 자금 교부 방지를 위해 '자금교부 신청주의'를 확행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국고보조금 교부 지원 사업에 대해 신속한 자금 교부 협조 요청(행안부, 매월),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추경 성립 전'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자치단체 매칭 사업의 경우, 자부담분을 확보하기 전에 국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넷째, 「지방재정 신속 집행 적극 활용 8대 지침」을 마련하여 신속 집행 대상사업인 경우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 공고(입찰서 제출 마감 5일 전),

선금은 계약 금액의 최대 80% 이내 지급(14일 이내 → 3일 이내), 적격심사 기간 단축(7일 → 3일)하는 한편 사업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해당 보조금을 일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대가 지급도 청구일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검사·검수는 7일 이내 완료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였다.

다섯째, 자치단체 발주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 재정투자 심사, 각종 심사·협의·승인 계류 중인 사업을 수시로 파악하고 해당 부처에 신속한 이행을 요청할 계획이며, 아울러 자치단체 신속 집행 걸림돌 규제 및 애로·건의 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여섯째, 상반기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 장관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30억 원) 지원을 통해 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사기를 양양시키는 한편,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2021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이월·불용 과다 자치단체에 대한 폐널티를 부여하는 한편, 특별교부세 배분 시 불용액 비율이 높은 자치단체에도 차등 배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페널티(불용액 과다 단체)

동종 단체 평균을 초과하는 불용액 비율에 대해 자체 노력 폐널티 부여

$$\Rightarrow (\text{동종 단체 평균 불용액 비율} - \text{해당 단체 불용액 비율}) \times \text{해당 단체 불용액}$$

인센티브(이월액 감소 단체)

동종 단체 평균 이하인 이월액 비율에 대해 자체 노력 인센티브 부여

$$\Rightarrow (\text{동종 단체 평균 이월액 비율} - \text{해당 단체 이월액 비율}) \times \text{해당 단체 예산 현액} \times 5\%$$

2. 지방계약제도

가) 지방계약제도 특성 반영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대형공사 낙찰자 결정 기준」 제정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대형공사 중 입찰 참가자가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예규로 정하여 운영하는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국가계약의 낙찰자 결정 기준은 대형 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 항목 및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어 복잡·다양한 지방계약의 특성 반영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지역 업체 수주 기회 확대 등에도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국가계약과 차별

화된 별도의 기준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입찰에 참여할 업체를 사전에 심사하여 통과한 자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2단계(PQ, 본입찰)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에서는 우수 지역 업체 우대, 하도급 적정성 평가 강화, 지역업체 설계비 보상 확대 등 지방 계약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의 중견기업 및 중소하도급 업체가 입찰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대형공사 낙찰자 결정 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 제정

지방계약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에 있어 가격에 따라 품질이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는 에어컨, 컴퓨터 등에 대하여는 예규로 정한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규에서는 조달청의 「종합낙찰제 세부 운용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국가계약의 종합낙찰제 세부 운용 기준은 5천만 원 이상의 에어컨 등 적용 금액 및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는 사례가 없는 상황이고, 교육기관에서 개인 비용 부담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는 교복, 앨범 등을 구입할 때에 품질이 중요한 요소임에도 종합낙찰제 세부 운용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계약의 사각지대로 존재하여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민간에서 새롭게 개발한 제품의 구입이 곤란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반영해 낙찰자를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품질의 질이 요구되는 다양한 대상 품목을 파악하여 반영하고 대상 금액도 대폭 확대하며, 특히 4차 산업 관련 물품과 교육기관과 관련된 교복, 앨범 등 품질이 중요한 품목을 포함하는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을 제정하여 발주 기관 요구에 부합하는 최적의 제품을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나) 지방계약의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기준」 마련을 통한 계약의 투명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공법을 개발·보유한 자가 계약 이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로 집행하기 전에 사업 부서에서 계약심사 부서로 심사를 의뢰하여 해당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

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공정한 계약을 집행한다.

또한,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다수이거나 유사한 경우가 있을 때에도 시공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신기술 등을 선정하여야 하나,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의 관리를 부처별로 하고 있고 선정하는 기준이 없거나 미미하여 발주 기관이 객관적 근거 없이 임의대로 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감사에 지적되는 등 선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다수이거나 유사한 경우에 발주 기관이 공법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해당 계약 이행에 가장 적합한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으로 선정된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토록 하는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늘여나갈 계획이다.

구분	평가 기준(예시)
시공성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 현장 여건 적합 정도 / 공사 기간
안전성	구조적 안전성 / 내구, 내진, 내화 등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하자 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용이 / 생애주기
경관성	생상, 모양 등 디자인 / 외부 마감 형태 / 주변 환경과의 조화
금액	신기술 적용 투입 금액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개선으로 경제 활력 등 제고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와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되어 지역경제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 제고가 필요하고,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사회적 가치의 제도 기반하에 실효성 제고 및 정착을 위하여 공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공공조달제도의 평가 체계 강화 등을 개선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일정 기간 이상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에 가산점 부여, 입찰가격 평가 시 경비 비목인 사회보험료 등 제외, 하도급 적정성 평가 시 일정 비율 이상 하도급을 주도록 하는 등 지역 중소 업체의 입찰에 유리하게 하고 적정공사비가 보장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가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고용을 많이 한 업체에 가산점, 임금 체불 업체에는 감점,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위반자 감점, 건설재해 예방활동 우수자, 녹색건설 관련 인증 실적 우수자에 대하여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

가치 관련 공공조달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의계약 심사제도의 운용을 통한 제도 효율성 도모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계약의 경우 일반경쟁이 원칙이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구체적으로는 천재지변 등 긴급복구, 소액계약, 하자 구분 불분명, 작업상 혼잡 및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따른 특정 사업자 등 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방계약에서 수의계약 대상으로 한번 지정되면 정책적 목적 달성을 이후에도 자격이 유지되는 부작용으로 인해 수의계약의 공정성·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과 새로운 사유로 수의계약의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수의계약 대상의 존속과 대상에 포함 여부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의계약 심사제도를 2019년 10월 도입한 바 있다.

금년에는 현재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된 사유에 대한 존속 여부의 결정과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되도록 요구한 소외 지역(폐광·고용위기 지역), 지방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 등 특별관리 지역 업체, 국민의 재난 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재난 안전인증제품, 농림 분야 신기술 제품(NET) 등에 대하여 수의계약 심사제를 통해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제도에 반영하여 수의계약의 공정성·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다) 사용자가 편리한 지방계약 시스템 구축

지방계약 서류 간소화 및 전자조달시스템 개선을 통한 이용자 편의성 제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서 지방계약법령상 요구하는 각종 서류 및 시스템 미비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행정력 낭비, 업체 부담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로 각종 징구 서류 통·폐합 등을 통해 계약 서류를 간소화하고, 이용자의 요구에 맞춘 전자조달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여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예규),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예규), 고시에서 규정된 각종 서류를 계약 이행 시점(입낙찰, 계약 체결·이행, 대가지급 및 사후관리) 및 유형별(예정 가격, 입찰 참가 신청, 사전 심사 신청, 적격심사)로 구분하여 유사한 계약 서류를 통합하고 개별 법령상 별도의 징구

서류를 검토·분석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된 서류를 일원화하는 등 이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 계약에 활용되는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입·낙찰 관련 개정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해당 시스템에 미반영되는 것으로 인해 민간 시스템 또는 자체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의 불편 사항을 반영토록 요구하여 집행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유권해석 유형화 분석·안내 시스템 구축

지방계약 유권해석 요구 빈도가 많고 복잡한 지방계약법령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회계제도과 내에 별도의 계약민원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경제적·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지방계약의 지속적인 개선 및 계약 담당자의 찾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의 결여로 전화 민원 및 국민신문고 질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기존 유권해석,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해 DB화를 추진하고 민원 동향 시계열 모니터링 및 분석 결과를 통해 체계화된 답변을 민원인이 손쉽게 검색하여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자의 요구 수준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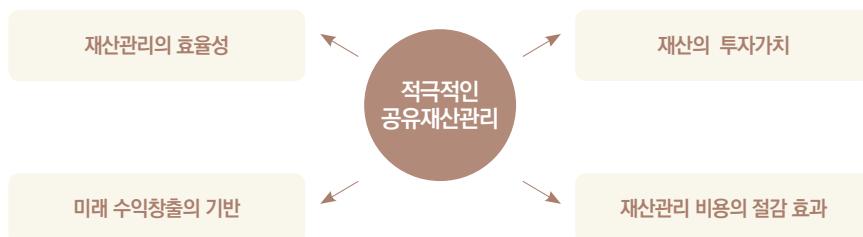
3. 공유재산 관리제도

가) 공유재산의 정책 추진 방향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은 행정의 물적 수단으로서 공공성·공익성을 실현하는 공공재로서 기능뿐 아니라 사경제의 주체로서의 경제적 수익성을 도모하는 데 수익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경제적 위치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간의 공유재산의 정책 추이를 살펴보면, 정부 수립 초기 부족한 재정수입 충당과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재원 조달을 위해 1964년 「지방재정법」이 제정되어 본격적인 공유재산 제도가 도입된 이래 1976년도까지 공유지의 매각을 확대 추진하는 등 관리·처분에 방점을 두었다. 이러한 공유재산 처분 위주의 관리는 공유재산이 계속 감소하는 문제를 불러일으켰지만 급격한 경제 발전에 따라 점차 조세 수입으로 재정 조달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도 처분 정책에서 자연스럽게 유지·보존 정책으로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공유재산의 관리 정책은 초기의 유지·보전을 위한 재산 관리나 임시적 필요에 따른 처분을 하는 소극적 관리·운영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재산 관리 패러다임이 전환하여 발전해 왔으며, 최근에는 관리 영역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크게 네 가지, 재산관리의 효율성, 재산의 투자가치, 미래 수익창출의 기반, 재산관리 비용 절감으로 확대하고 있다.



더불어, 그간 공유재산의 운영·관리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적인 현안 처리에 집중하여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방향 제시에 한계가 노출되어 왔으나,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운영상에 나타난 제도를 정비하고, 경제 활력 및 공익 실현에 선제적이고 적극적 관리로 전환하고자 종합 운영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

세출예산 대비 약 2.4배(2018년) 규모로서, 활용 가치와 잠재력이 크고 풍부한 740조의 공유재산도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지방재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정책 방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종합운영계획요약	1 제도 정비	공유재산법 분법, 공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 지자체 조례 정비
	2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생활SOC 및 기업 지원 확대, 지역경제 위기지역 특례 허용, 신성장 산업 지원
	3 규제 개선	사용료 개선, 수의계약 범위 확대, 영구시설물 축조의 합리적 허용, 규제개혁 공모제 추진
	4 관리의 효율화	실태조사 강화, 가치 재평가 기준 정립, Best-Practice 도출을 위한 위탁관리·위탁개발 시범사업, 시스템 개선
	5 대국민 서비스	대국민 정보 공개 확대, 양질의 서비스 제공, 모바일을 통한 서비스 제공

나) 공유재산의 전문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공유재산·물품의 다양화, 대량화에 따른 관리·활용 등의 변화에 부합하는 전문적·체계적 관리제도의 기반을 확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법령 내용과 자치단체 위임 내용에 명확하게 구분해 놓는 등 자치분권시대에 맞는 법령 체계를 갖추고자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현행 2단계 법 체계에서 3단계(법·시행령·시행규칙)로 정비하고, 공유재산 운영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상향하거나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할 계획이다.

또한, 각 개별법에서 방만하게 규정·운영되고, 과다하게 신규 생성되는 공유재산 특례규정을 방지하는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하여 특례신설과 기존 특례에 대한 점검·평가 실시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도모 및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위임 범위 일탈, 상위법 위반, 불합리한 규제 등의 조례 규정으로 인한 감사원 감사 지적 사례 등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도 정비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법」의 분법과 관련 국회에서도 분법안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 의원 발의를 하였으나, 대내외 정치적 현안의 영향으로 분법안이 본회 의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2020년에는 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분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위 법령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규제 개선을 통한 주민 부담 완화

공익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조화 및 혁신성장 구현을 위해, 노후청사·폐교·유류부지 등을 '공공복합청사'로 신축 및 개발을 유도하고자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일자리창출기업·유턴기업·중소창업기업·청년친화기업·사회적 경제기업 등과 지역경제 위기지역인 산업위기지역·고용위기지역·재난지역을 대상으로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감면, 장기 대부 등 각종 특례를 지원하며, 친환경자동차·신재생에너지·드론기업 등도 신성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의 특례 또한 지원할 계획이다.

수요자 및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을 통한 공유재산 정책의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재 사용료를 재산가격 기준으로 부과하던 것을 사용자의 수익에 따라서 부과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사용 부과 방식을 개선하고, 소액 임대료를 일괄 납부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재산으로 기부

채납 시 무상 사용을 허용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공유재산 규제 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수요자 및 현장 중심의 선제적 규제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업무 흐름도



라) 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가치 증대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

공익 목적에 부합한 개발·활용을 위한 공유재산의 단계별 실태조사 강화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재산 확보·누락 재산 발굴 추진을 적극 유도하고, 현재 대장 가격으로 관리하는 공유재산 가격 평가(토지는 공시지가, 건물 및 선박, 기계, 항공기 등은 시가표준액을 반영)에 대한 재산의 가치 재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평가 기준에 따른 자산평가 자동 반영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공간정보(GIS) 및 행정정보 연계를 통한 공유재산의 활용가치 제고가 필요한 바, 향후 공유재산의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공유재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공유재산 관리 및 개방 기반을 마련하고, 사용자 중심의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중장기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시스템 간 정보 연계와 공유재산 현황 DB 대국민 공개, 생활밀착형 공유재산 DB 구축 등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며, 중장기 추진 방향으로 GIS(공간정보) 활용 및 행정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항공사진과 지적도, 3D지도 등의 공간정보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국토계획 등의 행정정보가 융합된 서비스 제공과 공유재산 취득·처분·운용 등 통계분석 시스템 구축과 통합공개 포털 구축,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 수요자 중심의 개방 기반 등 또한 중장기 과제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복식부기·발생주의 관점의 재무회계

와 경제적 수익성 도모와 활용되는 공공재로서의 공유재산 통계 불일치를 개선하고자 한다. 즉, 지방재정365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산과 시도 새울행정서비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자산의 인식 기준, 관리 범위, 가격 결정 방법, 감가상각 등 불일치 원인을 사안별로 규명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일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재산 DB 공개 및 생활밀착형 공유재산 DB 지도 앱을 개발하여 공개하고, 전담 민원팀을 구성하여 효율적 민원 대응과, 사용·대부 갱신 대상자에 대해 종료 1개월 전에 갱신 대상자임을 문자로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마) Best-Practice 도출을 위한 위탁관리·위탁개발 사업 추진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현재액을 결산 기준으로 볼 때 2018년 740조 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 인력 규모는 2018년 현재 1,046명으로 기관별 소수의 인력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역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직 기간이 짧게는 6개월 미만, 길게는 1년 내지 2년 미만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바, 공유재산 전문성 확보는 물론 공유재산의 관리·운영에 있어서도 실태조사 및 기초통계 자료 확보가 미흡하고, 미대부와 무단점유 등의 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공유재산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위탁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지방재정 수입의 확충은 물론, 임대 또는 개발수익 등을 기대할 수 있는바, 작년 전남 화순과 인천 서구의 공유재산 위탁관리 시범사업 등을 금년에는 공제회를 통해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2018년 공유재산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금번 위탁관리 사업 활성화를 통해 미활용재산 발굴, 무단 점유 실태조사 강화 등 재산관리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방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바) 기타, 정책 방향의 패러다임 전환과 발전적 체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실시

공유재산 제도 발전 주제별 연구 발표 및 전문가 토론회를 매년 주최하여 공유자원의 활용 방안, 효율적 관리 방안 및 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유재산 위탁관리·위탁개발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발표 및 공유

재산 관리·활용 우수 사례 경진대회, 논문 공모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타 공유재산 담당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협력하여 공유재산 실무과정 교육 강화, 공제회 홈페이지 내 업무정보망 활용 강화, 공유재산관리 자문단 등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III. 결론

그동안 지방재정의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모아왔다. 특히 지방재정 분권과 함께 재정 규모가 매년 확대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의 자율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주민들의 정책 수요 또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자치 분권시대의 흐름에 맞게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계획성,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개선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예산의 편성 못지않게 편성된 예산을 그 목적에 맞게 잘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지방재정의 이월 및 불용액을 보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쓰지도 못할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문제 인식이 강조되면서 재정 운용의 중요성에 대한 방점이 재정 집행으로 옮겨지고 있다. 이제는 기존의 예산편성 중심에서 재정 집행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 지방회계 및 계약제도의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재정 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할 때인 것이다.

공유재산의 경우에도 세출예산 대비 2.4배 규모로 지자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매우 크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증가세는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재로서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야 할 성격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유재산 정책은 지방재정의 중요성과 시대적 요구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앞으로 관련 제도의 정비, 지역경제의 활성화 제고, 소상공인 지원,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을 중점추진과제로 하여 지역주민 모두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코로나19에 총력을 다해 대응하다



COVID-19



서울특별시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 끊긴 청년층에 100만 원 지급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된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의 청년수당을 2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2일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아르바이트나 일거리가 중단된 노동안전망 밖 청년들의 어려운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당 지급 대상은 서울 거주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이며, 1월 20일부터 3월 20일 사이에 실직한 경우에 한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9~20일이며, 지원 규모는 500명 내외다.

또 ‘청년 프리랜서 신속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 연기나 발주 취소 등으로 일거리가 중단된 프리랜서에게 최대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창작 콘텐츠 개발이다. 공모 기한은 26일이며, 공모는 대표자가 만 19~39세인 법인, 기업, 단체, 개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청년 소상공인 긴급지원을 통해 자치구가 도시락을 납품받는 사업도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자치구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각 자치구는 3월 중 청년 소상공인과 수혜 대상을 발굴·선정해 추진한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서울혁신팍크 내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입주 단체의 사용료 납부기한 연장과 관리비 한시적 감면 등도 함께 추진한다.

자료 파이낸셜뉴스(2020.03.12.)

경기도

‘신종 코로나 경제 피해 최소화’ 700억 원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등이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가 지역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도와 31개 시·군, 도 산하 기관, 전문 자문단이 참여하는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또 감염병 확산으로 직·간접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자금 700억 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200억 원(업체당 5억 원), 소상공인 500억 원(업체당 1억 원)을 각각 지원해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자금은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 또는 자금 소진 때까지 운영하고 분할 상환 2회 차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침체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역화폐 할인율과 월 구매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감염병 우려로 방문객이 감소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는 6억 7천만 원을 투입해 마스크 2만 개와 손 세정제 1만 개를 긴급 지원한다. 확진자 발생 지역 주민의 생계 보호를 위해 피해업종 종사자, 소상공인, 취업 취약계층 대상으로 공공일자리 사업도 확대한다. 중국 수출 관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출 애로 통합지원센터’도 운영해 수출보험·자금 지원이나 판로 개척 등 업체별 피해 상황에 적합한 해결책을 지원한다.

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피해신고센터’를 각각 설치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와 피해 현황을 통합 관리하고 피해 사례의 적합한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재정

을 신속히 집행한다. 최근 5년간 최소 수준인 ‘상반기 집행률 65.3%’를 목표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마스크 등 위생용품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매점매석, 불량품 제조 등을 집중 단속하며,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가짜 뉴스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사태가 장기화되면 관광객 감소, 불안감 증대, 소비 위축, 대중국 수출입 차질 등으로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며 “정부, 시·군 등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자료 [한겨례\(2020.02.06.\)](#)

인천광역시

코로나 피해 中企·소상공인에 1,450억 원 수혈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650억 원 규모의 중기육성자금을 투입하고, 소상공인에게는 800억 원 이상의 특별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민간 소비를 늘리기 위해 지역화폐 ‘인천e음’의 캐시백 요율을 2~4%에서 10%(월 50만 원 이하 결제)로 높였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 금액은 업체당 최대 7억 원이다. 6개월 거치 3년 동안 5회 분할로 상환하는 조건이다. 시는 대출 금액에 대해 금리 2%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준다.

시는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코로나19 때문에 소비심리가 위축돼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800억 원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난달 35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9일부터 추가로 450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 코로나 19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음식업, 숙박업,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에서 1.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평균 1%인 연간 보증료를 0.8%로 낮춰준다.

자료: [한국경제\(2020.03.09.\)](#)

충청남도 천안시

6,036억 원 상반기 신속 집행...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충남 천안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지방재정의 신속한 집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2일 천안시에 따르면 상반기 신속 집행은 재정운용의 선순환 정착, 연말 예산집행 쓸림방지, 예산집행 효율성 확보 등을 도모하기 위해 행안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경기 부양책이다. 올해 천안시의 신속 집행 대상액은 시설비 등 39종, 1조 595억 원으로 그중 상반기 목표액은 대상액의 57%인 6,036억 원이다. 천안시는 상반기 내에 재정을 집중 집행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침체된 지역 상권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시민이 체감하고 지역경제에 파급력이 큰 소비투자 부문의 지출을 확대해民間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자료 아시아뉴스통신(2020.03.12.)



경상북도 김천시

코로나19 대응 지역 경기 회복 역량 집중

김천시는 대구·경북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지난 2월 19일을 기점으로 지역의 민생 여건이 크게 악화되는 가운데 지역 경제 전반에 대한 타격이 심화되고 있어 경기 회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민생·경제 종합대응 TF팀을 구성하고 지역 경기 부양책을 위한 모든 사례를 발굴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 중소기업 지원 대책, 내수경기 진작 대책, 소비투자 집행 대책, 지방세제 지원 대책, 기타 지원사항 등을 적극 실시한다.

첫째,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김천사랑상품권 10% 할인 및 할인 기간을 연장해 운영한다. 기존 3월 31일까지 10% 특별할인 기간이었으나 코로나19 종합대책에 따라 기간을 4개월 더 연장하고 국비 예산 8%를 추가로 확보한다. 올해 200억 원 발행 예정인 상품권은 현재 100억 발행됐고 5월 중에 50억 원, 하반기 50억 원을 발행한다. 또한, 현재 지류형만 유통 중인 상품권을 7월에는 모바일앱, 선불형카드 2종으로 발행 형태를 확대하고 구매 한도도 1인당 당초 월 40만 원을 월 70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둘째, 중소기업 지원대책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운전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등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현재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92억 원의 자금 규모를 편성, 업체당 최대 3억 원 내 1년간 4%의 이자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내수경기 진작 대책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을 조기에 집행한다. 김천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지역경제 위축 우려에 대응해 직원들의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을 조기에 독려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한다. 총 18억 6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상반기 중 모두 집행한다는 방침이며 2월 말 기준 4억 6천만 원인 25%를 기 집행했고 3월 중 7억 원, 4월 중 4억 원, 5월 중 2억 원, 6월 중 1억 원을 집행해 조기에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넷째, 소비투자 집행 대책으로 긴급 예비비 사용 및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자체 방역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예비비로 사용하고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 긴급히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파급효과가 큰 소비·투자 분야의 1분기 목표액 1,137

역 원의 집행에 주력하는 등 소비분야 지출을 늘리고 각종 건설 공사를 조기에 발주하는 등 경기를 부양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적극 나선다.

다섯째, 지방세제 지원대책으로 코로나19 피해자에게 지방세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흥보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와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겨 판매부진을 겪는 기업체에게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 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을 지원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은 TF팀 단장을 중심으로 한 분야별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 내의 경기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 위클리오늘(2020.03.04.)





재난기본소득 이슈

전라북도 전주시는 지난 10일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5만 명에게 50만 원을 지원하자”라며 ‘긴급 생활안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에 시의회는 전주시 편성액보다 다소 늘린 52만 7천 원으로 확정했다. 4월 신청을 받아 5만 명에게 52만 7천 원이 담긴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지금 대상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 시민, 일시적 소득 감소 계층 등이다. 선불카드는 5월부터 7월까지 전주에서 쓸 수 있고, 남은 금액은 환수된다.

전주시는 극심한 소득감소에도 정부·지자체 지원을 받지 않는 취약계층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원자에 경제적 효과, 지역사회 및 재정에 미치는 효과 등을 연구해 향후 재난 등 유사 상황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주시가 불씨를 냉긴 재난기본소득은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전국 기초자치단체까지 확산되고 있어, 최근 지방재정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었다.



서울특별시는 기존 복지제도 대상이 아닌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 가구에 인원수에 따라 30만~50만 원을 재난긴급 생활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기준 복지 혜택을 못 받는 1~2인 가구에 30만 원, 3~4인 가구 40만 원, 4인 이상 가구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의 재난기본소득을 주면 좋지만, 재원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다”라며 “부동산 거래가 완전히 끊겨서 하반기 세수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점도 고민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씩을 4월에 일괄 지급

한다. 전체 1천 326만 5천 377명에게 1조 3천 642억 원이 들어간다. 재난관리기금 3천 405 억 원, 재해구호기금 2천 737억 원, 지역개발기금 7천억 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외환위기 이상의 미증유의 경제 위기가 기본소득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광역시**는 103만 가구 가운데 64만 가구(62.1%)가 지금 대상이다. 규모는 저소득층 특별지원 620억 원, 긴급복지 특별지원 1천 413억 원, 긴급 생계자금 지원 2천 927억 원이다. 긴급 생계자금은 중위소득 100% 이하 45만 9천 가구를 대상으로 50만 원까지는 선불카드, 50만~90만 원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원된다.

광주광역시는 1천 100억 원을 투입해 26만여 가구(전체 41.9%)에 30만~50만 원, 전남도는 총 1천 280억 원을 32만 가구에 30만~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대전광역시는 17만 가구에 30만~63만 3천 원, 강원도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 30만 명에게 40만 원씩, 경남도는 48만 3천 가구에 30만~50만 원을 줄 방침이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 지원’이 아닌 대상을 구별하지 않는 ‘보편적 지원’ 형태로 생계 자금을 주기로 했다. 울주군은 소득 수준, 직업 등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할 방침이다. 기장군은 당초 선택적 지원에서 16만 6 천여 명인 모든 군민에게 현금 10만 원씩을 주는 방식으로 선회했다. 오규석 군수는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보편적 지원이 맞다”라고 말했다.



경기지역 11개 기초지자체는 경기도와 별도로 재난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광명·군포·안양시**는 재산·나이 등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모든 시민에게 5만 원, **여주시**와 **양평군**은 10만 원, 이천시는 15만 원을 줄 방침이다. 평택·화성·시흥·고양 등 4곳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에 선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강원도 **강릉시**는 소상공인 1만 7천 업체에 100만 원씩, 저소득층 1만 6천 가구에는 100만 원씩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글. 한국지방재정학회 사무국

Issue 1.

국내·외 지방재정 동향

**□ 우리나라 경제지표**

구분	금리(국고채 3년) (%) 한은 기준 금리(1.25)	주가(KOSPI)	소비자 물가지수 (2015=0)	원/달러 환율(₩)
2020.02	1.253	-	105.800	1,193.79
2020.01	1.373	2,203.44	105.790	1,164.28
2019	1.529	2,106.05	104.850	1,165.65
2018	2.099	2,325.01	104.450	1,100.30
2017	1.801	2,311.36	102.930	1,130.84
2016	1.442	1,987.00	100.970	1,160.50
2015	1.794	2,011.85	100.000	1,131.49
2014	2.589	1,982.16	99.298	1,053.22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국거래소(연·월 자료는 기간 중 평균)

자료 수집 홈페이지 <http://econ.bok.or.kr>, 2020.03.09. 기준Issue 2.

국내 정책 이슈

**□ 2020년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개정 내용**

재산세 분납 기준 완화, 육아 휴직자 급여 주민세(종업원분) 과세 제외 등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9.12.30.)

행정안전부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회의에서 의결(12. 27.)되어 하위 법령과 함께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취득세의 경우는 취득가액이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비례하도록 조정(2% → 1~3%)하는 한편,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1~3%)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4%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6~9억 원 구간 세율계산법 : 세율 Y(%) = 취득가액 X(억 원) × ¼ ~ 3억 원



재산세는 분할납부 기준 금액을 현행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낮춰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합산과세의 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임야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대해서는 대중제 골프장 용지 토지의 임야와 동일하게 별도합산과세로 전환된다.

구 분	현 행	개 정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 금액	500만 원	250만 원
원형 보전지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토지분) 종합합산 대상	재산세(토지분) 별도합산 대상
대중제 골프장	재산세(토지분) 종합합산 대상	

원형보전지 「신지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유(20%)해야 하는 임야로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토지

주민세(종업원분)의 경우, 민간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복직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에 대해 과세표준(종업원 총급여액)에서 제외하고,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액을 현행 27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한다.

구 분	현 행	개 정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 제외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급여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급여 + (추가) 육아휴직(6개월 이상) 기간과 복귀 후 1년 동안 급여
면세점	월평균 급여 총액 1억 3,500만 원 이하 (270만 원×50명)	월평균 급여총액 1억 5,000만 원 이하 (300만 원×50명)
재산분 주민세	과세 제외 사업소 내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체육관, 연수관 등	사업소 내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체육관, 연수관, (추가) 직장어린이집 등

주민세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0.5%(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주민세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1㎡)×250원(매년 7월 말까지 신고납부)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 운영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국세 신고 기한에서 2개월 더 연장하도록 한다.

구 분	현 행	개 정
종합소득	납세지 소규모 사업자*	소득세(국세) 신고 당시 주소지 납세의무성립일 (12. 31.) 주소지
	신고 관할 자치단체	신고서 반드시 제출 세액만 납부 시 신고로 간주
	신고 기한 후 1개월 내 신고 가산세 감면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 50% 감면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가산세 10%)
	신고 기한 신고 방법	100% 감면 국세 신고 기한 종료 후 2월내 세액만 납부 시 신고로 간주
소규모 사업자: 약 228만 명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로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를 말함		

지방소비세의 경우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세율을 현행 부가 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6%p 인상한다. 또한, 2020년은 납세자 권리 강화 및 납세자 지원을 위한 제도가 확대된다. 첫째, 세무조사 투명성을 제고하고 세무 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세무조사와 관련 없는 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세무 조사 대상자의 장부 등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보관할 수 있게 된다.

구분	현 행	개 정
조사 대상자 선정	세무부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자료 요구	규정 없음	세무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요구 금지
장부 등 보관	규정 없음	(원칙) 보관 금지 (예외) 탈세제보 및 납세자동의 있는 경우 가능

둘째, 납세자의 자기시정 기회의 확대를 위해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기한 후 신고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 세의 90%를 감면하고,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 신고가산세의 75%를 감면하는 등 가산세 감면율도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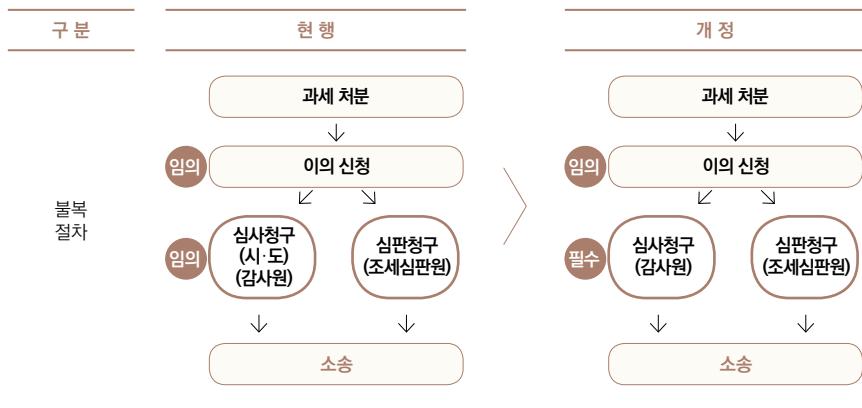
구분	현 행	개 정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6개월 이내 : 50% 감면 •6개월~1년 이내 : 20% 감면 •1년~2년 이내 : 10% 감면	•1개월 이내 : 90% 감면 •2개월~3개월 이내 : 75% 감면 •3개월~6개월 이내 : 50% 감면 •6개월~1년 이내 : 30% 감면 •1년~1년 6개월 이내 : 20% 감면 •1년 6개월~2년 이내 : 10% 감면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1개월 이내 : 50% 감면 •1개월~6개월 이내 : 20% 감면	•1개월 이내 : 50% 감면 •2개월~3개월 이내 : 30% 감면 •4개월~6개월 이내 : 20% 감면

셋째, 세무사·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3월 2일부터 시행된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구분	주요 내용
신청 세액	청구 세액 1천만 원
적용 요건	보유 재산 5억 원 이하(조례로 정함)이면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개인 ※ 단, 고액·상습체납자 제외하여, 재산 및 소득금액 판정 시 배우자 포함
보유 재산 범위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적용 제외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넷째, 앞으로는 실제 활용률이 낮은 시·군·구세에 대한 시·도 심사청구 제도를 폐지하여 지방세에 대한 불복 절차를 단순화하고, 조세불복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지방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심판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18년 만에 재도입된다. 다만, 납세자 혼란 방지 및 제도 도입의 안정적인 준비를 위해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지방세 관계 법령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2020년 지방세 관계법령 적용 요령」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전국 지방세공무원을 대상으로 「2020년 개정 지방세 실무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 지방세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 확충과 더불어 납세 편의성 제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공평하고 합리적인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3조 원 → 6조 원 확대, 2,400억 규모

추경편성

– 행안부, 5일 추경예산안 국회 제출, 할인율도 10%로 상향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0.03.08.)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 3조 원 규모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6조 원까지 늘리고 할인율도 10%로 상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4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면 최소 4개월 동안 각 지자체는 총 3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 10% 할인된 금액으로 개인당 월 구매 한도 100만 원까지 판매하게 된다.

※ 현재 발행 중인 지자체는 추경안이 통과되면 즉시 3월부터 10% 할인판매 실시,
발행 준비 중인 지자체는 발행 시점부터 4개월 동안 지원 예정

행안부는 당초 올해 연간 3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의 4%인 약 1,2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추경으로 올해 발행액은 연간 6조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행안부는 추가로 발행되는 3조 원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행액의 8%에 해당하는 국비 2,400억 원을 추경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5% 안팎의 할인율을 적용해 인기가 높다. 주 사용 업종이 음식점, 유통업(슈퍼마켓, 편의점 등), 학원, 음료식품, 의원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해* 골목상권 활성화는 물론 가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19년 인천·경기지역에서 판매된 상품권 1.86조 원 대상 사용처 분석 결과

행안부는 지난해 기준 월 평균 환전율*이 94.7%에 달해 상품권 판매가 대부분 소상공인들의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내 골목상권 매출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길 기대하고 있다.

※ 월 판매액 대비 환전되는 금액의 비율로, 상품권 판매 → 가맹점에서 사용 → 은행으로 환전되는 유통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의 장이 발행하고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자체의 판매대행점(농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누구나 구입할 수 있다.

※ 각 지자체 누리집 등에서 할인율, 판매처 및 사용처 등 확인 가능

한편, 행안부 집계에 따르면 금년 1월 기준 국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총 5,267억 원으로 이번 추경안 통과로 10% 특별 할인판매가 실시될 경우 유통 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가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 한다.”라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자체 현황(20. 03. 06 기준)

(2008년 7월 1일)

구분	계	광역	기초		발행(198)	미발행(45)
			총	발행		
총계	198	7	226	191		
서울	17	-	25	17	서울특별시 자치구(17)	서울특별시(8)
부산	17	1	16	16	부산광역시(16)	
대구	-	-	8	-	-	대구광역시(8)
인천	11	1	10	10	인천광역시(10)	
광주	6	1	5	5	광주광역시(5)	
대전	1	-	5	1	대덕구	대전광역시(4)
울산	6	1	5	5	울산광역시(5)	
세종	1	1	-	-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31	-	31	31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안산, 화성, 남양주, 안양, 평택, 의정부, 파주, 시흥, 김포, 광명, 광주, 군포, 이천, 오산, 하남,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의왕, 여주, 양평,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경기도
강원	13	1	18	12	강원도, 춘천시, 강릉시, 원주시,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양양군, 동해시
충북	11	-	11	11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충청북도
충남	14	-	15	14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흥성군, 예산군, 태안군	충청남도, 천안시
전북	13	-	14	13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군,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전남	22	-	22	22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영암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전라남도
경북	17	-	23	17	포항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군위군	경상북도, 상주시, 문경시, 울진군, 울릉군, 경주시, 경주시
경남	18	1	18	17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합천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합성군, 거창군, 합천군, 통영시	사천시
제주	-	-	-	-	-	제주도

Issue 3.

국내 지방재정 이슈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기준’ 마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대가의 합리적 산정을 위해 국토계획 표준품셈을 서울시 실정에 맞게 보완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적용했다. 국토계획 표준품셈에는 기본업무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정확한 용역대가 산정이 어려워 부실 용역의 우려가 있었다. 국토계획 표준품셈을 보완한 서울형 기준의 시행으로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용역대가의 산정이 가능해져 용역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육아휴직 아빠에 월 30만 원

서초구는 올해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으며, 서초구에 1년 이상 살고 있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선택하면 최대 1년까지 월 30만 원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은 고용센터에서 발행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지참해 서초구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서초구 가족정책과 등에 장려금 신청서를 낼 수 있다.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는 2019년부터 인천 남동구 등에서 시행 중이다. 서울에서 이를 지급하는 사례는 서초구가 최초이며 유일하다.

■ 경기도 안산시

공유수면 송전선로 점용료 첫 징수

안산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선로에 대한 점용료를 받아내 매년 수십 억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했다. 공유수면 위에 설치된 송전선로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거둬들일 수 있도록 안산시가 선례를 만들어낸 셈이다. 부과 대상은 한전이 안산시 관할 시화호 공유수면과 대부도 일원에 2004년 설치한 철탑 47기의 송전선로에 대한 사용료다. 시는 이를 통해 매년 주변 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정된 점용료를 세외수입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올해 37억 원으로 추정되는 점용료는 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되면 내년에는 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 추진

열악한 보수 수준의 국비시설에 대한 임금 체계를 개선하고 후생복지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등 최저임금 고용 불안정·무복지 등의 근무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했다. 총 269개 시설(인천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권익시설 등 국비시설 및 노숙인 재활센터 등 시비시설)의 근로자 690명에게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1%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고 근무환경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양질의 사회복지 인력이 인천시를 빠져나가지 않고 유입될 수 있도록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인천광역시 옹진군

노인복지기금 100억 원 조성

사회복지기금이 옹진군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당초 조성되었던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 분야) 35억 원에서 6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노인복지 분야 기금 100억 원을 조성했다. 1년간 기금을 예치해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2021년부터 본격적인 노인복지분야 기금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기금은 노인단체 운영 지원 및 지도육성, 저소득 노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 사업, 지역 단위 자립 기반 조성 사업 및 자활능력 향상 사업,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등에 쓰일 계획이다.

■ 경상남도

신중년 신규 채용 기업에 고용 장려금 지원

‘신중년 내일이음 50+’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민선 7기 공약 사업인 ‘신중년 일자리더하기 장려금 지원’의 일환으로 최근 국내외 경기불황에 따른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신중년의 대량 은퇴와 희망퇴직에 따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추진한다. 만 50세에서 64세까지의 신중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인데, 기업별 최대 2명까지 1명당 5개월 동안 250만 원을 지원한다.

글. 한국지방재정학회 사무국

지방재정 경제 관련

주요 최신 연구 리포트 및 학술논문

보통교부세의 지역균형수요와 사회복지균형수요의 산정방법 및 효과 분석(정종필, 권진택)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4권 3호(2019.12)

이 논문은 지역균형수요와 사회복지균형수요가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019년 기준으로 지역균형수요는 38개 항목 중 33개 항목에 일몰 기한이 설정되어 있다. 반면 사회복지균형수요는 대부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보통교부세 산정방법의 변화는 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산정액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사회복지균형수요가 도입된 2007년 이후 지역균형수요와 사회복지균형수요를 모두 반영한 보통교부세 산정 결과, 지역균형수요, 사회복지균형수요만을 각각 반영한 보통교부세 산정 결과를 상호 비교·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지역균형수요는 도 본청과 군 지역에서 수요가 많이 발생하며 지역균형수요의 반영은 도 본청과 군 지역의 보통교부세 산정액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지역균형수요가 일몰 기한의 도래에 따라 점진적으로 폐지된다면 도 본청과 군 지역의 보통교부세 산정액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균형수요의 반영은 시·도의 보통교부세 산정액은 증가시키나 시·군의 보통교부세 산정액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향후 보통교부세제도를 개편할 경우, 지역균형수요와 사회복지균형수요가 자치단체 유형별 보통교부세 산정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한국지방재정학회 홈페이지 자료실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제도의 재정적 형평화와 효율화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김정완)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4권 3호(2019.1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들에게 균등한 국민적 최저수준 확보라는 측면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회복지제도이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서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29%(2016년 기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계를 대상으로 차등 있게 지급된다.

이러한 생계급여는 여타 사회복지제도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매칭시스템을 운용하고 있고, 2008년부터 중앙정부는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적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하고 있다. 현행 생계급여는 형평성의 지표로 재정자주도, 효율성의 지표로 사회복지비지수를 반영하고 있으며 양 지표를 고려하여 서울은 40%(인하), 50%(기준), 60%(인상), 지방은 70%(인하), 80%(기준), 90%(인상)로 차등 구분하여 국고지원하고 있다. 현재의 국고 지원 차등보조율 결정을 위한 양 지표의 구분을 살펴보면 재정자주도는 80% 미만, 80~84%, 85% 이상, 사회복지비지수는 20% 미만, 20~24%, 25% 이상으로 3등분되어 있다.

그런데 재정자주도는 과천시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80% 미만으로, 최고 70%대와 최저 20% 대가 동일한 차등보조율의 적용을 받고 있어 재정자주도 지표에 의한 지역 간 차등보조가 무의미하다. 사회복지비지수 역시 전체 시·구·군(227개) 중에서 120개 곳이 25% 이상임에도 사회복지비지수에 의한 차등보조율의 단계는 20% 미만, 20~24%, 25%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 결과 양지표를 반영했을 때 전국적으로 인하 보조율의 적용을 받는 시군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기준 보조율(서울 50%, 지방 80%)은 112개 곳의 지방의 시군구, 인상보조율은(서울 60%, 지방 90%) 나머지 115개 곳이고 이 중 서울의 25개 자치구 전체가 인상보조율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를 기준으로 한 현행 차등보조율제도는 양 지표의 평균·중간값·표준편차 등의 분포도를 고려하여 정규 분포할 수 있도록 재조정이 요구된다.

출처 한국지방재정학회 홈페이지 자료실

일본, 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 공공시설(공유재산) 재편

일본은 인구감소, 고령화 등 사회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과거에 건설된 많은 공공 시설이 현재 노후화 대응 시기에 접어들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중장기적인 공공시설 매니지먼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시설은 크게 공공용 시설(학교교육 시설, 공용주택 등)과 사회 기반 시설(도로, 교량 등)로 구분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는 공공용 시설의 재편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에 대해 기술한다.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세계 지방자치동향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자산 활용 방향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2020.1)

최근 서울 전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일부 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동지 내몰림)이 발생하면서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 조직 같은 소규모 경제 주체의 위기감이 현저히 커지고 있다. 부동산 수익률 때문에 부가가치의 창출과 유통 등 직접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경제주체가 골목 상권에서 이탈하거나 협력업체와 떨어져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부동산 소유에 따른 경제활동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제주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이나 여러 업체가 연합하여 건물을 공동소유하려는 자발적인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서울시도 「서울시정 4개년 계획(2019~2022)」에서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 공동체 자산 조성'을 역점 추진 과제로 상정하였다.

이 연구보고서는 부동산 이용자가 부동산을 (준)소유하는 사회적 자산화 사례를 조사하고 사회적 자산화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실질 경제 주체가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거나 장기 이용권을 보장받는 상황을 살펴본다.

국내 자산화 주체는 민간주도형과 민관협력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광진주민연대의 공유공간 나눔, 해빗투게더 협동조합, 공공그라운드 등은 협동조합이든 주식회사이든 자산화에 필요한 재원을 개인, 민간 단체, 금융기관 등 모두 민간에서 조달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부동산 취득과 운영에는 초기 자본이 필요하므로 이들 민간 주도적 자산화 사례에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핵심 경제주체와 연합체를 이끌어가는 단체가 존재했다.

국공유지나 공기업의 자금을 활용하는 민관협력형도 있다. 빌드와 앤스페이스를 예로 들 수 있다. 빌드의 키즈카페 바이아이는 시흥시와 시민자산화 협약을 체결해 시 자산을 활용하고 있으며, 앤스페이스의 앤스테이블이나 인디워커스는 공기업인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업하여 조성되었다.

민간주도형이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자산화의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민관협력형은 공공자산의 장기 이용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출처 서울연구원 홈페이지 자료실



재정분권과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개선

경기연구원 보고서(2019.12)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자치단체 간의 재정 격차 완화 및 지역발전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이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지난 10년간 운영되어 온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고,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2019년 4%와 2020년 6% 등 지방소비세 세율이 11%에서 21%로 10%p 인상되는 상황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영 방식을 새롭게 재설계할 시점이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소비세 세율 5%분에 대하여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3개 자치단체가 지방소비세수의 35%를 출연함에 따라 2019년까지 10년간 약 3조 8천억 원이 조성되었고, 이를 '상대적 손익 규모'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분하는 형태를 취하여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도권만 출연하는 출연방식으로 인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 발생의 소지가 있으며, 배분된 기금 재원을 통하여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 발전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 등 사업 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소비세를 중심으로 조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수도권의 자치단체들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귀속되지 않는 지방소비세수에 대하여도 조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새롭게 만들어질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및 지역발전사업 추진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목표에 부합하는 적정 조성규모와 출연 비율, 수도권만이 아닌 중앙정부와 일부 부유한 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출연 방식, 복잡한 배분 기준의 단순화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실질적 지역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의 적실성 확보 및 재원지출 성과의 명확한 관리 등 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법적 근거가 취약한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는 융자관리계정의 법령 정비와 자치단체의 융자수요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

출처 경기연구원 자료실



with LOCAL

Orange Wing

오렌지 날개가 간다

100 LOFA의 도약
김동현 이사장 인터뷰

108 공제회 성공 인포그래픽
한눈에 보는 5대 신사업

Chapter 2

지방자치단체의 성장을 위한 오렌지 날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밝고 희망찬 지방의 성장을 위해 1년 365일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살피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발전에 큰 이바지

지방의 미래가치를
창조하고 지원하는

최고의 지방재정 종합지원기관

지방재정의 발전과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1964년에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하 ‘공제회’)는 국내 유일의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다.

자치단체 공유재산에 대한 공제사업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옥외광고사업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2010년부터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의 업무를
위탁받아 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후 지방회계통계사업 등으로 업무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지방재정 및 옥외광고 전문기관으로
발전했다.

LOF
한국지방자
LOCAL FINANCE



Interview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김동현

이사장



김동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국민안전처 기획조정실 실장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 국장
전라남도 경제산업국, 행정지원국 국장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지본부 본부장

지자체에 든든한 도움이 되기 위해 경쟁력을 강화하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설립 초기, 지자체의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한 보험사로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1조가 넘는 돈을 맡고 있는 자산운용기관이자 지자체에 지역개발 자금을 빌려주는 공적금융기관 역할도 겸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 및 자체가 설립한 공사, 공단, 조합 등 377개 단체를 회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바로 이 회원들이 지방재정공제회의 존립 근거다. 공제회의 미션은 회원인 지방자치단체가 성공적으로 지역경영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일이다. 1조 원가량의 자산을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창출된 수익은 지자체 지원을 위해 요긴하게 쓰인다.

공제회가 보유하고 있는 공제상품은 총 8가지이다. 재해로 인한 지자체의 건물이나 시설물, 선박의 피해복구를 위한 재해복구 공제상품과 지자체의 영조물의 관리 소홀, 예를 들어 도로관리 소홀로 주민들이 맨홀에 빠져 다쳤을 경우 피해를 보상해주는 영조물배상 공제상품이 주력 상품이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과실로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고, 이·통장들이 행정업무를 보조하다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도 있다. 이 중 2017년 7월에 출시된 재난, 범죄 등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시민안전 공제상품은 민간보험사에 비해 약 3년 정도 출발이 늦었지만, 고객맞춤형 담보를 제공하고 있어 지자체의 선호도가 높다.

공제사업의 직접운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김동현 이사장은 “공제사업의 직접운영은 보험시장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우리 공제회가 보험사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2018년 4월에 취임하여 이사장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보험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민간보험사에 대한 의존도가 작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조직 규모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 예를 들어 언더라이팅이나 손해사정, 상품요율 계산과 같은 계리 능력을 모두 갖출 수는 없는 노릇으로, 보험사에 상당 부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라고 말했다. 김동현 이사장은 현재는 민간보험사와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관계가 계속된다는 법은 없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앞으로 격화될지도 모를 민간보험사와의 중장기적인 경쟁에서 대등한 수준의 내부적인 전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민간보험사와 업무 협력을 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일부 문제점을 더욱 보완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직접 공제상품을 운용하는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격적이기보다는 안정적인 자산 운용으로 거듭나다

공제회에서 중요한 것은 자산규모이기도 하지만, 자산의 건전성 또한 중요한 이슈다. 다른 공제회에 비해 규모가 큰 것은 아니지만, 부채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가장 튼튼한 재정을 가지고 있다. 보통의 공제회는 연금 형태의 공제사업 운용으로 회비를 받아 증식한 후 원금과 함께 돌려주어야 하지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공제기관으로서, 보험형태의 공제사업을 운용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

여 재무기반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변동성이 큰 주식 보다는 안정적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채권이나 대체투자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 경제상황이 어려워도 무난한 투자수익을 달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지방재정공제회가 지자체에 빌려준 자금은 약 1조 4천억 원가량이다. 그 중 4천억 원은 우리 공제회의 자체 자금이고, 1조 원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용자해 준 것이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매년 2~3 천억 원가량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앞으로 지자체가 지역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지원을 하더라도 지자체의 지역개발 자금 수요를 고려할 때 현재의 용자 규모는 충분치 않은 편이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아파트나 자동차 등을 살 때 지방채 매입을 의무화해 강제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과연 이 같은 방법이 옳은 것일까? 덴마크의 코뮨크레딧(commune-credit)이라는 기관에서 관리하는 지자체에 대한 응자금액은 무려 38조였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지방채 매입을 의무화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지방채 인수

2019.07.10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서 수여식





1. 2019.09.18 부패 방지 선포식
2, 3. 2019년도 제5차 운영위원회



전담기관이 있어 지자체에 필요한 자금을 응자해 주고 있는 것이다. 공제회도 코
뮨크레딧과 같은 역할을 하고자 공제회 명의의 특수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재정이
탄탄하고 신용도가 높아 안정적인 공제회만의 장점으로 쌓 이자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에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힘이 될 것이다.

현재에 머무르기보다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다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현재에 머무를 수만은 없다. 공제회는
2018년 9월 창립 기념식에서 ‘제2의 창업’을 선언하며 공유재산 위탁관리사업
과 지방계약 위탁업무 수행 등 5대 신사업의 추진을 공식화하고 새롭게 나아가
고 있다.

5대 신사업을 차례대로 설명해 보겠다. 첫 번째,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공제회
가 위탁관리하는 사업이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유재산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방식과 유사한 사업이며, 지자체의 전문성과 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가 제대
로 되지 않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두

번째, 지자체가 발주하는 계약을 공제회가 대신 처리해주는 지방계약업무 대행사업이다. 현재 지자체 발주 계약의 대부분을 조달청이 대행하고 있는데, 2018년 만 해도 지자체가 지불하는 수수료가 888억 원에 다다른다고 한다. 하지만 공제회가 지자체의 발주 계약을 대행하게 된다면 이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절감된 수수료 수입마저도 회원지원사업의 형태로 지자체에 환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세 번째는 앞서 설명했던 지방채 인수 전담기관화 사업이다. 네 번째는 안전진단사업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제회에서 회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지자체에 안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업은 지방재정 컨설팅 사업이다. 이 사업은 재무분석 컨설팅 사업과 공공시설 원가분석 사업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 재무분석 컨설팅 사업은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문제점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공공시설 원가분석 사업은 수영장,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원가분석을 하고 시장성과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사용료를 제시한다.

이 5대 신사업이 공제회가 가진 기존의 장점에 날개를 달아 주민과 함께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갈 예정이다.

공제회의 회원이자 고객임과 동시에 주인인 ‘지자체’

공제회의 5대 신사업은 단순히 지자체가 발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업이라고 하면, 돈을 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공제회의 사업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임을 알 수 있다. 신사업이 정상 궤도의 오르면서 수백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외에도 회원인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원하기도 한다. 시범사업의 추진 성과에 따라 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한다.

공제회의 긍정적인 영향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3년 연속 반부패 청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반부패시스템 국제표준인증까지 취득하며 반부패 기관으로서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리더십, 리스크 평가 및 계획, 운영, 점검 및 개선활동 등 부패 방지 시스템이 국제적 수준에 다다른다고 한다. 공제회는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과 청렴·윤리경영 강화를 통해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

공제회도 코문크레딧과 같은
역할을 하고자 공제회 명의의
특수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재정이 탄탄하고 신용도가 높아
안정적인 공제회만의 장점으로
싼 이자로 자금을 조달해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힘이 될 것이다.



을 타파하고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제1의 창업시대’의 막을 내리고 ‘제2의 창업시대’의 새로운 개막을 준비하고 있는 공제회는 5대 신사업의 성공을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땀 흘리고 있다.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제회의 노력 외에도 지자체의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김동현 이사장은 회원(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공사·공단·조합)이 운영위원회와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를 통해 공제회의 중요 정책 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인의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모두 주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제회가 진행하는 5대 신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김동현 이사장의 마지막 당부는 서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함께 힘을 내야 한다는 의미를 다시금 상기시켰다.

한눈에 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5대 신사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자체의 재해복구 지원사업인 공제사업, 1조 원가량의 자산을 주식, 채권, 부동산 투자로 창출된 수익을 지자체 지원에 투입하는 자산 운용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기존에 펼쳐온 사업 이외에도 신사업을 발굴해 나가며 업무혁신을 꾀하고 있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그 5대 신사업을 만나보자.

1

공유재산 위탁관리사업



현상황

-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개선 및 추진

- 공유재산 일반재산의 수탁 전문기관 (관련 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지정(2018.12.)
- 실태조사부터 임대료 부과·징수, 매각 처분, 개발 등 공유재산 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를 대행할 예정

2

지방계약업무 대행사업

현상황

- 2018년 기준 공공 부문 조달시장 규모 838조 원, 그중 지자체 밸주 계약이 461조 원으로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19년 지자체가 지불하는 수수료의 규모는 888억 원 수준임

개선 및 추진

- 지방계약 전문기관 지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5호) (2019.5.23)
- 공제회가 지자체 밸주 계약을 대행하여 신속한 계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달 수수료 비용을 절감함. 절감된 수수료 수입은 회원지원 사업의 형태로 지자체에 환원
- 5,000만 원 미만의 계약과 민간 아파트단지 밸주 계약의 대행부터 시작해 영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



3 안전진단사업



현상황

- 노후 및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이 재해에 노출되어 있어 안전진단과 점검이 필요함

개선 및 추진

- 공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2019.9.)
- 지자체 소유 시설을 가운데 현행법상 의무적 안전진단 대상 시설로 지정된 것들을 공제회의 진단 서비스를 통해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기술을 지원할 예정

4 재무지표 및 원가분석 컨설팅사업

현상황

- 수익 사업을 시도한 지자체의 자체적인 사업관리·홍보 등이 미진한 원인으로 사업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음

개선 및 추진

- 지방회계 전문기관 지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51호) (2017.5.1.)
- 지방재정을 분석·진단해 개선 방안을 제시(재무분석 컨설팅사업)하거나 지자체 소유의 공공시설을 원가분석해 적정한 사용료를 제시 (공공시설 원가분석사업)
-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해당 지자체에 전담 배치돼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지원할 예정



5 지방채 인수 전담기관화 사업



현상황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개발과 현안 해결에 필요한 자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

개선 및 추진

- 지역상생발전기금 위탁 사무 전문기관 (관련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
- 지방채 인수 전담기관화 추진을 위해 지자체에 필요한 자금 적극 융자
- 높은 안정성과 탄탄한 신용도를 가진 공제회만의 장점을 통해 저리 이자로 자금 공급을 추진할 예정



with ISSUE

Focus

지방재정은 지금

- 112 **연간 Focus 논단**
일본 자치단체의 공공시설관리 개혁
- 134 **세계 속 현장**
영국 지방재의 최신 동향과 특성
- 150 **글로벌 이슈**
미국·핀란드 지방재정 현황
- 152 **지방재정 Q&A**
지방재정 질의회신 사례

다양한 시선으로 국내외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바라봅니다.
모두의 의견에 귀 기울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밝은 미래를 만듭니다.



이창균 고양시정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

일본 자치단체의 공공시설관리 개혁



| . 지금 왜 공공시설관리가 과제인가?

일본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공유재산, 특히 자치단체의 공공시설 관리의 효율화가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금 왜 공공시설관리가 주요과제로 떠오르고 있는가? 공공시설 자체의 노후화뿐만 아니라 일본 자치단체의 재정 악화 등 시대적 상황에 의해 공공시설관리에 대한 대응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고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일본의 [공공시설 등]이란, 공공시설, 공용시설 및 기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물 외에 도로·교량 등의 토목구조물, 공기업 시설(상수도, 하수도 등), 플랜트형 시설(폐기물 처리장, 장례식장, 정수장, 오수처리장 등) 등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또한 지방독립행정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유지관리·갱신비 등 재정적 부담을 지고 있는 시설도 포함한다.

이들 공공시설은 지역주민의 수요에 따라 적절하게 건설되어야 한다. 지역

간 과다 경쟁 및 지역주민의 표를 의식하여 무리하게 설치할 경우, 결국 자치단체장 본인의 부임 시기보다는 후임 자치단체장의 행정 및 재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 부문이 재정 악화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관리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으며,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시설관리계획수립 지침 작성,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부적인 공공시설관리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공공시설 백서의 정비, 지방채 및 지방교부세 지원 등 다양한 제도 및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II. 일본 자치단체의 공공시설관리 개혁 동향

1. 공공시설관리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책

일본은 국가적 차원에서 재무성 및 국토교통성이 관계 중앙부처에 통지를 하여 국공유재산의 최적 관리를 위한 대책을 요청하고 있다. 재무성 및 국토교통성은 경제재생과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사회자본 정비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인프라 장기수명화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각 지역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대를 통해 국공유재산의 최적 이용을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총무성에서는 2014년 8월 29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대한 지역의 국공유재산의 최적 이용에 대한 방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또한 공공시설의 정비·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경제·재정재생 액션프로그램 2016](2016년 12월 경제재정자문회의 결정)의 주요 분야별 개혁의 추진 항목에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사회자본 정비 내용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구조의 전환과 공공시설 스톡의 적정화 과제에 대한 향후 추진 내용에서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고정자산대장의 정비에 맞추어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률 및 일인당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연도간 추이 비교 및 유사 단체 비교를 실시한 뒤, 그래프를 활용하여 나타냄과 동시에 각 자치단체의 분석 의견을 첨부하여 공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공시설에 관한 정보의 [가시화]를 철저히 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각 자치단체의 종합관리계획의 주요 기재 항목의 공표에 있어서도 모든

자치단체 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수립된 계획에 대해 재검토하여 반영하는 등 새롭게 [도식화, 가시화]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의 활용 및 선진 사례의 검토를 통한 자치단체의 공공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어 2017년에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 2017-인재 투자를 통한 생산성 향상](6월 내각결정)의 사회자본 정비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적 스톡의 적정화 및 인프라 관리의 스마트화의 과제가 이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시설계획의 수립과 이에 기초하여 공공시설의 집약화·복합화, 진척 상황에 따른 지속적인 공공시설종합관리계획의 재검토 및 효율적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부처가 가이드라인의 수립 및 간접 비용 산정 소프트의 제공, 선진 사례의 검토를 통해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개별 시설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중장기 주민 일인당 인프라 유지관리, 간접비의 전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을 비교할 수 있는 형태로 [가시화]하여 나타내도록 하고, 민간의 노하우도 활용하여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 총무성의 방침 및 대응

총무성에서는 2014년 8월 29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대한 지역의 국공유재산의 최적 이용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공공시설의 노후화 대책 및 내진화 등은 국가적 과제이고, 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정상황 속에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대하여 지역의 국공유재산 전체의 최적이용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 2014]에서는 [지역의 공적시설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최적 이용을 추진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총무성은 공공시설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관리 및 추진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총무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대 협의를 원활히 하고 지역의 국공유재산의 최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상담을 받음과 동시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총무성에서는 2016년 각 자치단체에 공공시설 매니지먼트의 적극적인 추진에 대한 내용을 시달했다. 공공시설의 노후화 대책이 큰 과제가 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심각하므로 공공시설의 매니지먼트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및 통일적인 기준에 의한 고정자산대장의 정비에 노력하고 있지만, 수립된 종합 관리계획 및 고정자산대장에 기초하여 공공시설 매니지먼트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음 사항에 유의하면서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종합관리계획 및 개별 시설별 장기수명화계획(개별 시설계획)에 기초하여 공공시설의 점검·진단 및 집약화·복합화를 추진함과 아울러 추진한 결과를 고려하여 계획의 지속적인 재검토를 통한 보다 충실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총무성에서는 각 자치단체의 종합관리계획의 주요 기재 내용을 정리한 일람표 및 지금까지의 공공시설최적화사업채를 활용하여 시설의 집약화 및 복합화를 추진하고 있는 관점 및 주민참가의 관점을 고려한 사례집을 작성하여 총무성 홈페이지(<http://www.soumu.go.jp/iken/koushinhappyou.html>)에 공표하고 있다.

한편, 공공시설 매니지먼트의 일환으로 보유자산에 대한 유효 활용성 제고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고정자산대장에 의한 자산정보를 공표하고 있으며 고정자산대장의 정비에 의해 각 자치단체에서 파악되는 자산 상황을 폭넓게 자치단체에서 공유하고 민간 사업자와도 연대하여 추진한다. 미이용 자산의 활용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정비된 고정자산대장에 대해서 자산의 용도 및 매각 가능 구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의 추진 노력과 연동하여 보유자산을 보다 유효하게 활용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공유자산의 유효 활용에 대해 국토교통성이 [공적부동산(PRE) 포털사이트]를 개설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시하고 있는 공유자산의 정보를 집약하여 공표하고 있다. 아울러 각 중앙부처가 공유자산 유효 활용 추진 사례를 정리하여 자산정보 공표 및 보유자산의 활용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3. 공공시설관리계획 수립 지침의 개정

가) 수립 배경

일본은 2014년 4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종합관리계획의 수립에 대한 지침]을 시달하여 시행하다가 2018년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4년

4월 공공시설종합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시달한 후, 2019년 3월 말 시점에서 99.8%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후 종합관리계획에 기초하여 개별 시설에 장기수명화계획(개별 시설계획)을 수립함과 아울러 공공시설의 종합적 적정관리 추진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2018년 2월 종합관리계획에 대한 지침을 개정하여 자치단체의 공공시설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종합관리계획의 수립 지침을 시달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오래전에 건설된 공공시설이 지금부터 대량으로 간신 시기를 맞이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 있다. 둘째, 인구 감소에 의한 향후 공공시설의 이용수요가 변화하고 있다. 셋째, 시정촌 합병 후 공공시설 전체의 최적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3가지 측면을 배경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은 공공시설의 노후화 대책이 큰 과제가 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는 심각한 재정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구 감소 등에 의해 공공시설의 이용수요 변화가 예상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긴급하게 전체 공공시설 상황을 파악하여 장기적인 시점에서 간신, 통폐합, 장기수명화 등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재정 부담 경감 및 평준화함과 동시에 공공시설의 최적 배치를 실현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이 공공시설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는 마을 가꾸기를 추진하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2017년부터 추진되어 온 [國土強靄化(내쇼널 레질리언스, National Resilience)]에도 부합된다는 것이다.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2013년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에서 인프라의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전하는 가운데 공공시설에 대해 [새롭게 조성하는 것]에서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일본부흥전략-JAPAN is BACK-]에 근거하여 2013년 11월 29일 [인프라 장기수명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프라 장기수명화계획(행동계획)·개별 시설별 장기수명화계획(개별 시설계획)을 수립함과 아울러 이들 계획에 기초하여 점검을 실시한 뒤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나) 개정 개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관리에 대한 지침은 2018년 2월 공공시설관리를 보다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종합관리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재검토를 통해 수립 지침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였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가차원에서 전 중앙부처 대응 체계 구축을 들 수 있다. 개별 시설계획의 수립 및 구체적인 시설의 적정관리에 관한 추진에 대해서 각 시설 소관 부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및 개정의 단계에서 전 부서 종합적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 ① 공공시설 정보의 관리 및 집약
- ② 개별시설계획수립에 대한 진척 상황 관리, 종합관리계획의 진척 상황의 평가 및 집약
- ③ 전 부서 획일적으로 시설의 적정관리 추진을 검토하는 기구 설치 등이다.

둘째, PDCA(Plan-Do-Check-Action)¹ 사이클의 확립을 들 수 있다. 종합관리계획에서 PDCA 사이클 기간별로 설정한 수치 목표에 비추어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계획의 개선으로 연계하는 등 PDCA 사이클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셋째, 종합관리계획의 지속적인 재검토 및 충실을 들 수 있다. 종합관리계획 수립 후에도 점검, 진단 및 개별 시설계획에 기재한 대책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재검토를 실시하고 순차적으로 개선하면서 추진해 나간다.

넷째, 유지관리, 간접에 관계하는 중장기적인 경비의 예측을 들 수 있다. 유지관리, 간접과 관련하여 중장기적인 경비의 예측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나타내고, 재원의 전망에 대해서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기간: 30년 이상
- ② 회계 구분: 보통회계 및 공기업회계
- ③ 건물 구분: 건축물 및 인프라 시설
- ④ 경비 구분: 유지관리, 수선, 개보수 및 간접 등

¹ 계획(plan), 실행(do), 평가(check), 개선(act)의 4단계를 반복하여 업무 효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생산 및 품질 관리 방법으로, 미국의 통계학자 '데밍'이 제시한 모형이다.

다섯째, 유니버설디자인화의 추진 방침을 들 수 있다. 2020년 도쿄 올림픽 및 페럴림픽 경기대회를 계기로 공공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유니버설디자인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2020 행동계획]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의 거리 가꾸기의 측면을 고려하여 [유니버설디자인화의 추진 방침]에 대해 기재한다.

다) 종합관리계획에 기재해야 할 사항

1) 공공시설 현황 및 장래 전망

공공관리시설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기재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공공시설 및 해당 자치단체를 둘러싼 현상 및 장래에 걸쳐 예상·과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분석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를 파악·분석은 공공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기간은 가능한 장기간에 걸쳐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경비 전망에 대해서는 30년 정도 이상의 기간에 관해 보통회계와 공기업회계, 건축물과 인프라 시설을 구분하고 유지관리·수선, 개수 및 개신(이하 유지관리·개신이라 한다) 등 경비구분별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① 노후화의 상황 및 이용 상황을 비롯한 공공시설의 상황
- ② 총인구 및 연령별 인구에 대한 향후 예측
- ③ 공공시설의 유지관리·개신에 관계하는 중장기적인 경비의 예상 및 이들 경비에 대해 충당할 수 있는 지방채·기금 등 재원의 전망

2) 공공시설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1) 계획기간

공공시설 현황 및 장래 예측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 등 공공시설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계획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종합관리계획은 해당 자치단체의 장래 인구 및 재정 전망을 기초로 하여 장기적인 시점에 기초하여 검토해야 한다.

한편 개별시설별로 장기수명화계획(개별시설계획)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시설 현황 및 장래 전망]에 관계없이 설정하는(단, 적어도 10년 이상 계획기간으로 한다)것도 가능하다.

(2) 전 부처 종합적 추진 체계 구축 및 정보관리·공유대책

공공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현상·시설 유형(도로, 학교 등)별로 각 부국에서 관리되고, 공공시설관리에 관한 정보가 전 부처에 공유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 부처 종합적 추진 체계에 대해 기재한다. 또한 정보의 도출 단계에서부터 공공시설의 정보를 관리·집약함과 아울러 개별 시설계획 수립에 대한 진척 상황을 관리하고 종합관리계획의 진척 상황의 평가 등 종합적으로 집약하는 부서를 설정한다. 그리고 부서 획적 조직으로 시설의 적정관리에 관한 추진을 검토하는 장을 만드는 등 전 청적인 차원에서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현상 및 과제에 관한 기본 인식

해당 자치단체의 공공시설 현상 및 과제에 대한 인식(충당 가능한 재원 전망 등을 고려하여 공공시설의 유지관리·갱신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총인구 및 연령별 인구에 대한 향후 전망을 고려한 이용수요를 검토하여, 공공시설의 수량이 적정 규모에 있는지 등)을 기재한다.

(4) 공공시설 관리에 관한 기본적 견해

해당 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갱신·통폐합·장기수명화 등 어떻게 공공시설을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현상 및 과제에 대한 기본적인 견해를 기재한다. 또한 장래 마을가꾸기 관점에서 검토함과 동시에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²,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³의 활용에 대해서 기재한다. 구체적으로 계획기간의 공공시설 수 및 연면적 등 공공시설의 수량에 관한 목표를 기재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견해를 기재한다.

² 공공 서비스의 제공에 민간이 참여하는 기법을 폭넓게 규정한 개념으로 민간자본 및 민간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효율화 및 공공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한다.

³ 공공시설의 건설, 유지관리, 운영을 민간 자금, 운영 능력 및 기술적 능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효율화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공공사업의 기법이다.

① 점검·진단의 실시 방침

향후 공공시설의 점검·진단 등 실시 방침에 대해 기재한다. 또한 점검·진단 등 이력을 집적·축적하고 종합관리계획의 수정에 반영하여 충실히 추진함과 동시에 유지관리·갱신을 포함하여 노후화 대책에 활용해야 한다.

② 유지관리·갱신 등 실시 방침

유지관리·갱신의 실시 방침(예방보전형유지관리⁴)을 고려하여 토탈 코스트⁵의 감축·평준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만 갱신하는 등)에 대해 기재한다. 갱신의 방침에 대해서는 통합 및 폐지의 추진 방침과의 정합성 및 공공시설의 공용을 폐지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유의한다. 또한 유지관리·갱신의 이력을 집적·축적하고 종합관리계획의 개선에 반영함과 동시에 노후화 대책에 활용한다.

③ 안전 확보의 실시 방침

점검·진단에 의해 고도의 위험성이 인정된 공공시설 및 노후화 등에 의해 공용을 폐지해야 하고 향후에도 이용될 가능성이 없는 공공시설에 대한 대응 방안, 위험성이 높은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의 실시 방침에 대해 기재한다.

④ 내진화의 실시 방침

공공시설의 평상시 안전뿐만 아니라 재해시의 거점 시설로서의 기능 확보 측면도 포함하여 공공시설 내진화의 실시 방침에 대해 기재한다.

⑤ 장기수명화의 실시 방침

수선 또는 예방적 수선에 의한 공공시설의 장기수명화의 실시 방침에 대해 기재한다.

⑥ 유니버설디자인화의 추진 방침

2017년 [유니버설디자인 2020 행동계획]의 유니버설디자인의 거리가꾸기의 관점을 고려하여 공공시설의 계획적인 개보수를 통한 유니버설디자인화의 추진 방침에 대해 기재한다.

⑦ 통합 및 폐지의 추진 방침

공공시설의 이용 상황 및 내구연수를 고려하여 공공시설의 공용을 폐지하는 경우의 견해 및 현재의 규모 및 기능을 유지한 채 갱신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다른 공공시설과의 통합 추진 방침에 대해서 기재한다. 또한 타 목적의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이용·통합건축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⁴ 손상이 경미한 조기 단계에서 예방적인 수선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기능의 유지·회복을 위한 관리기법을 말한다. 참고로 사후적 관리는 시설의 기능 및 성능에 관한 명확한 하자가 발생하여 수선을 하는 관리기법을 말한다.

⁵ 공중장기에 걸쳐 일정 기간에 걸쳐 필요한 공공시설의 건설, 유지관리, 갱신에 관계하는 경비의 합계를 말한다

⑧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한 체계의 구축 방침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 및 담당 직원의 기술연수 실시 방침을 기재한다. 또한 적정한 관리를 위해 민간도 포함한 추진체계의 정비에 대한 견해도 기재한다.

(5) PDCA 사이클(Plan–Do–Check–Action)의 추진 방침

종합관리계획의 진척 상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종합관리계획을 개정하는 내용을 기재한다. 또한 PDCA 사이클의 기간 및 기법, 평가 결과의 의회 보고 및 공표 방법에 대해서도 기재한다.

3) 시설 유형별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위 2)의 [공공시설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중 (3) 및 (4)의 각 항목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설 유형(도로, 학교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재한다. 또한 개별 시설계획과의 정합성에 대해 유의한다.

라) 종합관리계획 수립·개정의 유의 사항

1) 행정 서비스 수준의 검토

종합관리계획의 수립·개정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공공시설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관리 추진의 전제로서 해당 자치단체의 행정 서비스 수준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개별 공공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때에는 해당 서비스가 공공시설을 유지하지 않으면 제공 불가능한 것인지(민간 대체 가능성) 등 공공시설과 서비스의 관계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2) 공공시설의 실태 파악 및 종합관리계획의 수립·개선

종합관리계획은 수립·개정의 검토 시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상태(건설 연도, 이용 상황, 내진화의 상황, 점검·진단의 결과 등) 및 추진 상황(점검·진단, 유지관리·갱신 이력 등)을 정리하고 수립해야 한다.

또한 종합관리계획의 내용에 대해서는 수립 후에도 종합관리계획 및 개별 시설계획의 수립에 수반하여 실시하는 점검·진단 및 개별 시설계획에 기재한 대책 내용을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재검토하여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3) 수치목표의 설정과 PDCA 사이클의 확립

종합관리계획의 수립·개정에 있어서는 종합관리계획이 마을 가꾸기 및 주민에게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획기간의 공공시설 수·연면적에 대한 목표 및 토탈코스트의 감축·평준화에 관한 목표에 대해 가능한 수치 목표를 설정하는 등 목표의 정량화에 노력한다.

또한 계획기간 내의 일정 기간으로 정한 PDCA 사이클의 기간별로 설정한 수치목표에 비추어 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종합관리계획 개정에 연계하는 등 PDCA 사이클의 확립에 노력한다.

4) 의회 및 주민과의 정보 공유

해당 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의 최적 배치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는 마을 가꾸기의 관점에서 개별 시설의 노후화 대책에 대한 사업실시 단계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관리계획의 수립·개정 단계에서도 의회 및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PPP/PFI의 활용

공공시설의 개선시에는 민간의 기술·노하우,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유효한 경우가 있으므로 종합관리계획의 검토에 있어서는 PPP/PFI의 적극적인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공공시설의 정보를 폭넓게 공개하는 것이 민간 활력의 활용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공공시설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

6) 시구정촌 권역을 넘은 광역적 검토

종합관리계획의 수립·개정에 있어서는 시구정촌 간의 광역연대를 더욱 추진하는 관점에서 예를 들어, 정주자립권형성협정의 권역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인접하는 시구정촌을 포함하는 광역적 관점에서 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도도부현에서는 권역의 시구정촌의 공공시설도 염두에 두고 광역적 관점에서 종합관리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합병자치단체의 추진

합병자치단체에서는 공공시설의 통폐합에 대한 어려움이 과제가 되고 있고, 또한 과소지역에서는 도시부와 비교하여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하

고 있는 등 공공시설을 건설할 당시와 비교하여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특히 조속히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기초하여 공공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기타

1) [인프라 장기수명화기본계획]에 대해

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노후화 대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인프라 장기수명화기본계획]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프라 유지 관리·갱신을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추진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인프라장기수명화계획(행동계획) 및 개별 시설별 구체적 대응 방침을 규정하는 개별시설별의 장기수명화계획(개별 시설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종합관리계획은 이 행동계획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인프라 장기수명화기본계획]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각 인프라 관리자에 대한 지원 수단으로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경험 및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개별 시설계획의 책정에 있어서는 각 인프라의 소관 부처로부터 기술적 조언이 이루어지고 있고, 개별 시설계획 수립을 위한 매뉴얼·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총무성 홈페이지(http://www.soumu.go.jp/iken/koushinhyou/kobetu-keikaku_manual-guideline/index.html)에 게재하여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2) 공기업 분야에 관한 시설에 대해

공기업에 관한 시설도 종합관리계획의 대상이 된다. 또한 총무성에서는 시설의 노후화에 수반하는 갱신투자의 증대, 인구 감소에 따른 요금수입의 감소 등 공기업 경영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장래에 걸쳐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2016년 [공기업 경영의 유의 사항에 대해]에 의해 2020년까지 각 공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을 요청하고 있고, 경영전략의 수립 및 수정에 있어서는 종합관리계획과의 정합성에 유의하도록 하고 있다.

3) 공공시설 매니지먼트의 추진 상황에 관한 정보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종합관리계획의 수립·개정에 있어서는 선진 자치단체의

사례 및 각 자치단체의 종합관리계획의 주요 기재 사항을 정리한 일람표를 총무성의 홈페이지(<http://www.soumu.go.jp/iken/koushinhappyou.html>)에 게재하여 참고하게 하고 있다. 또한 종합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기본적인 Q&A도 병행하여 게재하여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4) 간접비용 산정 소프트의 활용에 대해

총무성 홈페이지에 간단하게 간접비용을 추계할 수 있도록 간접비용 산정 소프트 등 간접비용의 추계에 관한 정보를 게재하여 활용하게 하고 있다.

5) 종합관리계획 추진에 대한 재정조치에 대해

공공시설 적정관리추진사업체는 종합관리계획에 기초하여 집약화·복합화사업, 장기수명화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조치가 강구되고 있다.

6) 지방공회계(고정자산대장)의 활용

통일적인 기준에 의한 재무 서류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고정자산대장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의 종합관리계획에 맞추어 매년 적절하게 간접하는 것이 필요하다. 점검·진단 및 유지관리·간접의 이력 등 공공시설 매니지먼트에 맞는 정보를 고정자산대장에 추가하는 등 공공시설의 매니지먼트에 맞는 정보와 고정자산대장의 정보를 축적함으로써 공공시설의 정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정자산대장 및 재무 서류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공공시설의 유지관리·간접에 관한 중장기적인 경비 전망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별·시설별 세그먼트(segment)분석을 통해 종합관리계획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공공시설의 적정한 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II. 일본 자치단체의 공공시설관리 추진 대응

1. 공공시설의 공동 처리

일본은 최근 공공시설에 대한 광역행정 대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공공시설 관리는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 재정이 악화하는 가운데 공공시설의 노후화 및 다양한 공공시설의 요구에 대응한 시설 서비스의 제공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총량 억제, 시설의 장기수명화(내구연수의 장기화), 관리·운영의 효율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에 대한 광역연대를 통한 공공시설관리가 주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공시설종합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표 1>과 같이 2019년 3월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99.8%(1,785 개 자치단체)가 계획 수립을 완료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을 정비한 후의 사후관리에는 소홀하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총량과 노후화 상황, 이용 현황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유지 및 간수에 필요한 비용과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대책에는 시설의 장기수명화(안전성 확보), 시설의 최적화(통폐합, 복합화), 시설의 적정관리(민간활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의 최적화 대책으로 공공시설 보유량 삭감을 채택하고 구체적인 삭감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표 1> 공공시설종합관리계획 책정 상황에 관한 조사(결과 개요)

2019년 3월 31일 현재 도도부현 및 지정도시에 대한 전 자치단체,
시구정촌에 대해서는 99.8%의 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종합관리계획을 책정 완료
(2019년 3월 31일)

구분	도도부현		지정도시		시구정촌		합계(참고)		
	단체수	비율	단체수	비율	단체수	비율	단체수	비율	
회신 자치단체 수	47	100.0%	20	100.0%	1,721	100.0%	1,788	100.0%	
책정 완료	47	100.0%	20	100.0%	1,718	99.8%	1,785	99.8%	
미책정	0	0.0%	0	0.0%	3	0.2%	3	0.2%	
책정 예정	R2 연도중	0	0.0%	0	0.0%	1	0.1%	1	0.1%
	R3 연도중	0	0.0%	0	0.0%	2	0.1%	2	0.1%

출처 総務省、公共施設等総合管理計画の更なる推進に向けて、2019

아울러 〈그림 1〉 및 〈표 2〉와 같이 인근 자치단체와 시설의 공동사용, 공공시설에 대한 데이터 공유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광역연대를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많다. 시설의 노후화와 재정 악화 등으로 시설 보유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근 시정촌, 현과 시의 경계를 넘어 시설을 유효하게 활용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 일본 공공시설관리 광역연대 체계

공동처리제도		제도의 개요	운용 상황(2018. 7월 현재)
법인 설립이 불필요한 간편한 체계	연대협약	지방자치단체가 연대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기본방침 및 역할 분담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	체결 건수 319건
	협의회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관리 집행, 연락 조정, 계획작성을 위한 제도	체결 건수 211건 주요 사무 소방 41건(19.4%), 광역행정계획 27건(12.8%), 구급25건(11.9%)
	기관의 공동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또는 위원, 행정기관, 단체장의 내부 조직을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제도	체결 건수 446건 주요 사무 개호구분인정심사 127건(285%), 공평위원회 1,180건(17.8%), 경정 861건(130%)
	사무 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일부를 관리·집행을 타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는 제도	위탁 건수 6,628건 주요 사무 주민표 교부 1,402건(21.2%), 공평위원회 1,180건(17.8%), 경정 861건(130%)
	사무의 대체 집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일부를 관리·집행을 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으로 타 자치단체에게 대행시키는 제도	대체 집행 건수 3건 상수도사무1건, 간이수도사무1건, 공해방지사무1건
별도의 법인 설립이 필요한 체계	일부사무조합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건수 1,466건 주요 사무 쓰레기처리 400건(27.3%), 분뇨 처리 326건 (22.2%), 구급 268건(18.3%), 소방 268건(18.3%)
	광역연합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에 걸쳐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도도부현에서 직접 관련 및 사무이양을 받을 수 있다.	설치 건수 116건 주요 사무 후기고령자의료 51건(440%), 개호구분인정심사 46건(39.7%), 장애구분인정심사 31건(26.7%)

출처 총무성 홈페이지

〈표 2〉 공동처리의 활용 상황(사무, 방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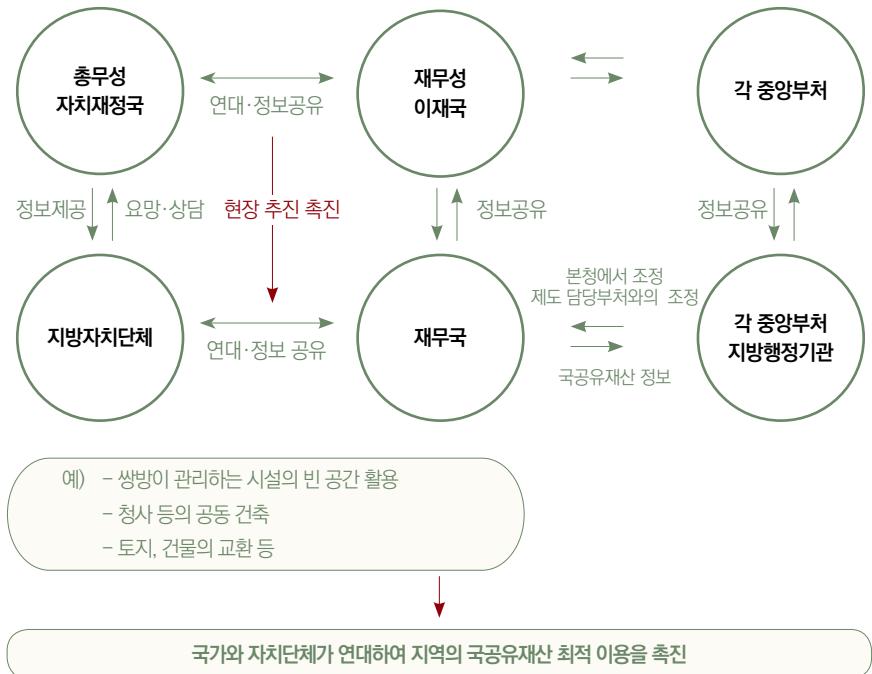
(2008년 7월 1일)

사무종류	공동처리 방식	협의회	기관의 공동설치	사무의 위탁	일부사무조합	광역연합	계
광역행정계획, 고향시정총권계획	110			158	30	298	
농업용수	11		73	33		117	
임도, 임야(산림의 보호관리 포함)	2		6	93	3	104	
병원, 진료소	3	1	48	135	4	191	
아동복지			46	27	1	74	
노인복지	1		18	127	13	159	
장애인복지	4	108	51	80	27	271	
개호보험	2	142	42	123	47	356	
후기고령자의료			15	1	49	65	
상수도	5		39	106	1	151	
하수도	7		196	34	2	239	
쓰레기 처리	2		107	422	25	556	
분뇨 처리			79	386	14	479	
화장장	3		71	233	14	321	
초등학교	8		74	11		93	
중학교	8		65	31		104	
사회교육 (청소년육성시설의 관리·운영 포함)	28	1	18	44	4	95	
소방	1		152	297	19	469	
구급	1		140	295	19	455	
직원연수	5		61	57	15	138	
퇴직수당			80	48		128	
공무재해		6	364	43		413	
공평위원회		114	1,169	10	4	1,297	
경륜, 경마, 경정	1		838	31		870	
회관, 공유재산의 유지 및 관리	2		44	87	5	138	
주민표의 교부			936			936	

출처 総務省, 市町村における事務の共同処理の状況について, 2000

한편, 지역의 공적재산에 대한 최적화 이미지는 〈그림 2〉와 같다. 첫째, 공적 시설의 노후화 대책 및 내진화는 국가적 과제이고 엄격한 지방재정 상황하에서 효율적으로 노후화 대책, 방재 대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대하여 각각 관리하는 재산의 최적이용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셋째, 재무성 및 총무성은 지역의 국공유재산에 관한 정보, 현장의 요구 사항 및 제안에 대해 재무성 및 총무성,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추진을 지원하고 있는 체계를 갖고 있다.

〈그림2〉 일본 공공시설관리 광역연대 체계



2. 자치단체의 개별 시설별 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인프라 관리자는 각 시설의 특성 및 유지관리·갱신에 관한 추진 상황을 고려하면서 다음의 기재 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개별시설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전략적인 유지관리·갱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각 인프라 관리자가 이미 동종 및 유사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분간 해당 계획에 기초하여 개별 시설계획의 수립으로 대신하고 있다.

가) 대상 시설

개별 시설계획을 수립한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계획의 수립은 각 시설의 유지관리·갱신에 관계하는 추진 상황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개별 시설을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계획 수립의 단위(예를 들어, 도로 및 하수도 등 사업별 분류 및 교량, 터널, 관로 등 구조물별 분류)로 설정하고 그 단위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나) 계획기간

인프라 상태는 연수와 노후화 및 피로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정기 점검 사이클을 고려하여 계획기간을 설정하고 점검 결과를 고려하여 계획을 갱신하고 있다. 기본 계획의 추진을 통해서 노하우 및 경험을 축적해나가고 계획기간의 장기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유지관리·갱신에 관한 코스트의 예측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다) 대책의 우선순위 고려

개별 시설의 상태(노화, 손상 상황 및 요인 등) 및 해당 시설의 역할·기능·이용 상황·중요성·대책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우선 순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라) 개별 시설의 상태

점검 및 진단에 의해 얻은 개별 시설의 상태에 대해 시설별로 정리하고 있다. 또한 점검, 진단을 미실시한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 실시 시기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책의 우선순위에서 정한 사항 중에서 개별 시설의 상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고 있다.



마) 대책 내용과 실시 시기

대책의 우선순위 및 개별 시설의 상태를 고려하여 향후 점검 및 진단, 수선 및 개선 특히 개선 시기를 고려한 기능 전환, 용도 변경, 복합화 및 집약화, 폐지 및 철거, 내진화 등 필요한 대책에 대해 강구할 조치 내용 및 실시 시기를 시설별로 정리하고 있다

바) 대책비용

대책기간 내에 필요한 대책비용을 대략적으로 산정하여 정리하고 있다.

3. 공공시설적정관리에 관한 지방재정 조치 확대

2017년에 도입한 [공공시설적정관리추진사업체]를 통해 장기수명화사업의 대상을 확충함과 아울러 유니버설디자인화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하는 등 재정 지원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공공시설관리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장기수명화, 전용, 입지적정화,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에 대해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력에 대응한 지방교부세조치율을 인상(지방재계획액 2017년 3,150억 원에서 2018년 4,320억 원으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0.1조 원 증가하였다. 공공시설적정관리추진사업체에 관계된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가) 집약화·복합화 사업

대상 사업은 연면적 감소를 수반하는 집약화·복합화 사업으로 총당률은 사업비의 90%, 교부세조치율은 50%(원리금 상환의 50%를 기준재정 수요액에 산입)이다.

나) 장기수명화사업

대상 사업은 공공용 건축물과 사회기반시설로 구분된다. 먼저 공공용 건축물은 시설(의무교육시설 포함)의 사용연수를 법정 내구연수를 초과하여 연장하는 사업이고 사회기반시설(도로, 농업수리시설, 하천관리시설, 사방관계시설, 해안 보전시설, 치산시설, 항만시설, 어항시설, 농도) 소관 중앙부처가 제시하는 관리 방침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사업이다.

충당률은 사업비의 90%, 교부세조치율은 30%(원리금 상환금의 30%를 기준 재정 수요액에 산입, 재정력에 따라 30%~50%)이다.

다) 전용 사업

대상 사업은 타용도 전용 사업이다. 충당률 사업비의 90%, 교부세조치율은 30%(원리금 상환금의 30%를 기준재정 수요액에 산입, 재정력에 따라 30%~50%)이다.

라) 입지적정화사업

대상 사업은 캠퍼트시티의 형성을 위한 장기적인 마을 가꾸기의 관점의 사업이다. 충당률은 사업비의 90%, 교부세조치율은 30%(원리금 상환금의 30%를 기준재정 수요액에 산입, 재정력에 따라 30%~50%)이다.

마) 유니버설디자인화사업

대상 사업은 공공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화를 위한 개수사업이다. 충당률은 사업비의 90%, 교부세조치율은 원리금 상환의 30%(재정력에 따라 최대 50%까지 인상)를 기준재정 수요액에 산입하고 있다.

바) 시정촌청사기능간급보전사업

대상 사업은 1981년의 내진 기준 도입 전에 건설된 내진화 미실시의 시정촌 청사의 재건축사업이다. 충당률은 기채대상경비의 90% 이내(교부세조치 대상분 75%), 교부세조치율은 원리금 상환의 30%를 기준재정 수요액에 산입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채충당잔액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사) 제거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건출물 및 기타 공작물의 제거사업이다. 충당률은 사업비의 90%이고 교부세조치는 없다.



IV. 시사점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지방재정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공공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관리에 대한 지침을 설정하고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 공유 및 추진 체계의 구축과 아울러 재정조치를 확대하면서 공공시설의 합리적 관리를 지속적으로 유인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채 활용, 지방교부세 활용 등 다양한 지방재정제도를 통한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공시설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 시설관리에는 중앙정부와 연계, 자치단체 간 광역연대, 민간 활용 등 다양한 대응 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 또한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책에는 시설의 장기수명화(안전성 확보), 시설의

최적화(통폐합, 복합화), 시설의 적정관리(민간 활용) 등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의 최적화 대책으로 공공시설 보유량 삭감 목표를 정하여 구체적으로 삭감해 나가고 있고 또한 시설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인근 자치단체와 시설의 공동 사용, 광역적인 연대를 통한 공공시설의 노후화와 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시설 보유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근 시정촌, 현과 시의 경계를 넘어 시설을 유효 활용하는 발상은 우리나라에도 바람직한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공시설에서 나아가 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수립 방침을 설정하여 지원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공유재산의 합리적인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실행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율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같이 공공시설은 이제 [새롭게 조성하는 것]에서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総務省、公共施設等総合管理計画の更なる推進に向けて、2018

国土交通省、個別施設計画の策定について、2018

総務省 <http://www.soumu.go.jp/kouiki/kouiki.html>

総務省、地方公共團體における公的不動産と民間活力の有效活用に関する照査研究報告書 2015

総務省、國家と地方自治團體の連帶による地域の國公有財産の最適利用について、2014

総務省、公共施設綜合管理計劃の策定にあたっての指針 2018

村田、公共施設等の総合的な管理による老朽化対策等の推進[下]、地方財務、2014

総務省、市町村における事務の共同處理の状況について、2000



홍선경 재정회계글로벌리포터

영국 지방채의 최신 동향과 특성



Part 1. 영국 지방자치단체 채무 관리 및 지방채 관리 방안

■ 영국 지방채 관리 및 현황

원칙적으로 상당 부분의 영국 지방채는 영국 재무성 산하 채권관리청(DMO; Debt Management Office)을 통해 발행되어 왔으나 최근 긴축재정이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 추세로 돌아서며 채권관리청의 높은 수수료보다 저가 대출 수수료를 제공하는 지방정부협의회(LGA)의 지방채 발행이(Municipal bonds) 2017년부터 시행되어 지자체들이 직접 자금 조달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추세이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자체들의 중앙정부 교부금은 2015년 26억 파운드 삭감되었다. 그리고 2010년 대비 교부금 누적 감축 폭이 40%에 이르렀다. 정부 보조금이 계속 줄어들며 재정난을 겪는 지방정부들이 수행할 공공사업 서비스의 수요는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부 교부금 긴축조치를 강행하는 중앙정부에 반하여 지자체들이 독자적 발행 기관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2017년 계획 및

조정을 거쳐 첫 지지방채를 2017년에 발행했고 연간 20억~30억 파운드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 유관 기관

- **중앙부처(DMO) 소속 공공사업대출위원회(Public Works Loan Board(PWLB))**
중앙 정부 부처인 채권관리청의 실행 기구격인 산하 조직으로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과 관리를 전담하는 공공사업대출위원회(PWLB)를 통해 지방채를 관리한다. DMO는 기준과 원칙 수립을 주로 책임지고, 실질적인 채권 회수 및 발행과 관련한 업무는 산업은행을 통해 처리한다.
- **지방정부연합 소속 지방채 에이전시(Municipal Bonds Agency)**
새로 발행되는 지방채는 56개 지역의회와 지방정부협의회(LGA)가 공동으로 보증한다. 채권 발행은 56개 지자체가 합의해 설립한 특수법인 지방자본금융회사(LCF)가 담당한다.

■ 영국 지방채 기본 개요(역사적 발전과정)

- 1970년대 이전에는 사업별로 발행 규모를 제한하는 기채허가제를 운용하다 대처정권 시기부터 주택, 교통, 교육, 복지, 도시 대책, 기타 6개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 발행 한도액을 설정해 관리하는 Capping제도 일종의 상한제를 도입하였다.
- 상한제의 시행이 지방채무를 억제하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며 1989년부터 단위 사업별 기채승인제도가 부활한다.
- 어음(bills), 채권(bond), 저당증권(mortgages), 무담보채(debentures), 연금증서(annuities) 등 다양한 형태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 지방채 현황

지방채 비중 현황은 황금률의 적용으로 지방채 수입이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에 그치고 있지만 자본 지출 부문에서는 30% 이상을 지방채에 의존하고 있다. 채권 형식의 발행은 지방채 잔고의 2%에 불과하며 증서 차입 의존도가 높다. 간접금융 의존도가 높은 이면에는 공공사업대출위원회(PWLB; public works loan board)에서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을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세컨더리 마켓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채 시장을 통한 지방채의 거래와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있었다.

▣ 공공사업대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 P- PWLB는 자치단체에 대한 융자할 목적으로 1875년 공공사업융자법(public works loan act)에 의해 설립되었다. PWLB의 융자 재원은 국가대부기금(national loans fund)을 통하여 주로 국채로 조달한다.
- 공공사업대부위원회는 균형개발대출을 목적으로 공공성 높은 사업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해 지역개발금융 업무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 공공사업대부위원회는 대출 기준과 대출 정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대출의 결정만을 주로 책임지고, 실제 대출 및 회수는 전문 국책은행이 구분계리하에 수행한다.
- 공공성 높은 지역개발 사업과 수익성이 있는 민간적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영세 지자체에 대한 지방 재원 보전 차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 일정 범위 내 지역별 분산대출제가 가능하다.

Part 2. 지방채 발행제도

▣ 중앙정부는 공공지출계획에 입각하여 공공 부문 차입필요액(PSBR; Public Sector Borrowing Requirement)을 산출하는데, 여기에는 개별 중앙부처 배분액뿐 아니라 지방채도 포함하여 국가차원에서 관리한다.

▣ PSBR 내부에 자치단체 차입필요액(LABR; Local Authority Borrowing Requirement)을 설치하여 총량적으로 규제한다.

- 공공지출계획에는 각 중앙부처분 가운데 자치단체에 배분된 액과 자본 특정 보조 금총액을 합산하여 '중앙정부 자본보조'로 표시한다.
- 중앙부처는 사업 우선도를 고려하여 추가기채허가액을 결정하고, 나머지는 기본 기채허가로 하여 각 자치단체에 배분한다.

- ▣ 기채허가에는 각 자치단체의 기채상한액이 표시된 용도에 대하여 재량권을 인정하는 기본기채허가(BCA; Basic Credit Approval)와 각 중앙부처가 개별 용도를 지정하는 추가기채허가(SCA; Supplementary Credit Approval)의 2종류가 있다.
- ▣ 기본기채허가는 주택, 교통, 교육, 개인사회복지 서비스, 환경·치안·문화 서비스 등 6개 사업(block)별로 결정된 연간 자본지출지침(ACGs; Annual Capital Guidelines)에 기초하여 각 자치단체에 배분된다.
- ▣ 연간 자본지출지침은 특정 재원(추가기채허가, 자본특정보조금)에 준비된 것을 제외한 개별 자치단체가 상정한 자본수요로 구성된다.
- ▣ 기본기채허가액은 연간 자본지출지침 규모에서 자산매각수입(RTIA; Receipt Taken Into Account)을 공제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기본기채허가 분배액 = 당해 자치체 ACGs – 당해 자치체 RTIA

- ▣ 연간자본지출지침총액은 공공지출계획에서 결정한 기채허가총액에서 추가기채허가발행액(SCA)를 공제하고 RTIA 총액을 가산하여 결정함

ACGs 총액 = 기채허가총액 – 추가기채허가발행총액 + 자산매각수입

- ▣ 지방채 발행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이 40%를 점유하며, 교육 16%, 교통 15%, 환경·치안·문화 11% 등이다. 위 주택, 교육, 교통, 환경치안문화 관련 투자사업이 지방채사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Part 3. 지방채제도의 최신 동향

- ▣ 지방재정의 자율성 신장과 책임성의 조화를 지향한 2003년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에서는 자치단체의 기채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채 제도를 개정하였다.



■ 그동안 특정 사업 블럭별로 지방채 인수 할당액을 설정하는 방식을 채택해 왔으나 새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2004년 4월 1일부터 기존 시스템을 폐지하고 자치단체의 기채자율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프루덴셜 코드 제도로 전환하였다.

- 자치단체별 발행한도제는 유지하되, block별 발행제한에 따른 조건을 폐지함으로써 자치단체가 한도액 내에서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신장시켰다.

* Prudential Borrowing System

■ 프루덴셜 코드 제도(이하 Prudential Borrowing System)는 재량권이 향상된 신설 지방채 제도로서 block별 할당에 대한 명시적인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영국 공인 회계기관(CIPFA)와 지방채시장의 중추기관인 공공사업대부위원회(PWLB)가 법적 혹은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기채 자율성이 허용된다.

PWLB 공공사업대부위원회는 중앙정부의 법정 기관으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대출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조성된 국채펀드 기금을 운영한다. 재무성과 DMO의 감독을 받으며 영국의 가스전력국(Ofgem), 도로철도청(Office of Rail and Road)등 지자체의 지방채 인수에 관여했다. 지방채 재인수와 관련한 2차 지방채 유통시장 활성화 업무에도 기여한다.

■ PWLB의 지방채 인수

적채단체가 발행한도 범위 내에서 융자신청을 하면 PWLB는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와 같이 현금흐름의 건전성, 발행 조건 및 상환 방법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인수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영국의 자치단체는 기채승인제(block별 발행한도)가 아닌 연간 발행 한도만 준수하면 사실상 지방채를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실상 총액 상한제와 유사하다.

다만, 자치단체는 CIPFA에서 제시하고 요구하는 지방채 발행의 요건 예컨대 예산·회계·재무관리 관련 법령들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그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다.

* 추후 프루덴셜 코드에서 지방채 발행 요건 참조

■ 지방채 인수 판단 기준

공공사업대부위원회는 연간 발행 한도, 발행 조건, 상환 방법, 적채사업의 조건을 충족 시키면 대부분의 지방채를 인수한다. 인수 판단 기준 상세는 다음과 같다.

- 해당 자치단체의 은행 잔고 즉, 현금흐름의 건전성
- 발행 조건(이자지급의 방법, 이자를 위험도 등)
- 상환 방법(만기, 원리금 지급 방법 등)
- 발행 주체(자치단체와 산하 기관 중 교통, 경찰, 소방, 쓰레기 처리, 보건)

■ 영국의 지방채무 관리시스템으로 3가지 주요 기준을 적용한다. 신용평가기관의 채무 평가보고서, 자치단체의 재무제표 평가보고서(외부감사), 자치단체별 재정 성과 및 채무관리 정책 등이다.

- 영국은 지자체의 지방채시장 활성화 담당 금융기관인 PWLB가 지방채 인수에 전문화되어 적극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총액 한도의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갖지만, 한편 총액 한도의 설정 기준과 지방채 관련 예산 회계 규정의 엄격성, 객관성을 보장하여 지방채 발행에 간접적 통제를 받고 있다.
- 영국은 Prudential Borrowing 제도를 도입해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채무 건전성 확보 제도로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중장기 정책

방향 재수립에 근거로 활용되는 정책이며 이를 통해 지방채무 관리를 한다.

- 지방채 정책은 영국 중앙정부의 승인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IMF,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Public Spending: Experience in OECD Countries, 2004). 자체별, 사업별 한도액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예산회계에 초점을 두고 예산회계별로 한도액을 설정한다.

▣ 영국의 Prudential Borrowing System

프루덴셜 자본재정(capital financing) 시스템은 지방채 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기규율(self-regulation)에 의한 자율적 지방채 발행 시스템이며 2004년 4월 1일부터 유효하게 적용되었다. 기존의 중앙정부 승인제도 방식이었던 기채승인제에 비해 자율성이 증진된 시스템이며 지자체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새로운 Prudential System 하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규(지방정부법: Part I of the Local Government Law)에서 요구하는 공인회계 프루덴셜 기준(CIPFA Prudential Code)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 자치단체는 CIPFA에서 규정하는 Prudential Code를 준수하는 동시에 회계장부와 근거 기록에 비추어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다.
- CIPFA(Chartered Institute of Public Finance and Accountancy)는 영국의 공인회계기관으로 지방예산회계제도의 각종 규정과 실무 지침을 관掌하는 기구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자본 투자를 위한 Prudential Framework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한다.

* CIPFA Prudential Code For Capital Finance In Local Authorities 지방재정회계 투명성 코드

그러나 새로운 Prudential System 하에서도 주무 장관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한하여 국가 및 개별 자치단체 수준의 지방채 발행 한도를 규제할 수 있는 유보권한(reserve power)을 보유한다.

* 주무장관의 유보권한은 2차 초안까지는 확정안이다.

다음은 CIPFA Prudential Code(second exposure draft)의 핵심 내용이다

Prudential Code의 목적

- CIPFA Prudential Code의 주된 목적은 자치단체가 수행하고자 하는 자본투자계획이 '감당할 수 있고, 신중하고 지속가능성이 있음(affordable, prudent, sustainable)'을 보장해주는 데 있다.
-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들 목표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재무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입증해줌으로써 해당 자치단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목적이 있다.
- 지방재 발행을 통한 자본투자계획이 지방전략계획(local strategic planning)과 지방 자산관리계획(local asset management planning)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일치시키는 목적이 있다.
- 그밖에 재무관리 및 정책 결정이 선량한 전문가적 관행(good professional practice)과 신중성, 적정성(감당가능성), 지속가능성을 지지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Prudential Code의 목적을 지방자치단체들이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입증해주는 평가 수단으로 Prudential Code에서는 적정 지표를 개발할 뿐 아니라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핵심 요인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신중성 지표(prudential indicator)는 자치단체 간의 성과 비교를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 아닌, 자치단체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기록할 목적으로 고안되었으며 궁극적으로 공적 책임성 있는(publicly accountable) 방식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 Prudential Code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한도액이나 비율 등을 제시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들은 Prudential Code의 목적과 지침 사항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스스로 관련 지표 등을 개발하기도 하며 자율 적용 한다.

- Prudential Code에서는 각 자치단체가 수행할 지표(prudential indicator)의 설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과 절차를 기술한다.

- 이때 수석재무관(Chief Finance Officer)은 신중성 시스템과 연계된 모든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자치단체 내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동시에 그 성과를 감독 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 감당가능성,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주요 측정 지표에 대하여 연중 규칙적으로 감독(monitoring)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중성 지표의 측정에 요구되는 각종 추정·예측치의 중대한 오류 등을 초기에 발견하고 교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 한편 현금흐름(cash flow)에 중점을 두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forward looking prudential indicators).
 - 만일 초기 추정을 해본 결과 그것이 감당 가능성 및 신중성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자본투자계획과 세입추계 등 관련 시스템을 재검토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모든 항목들 가운데 신중성 지표(prudential indicator)와 관련된 사항들은 감사의 대상이 된다.
- * 다만,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지방정부법의 관련 소항에 근거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에 개입하고 통제를 가할 수 있다(유보권장치).

▣ 신중성 지표(prudential indicator)를 설정하거나 수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들은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감당가능성(적정성): 지방세수입 등에 대한 검토
- 신중성 및 지속가능성: 외부 차입에 대한 검토
- 세금의 ‘돈 가치’: option appraisal(각종 대안의 평가)
- 자산관리(stewardship of assets): 자산관리계획
- 서비스 목적: 전략계획에 대한 점검
- 실천성(practicality): 미래계획의 달성 가능성 등

▣ 지표(prudential indicator)를 설정하거나 수정할 경우 예산 주체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수립 절차와 동일한 경로를 경유해서 실시되어야 한다.

▣ 지표(prudential indicator) 가운데서 차입비용, 차입비용의 예산파급효과, 외부채 무, 자본지출과 연관된 지표들은 상호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설정되거나 개정될 수 없고, 자치단체의 전략 서비스와 자산관리계획 절차 등을 반영하는 가운데 상호 포

괄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affordability(감당 가능성)는 단기의 비용 부담 능력을 내포할 뿐 아니라 장기적 비용부담 능력과도 관련이 있으며, 신중성을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의 의미를 내포한다. 즉, 지표 간에 상호 연계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 Prudential Code에서는 자치단체들로 하여금 선량한 전문가적 관행에 따라 보다 광범위한 관리과정(option appraisal, asset management planning, strategic planning and achievability)을 고려하도록 노력한다.
즉, 자치단체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지만 그것을 자율적으로 조절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매우 세부적이고 철저한 제도적 장치와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영국의 지방채 관리 제도인 Prudential System의 특징이다.
- affordability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중장기 자본투자계획과 현재 및 미래에 이용할 수 있는 자원에 관한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자치단체의 지방세수입과 연관된다.
 -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3년간의 세입, 지방세수입, 자본지출계획에 관한 객관적 예측하거나 추정 정보를 제시해야 하며 이것은 연동시스템(rolling scenario)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감당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자치단체들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위험 및 불확실성에 대한 준비도 병행해야 한다. 리스크 분석 및 재정위험관리 전략 병행이 요구된다.

■ 영국의 지방채 발행 여건

지방채 이자 지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5년간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해 발행일로부터 5년간 최대 50퍼센트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단 지방채 발행 한도의 예외적 적용으로써 현재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를 넘어선 단체 혹은 재정위기관리 평가 결과 재정이 취약한 단체 및 지자체는 지방채 추가 발행 제약이 있다. 총액 한도는 통상 연간 발행 한도 채무액을 고려하여 전전연도 예산액의 10% 이내로 재정위기관리제도 누적 채무 비율이 25% 이상인 경우 주의단체로 지정 할 수 있다.

▣ 지방정부의 파산신고 관련 제도 현황

우선적으로 질문에 답을 하자면, 지방정부 및 지자체의 파산제도는 영국 실정법상 없다. 중앙정부의 긴급 재정 지원으로 부채를 최소화하거나 지방세 인상으로 세입원을 늘려 파산을 면하게 하는 효과를 얻는 방식이다. 단 정부의 긴급 재정지원이나 지방세 권한에 개입할 여지를 주기 위해서는 114조가 발동되어야 한다. *1999년 지방정부법 114조항

근거 법령

- 영국의 지방정부는 1998년 지방정부법에 따라 균형예산을 수립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균형 예산 관리 부주의가 발생할 경우 당해 지자체의 재정위기에 개입 할 수 있다. 동법 114조항의 섹션a는 지출통제 명령의 통보 의무이다. 114조항의 지출 통제의 필요성 발생 시 지방 담당 재정 최고위원은 의회에 해당 단체를 주의단체로 보고하고 의회는 114조를 발동시켜 지출 동결이라는 최후 통첩을 실시 한다.

114조항의 통지 발행권자

- 당해 지자체의 최고재정담당자이며 CFO는 114조항이 발행되기 이전에는 예상 지출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지출을 동결시킬 수 없다. 적자를 가지고 회계연도를 종료한다.
- 114조항을 발동시키기 전에 개입의 여지가 미약하다는 데서 지방정부의 재정악화 사전 예방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 재정 담당자의 의무조항 114조가 발동되면 지방 당국은 21일간의 휴지기를 갖게 된다. 심사가 진행되는 이 기간에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을 제외한 모든 지출이 동결된다.

114조항 발동 요건

- 114조항을 발동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체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협의회 의원과 감사관은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균형예산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114조 지출 동결 사례

- 가장 최근 114조가 발동된 경우는 파산 위험의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은 노담튼셔 카운슬 사례다. 2018년 2월 노담튼셔 카운슬 지자체의 재무최고위원은 114조를 발동하였다. 114조가 발동된 이후 지방정부의 비서관은 독립적 감독관을 임명하여 재정 관리 및 조사 법정 임원 임명 및 재무 전략 관련 협의회 기능 담당자를 임명했다. 해당 자치구는 2018년도 외부 감사 결과 재정위기 위험 통지를 받은 바 있다.

→
114조항 발동이 아니더라도 외부 감사를 통해 재정위기를 예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입할 수 있는 실질적 법제도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영국의 현황이다. 최근 미국의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실무자를 비롯한 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다.

- 지방정부의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게는 정기 감사 기간에 행정부패 또는 법률적으로 위험을 초래할 재정위기의 경우 지방정부에게 재정 위기 자문 통지를 제공할 권한이 있다. NCC의 경우 2018년도 외부 감사인이 재정위기 위험을 통지한 바 있다.

114조항의 발동 그 이후

- 실정법상 지자체의 파산제도가 없는 바 1999년 지방정부법 제15조에 따라 국무장관이 권한 행사로 중앙정부의 긴급 재정 지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NCC의 경우 중앙정부의 긴급조치가 취해졌다.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대신 기존의 단일 재정보고서로 보고되던 보고 체계를 이원화해 2개의 재정 감사 보고서를 받는 구조로 변경되었다. 독립된 기관의 재정 감사 보고 작성을 하게 하고 독립된 재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고의무의 집행 및 감독 권한을 부여했다.

■ 영국의 공공사업대부위원회(PWLB)

○ 개요

1817년 채무관리청 산하에 창설된 독립기관이다. 주요 업무로 지방정부 및 기타 규정된 지자체(지역사회위원회, 경찰 등)에 대한 자금 신청의 타당성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

○ 조직

4년 임기의 12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4월 1일 3명의 위원이 교체되는 로테이션 방식의 위원회이다. 지역의회, 신탁회사, 재무성, 재무연구소 등 그 소속이 다양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 운영

National Loans Act 1968년 국채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사용한 대출 제공 의무를 가지며 재정법(Finance Act, 1990)에 따라 총 대출 허용 한도를 550억 파운드로 제한하고 있다.

○ 상환

대출금 상환 방식은 대출자의 재정 상태에 따라 개별 평가하며 부담을 경감시키는 여러 가지 옵션을 맞춤 제공하고 있다.

○ 신청

대출 신청은 잉글랜드, 웨일즈, 국가 하수기관 및 특정 항구를 대상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 종류

대출의 종류는 대출금리에 의해 분류되며, 대출금리는 대출 상환 만기 시까지 변하지 않는 고정금리,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금리가 변하는 특별 공식에 의한 변동금리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만기 전에 대출의 금리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진다(고정금리·변동금리로 이전 혹은 변동금리·고정금리로 이전).

○ 대출금 상환 방식

- 고정금리 대출은 1년에 2차례 6개월에 한 번씩 원리금 상환, 또는 1년에 2차례 이자만 상환하고 만기시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방식 중에 선택한다.
- 변동금리는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원리금 상환하거나, 이 기간에 이자만 상환하다가 만기 시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방식 중에 선택한다.

○ 대출 수수료

고정금리	1,000파운드당35p(II)
변동금리	1,000파운드당45p(II)
최소수수료	25파운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변경할 경우	70파운드

■ 런던시 신용평가제도

2003년 지방정부법 정책 안내 책자에 따르면 15조 1항 (a)에서 지방채 신용평가의 적격 신용평가회사로 스텠다드 앤드 푸어(S&P), 무디스, 핏치레이팅(Fitch)을 지정하였으며 위 3곳 중 하나를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 유럽연합 신용평가제도

유럽연합은 신용평가회사의 설립 업무영역 등을 규제하는 명시적 법률이나 제도가 없다. 1999년 발표된 유럽연합 재무 서비스 액션 플랜에 포함된 시장 규율에 대한 기본적 가이드라인만 설정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 피평가기업의 내부 정보 이용 등을 금지하는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신용평가회사가 금융업을 겸영할 경우 방화벽 설정 등에 의한 관계자 간 이해 상충 방지, 바젤 도입과 관련한 적격 신용평가회사의 요건 등이 있다. 신용평가회사에 대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윤리강령 등 신용평가 절차의 투명성, 책임성, 윤리성, 시장 인지도, 객관성 등의 원칙이 있고, 회원국들은 설정 기준을 자국에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활용한다. 실제로 회원국들은 공개시장조장 적격 담보 설정 기준,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 등에 신용등급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편이다.

Part 4. 해외 지자체 재산관리제도 관련 현황

■ 영국의 국유재산과 지방재산은 별개이다. 국유재산은 영국 중앙정부 부처에서 각 부처 재산으로 운영·관리되고 있으며, 지방재산은 해당 지자체에 속한 재산만을 관리하는 것으로써 영국은 국유재산과 지방재산 관리를 구분한다. 국토 면적은

241,752km으로 국유지는 13,000km 상당이다. 전국적으로 300여 개 기관이 1만 여 곳에 국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연간 60억 파운드의 운영비용이 소요된다.

▣ 국유재산의 구분

- 국유재산을 구분하는 실정법상의 기준은 없으나, 실무적으로 크게 일반재산, 군용재산, 의료시설로 나누고 일반재산의 경우 재무성에서 각 정부 부처 소유, 임차, 점유물을 정부 기관의 활동을 산출하는 데 사용되는 작업장, 사무실, 토지 및 건물 등의 기타 부동산으로 정의해 놓고 있다.
- 군용재산은 영국 국방부가 소유하고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며 일반 행정적 요소가 포함된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분류한다. 의료시설은 NHS가 관리한다.

▣ 분산형 재산 관리 체계

국유재산의 경우 관리의 권한과 책임은 각 부처에 이관되어 분산형 관리체제를 이루고, 내무성의 집행기관으로 1996년 설립된 일반재산자문청이 각 부처의 재산관리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위 일반재산자문청은 2000년 4월 영국 조달청에 이관되었다. 지방재산의 경우 관리의 권한과 책임은 해당 지자체에 있고 독자적으로 획득·처분한 권한의 행사를 조달청이 공적 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 자문기관으로 활용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 왕실재산의 관리

왕실재산은 소베린 그란트라고 하는 Sovereign Grant and Sovereign Grant Reserve 정부의 주권보조금법 2011년 법률에 의해 분류되고 법정 관리된다. 여왕의 공식의무를 지원하는 기금과 왕실재산으로 분류되는 부동산, 궁전, 직원임금, 여왕의 임금, 유지비, IT 명목 비용 처리 등을 관리하고 있다. 왕실 궁전으로 분류되는 로얄팰리스는 버킹엄 궁, 세인트 제임스 궁, 원厦 캐슬, 햄튼 코트, 원厦 흄파크, 켄싱턴 궁전이다. 위 궁의 소유자는 여왕이며 왕실의 재산이다. 왕실의 재산으로는 크라운 이스테잇이라고 부르는 신탁재산도 포함된다. 그 외 여왕과 왕실의 수입이 왕실재산이 된다. 2019년 2020년 왕실재산 규모는 8천2백4십만 파운드이다. 귀족재산은 왕실재산 소유로 분류

되지 않는 개인재산을 제외하고 랭캐스터 공작, 콘월경, 로얄 수집품의 재산만 왕실재산으로 분류된다. 로얄 수집품의 경우 Royal Collection Trust로 등록된 비영리 신탁기금으로 운영·관리한다.

참고 문헌

<https://www.pinsentmasons.com/out-law/analysis/restructuring-options-uk-local-authorities>

<https://www.publicfinance.co.uk/feature/2018/07/assessing-local-government-borrowing-options>

지방정부 파산제도 현황(지방정부연합회 관보) <https://www.localgov.co.uk/ls-bankruptcy-an-option/46661>

LBBM Debt Management Policy file:///C:/Users/Olivia%20Hong/Desktop/London%20Borough%20of%20Barking%20Councils-debt-management-policy.pdf

DMO Business Plan 2018-19 <https://www.dmo.gov.uk/media/15557/business-plan-2018.pdf>

Spending Review 정부지출보고서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1719/cmselect/cmcomloc/2036/2036.pdf>

Policy paper, 2018. 10. 29.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budget-2018-documents/budget-2018>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 도입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 2004. 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성일 외 공저

[www.nl.go.kr > app > search > common > download](http://www.nl.go.kr/app/search/common/download)

재정통제보고, 114섹션a 노티스의 법률적 의미(올드햄 카운슬 주법) <http://committees.oldham.gov.uk/documents/s100111/Appendix%201%20s114%20Notice%20definition.pdf?txonly=1>

CIPFA <https://www.cipfa.org/>

DCLG, Local Authority Revenue Expenditure and Financing: 2014-15 Final Outturn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ministry-of-housing-communities-and-local-government/about/statistics>

THE COMMISSIONERS OF HER MAJESTY'S TREASURY RULES OF THE 2008 CREDIT GUARANTEE SCHEME <https://www.dmo.gov.uk/media/1934/cgsrules20110608.pdf>
신용평가 제도 개선 방안, 2014.11. (자본시장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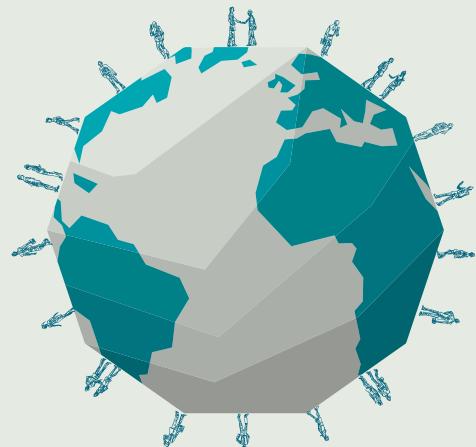
EU 집행위원회의 신용평가기관 규제안

EU의 신용평가 규제 체계 개선의 주요 내용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78866/Guidance_on_local_government_investments.pdf
STATUTORY GUIDANCE ON LOCAL GOVERNMENT INVESTMENTS (3rd Edition)

글 한국지방재정학회 사무국

글로벌 지방재정 현황



미국 뉴욕주, 주립대학 지원을 위해 맥주세 인상 추진

자료 미주 중앙일보(2020.01.14.)

뉴욕주가 주립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맥주에 부과되는 맥주세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욕주의회는 지난 8일 현재 1병에 14센트씩 부과되고 있는 맥주세를 3센트 올린 17센트를 부과해 여기서 만들어진 기금을 주립대학에 지원하는 법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 법안을 상정한 하비 엡스타인 주하원의원(민주·맨해튼)은 “현재 뉴욕주는 맥주에 부과하는 세금이 병당 14센트로 미 전국에서 39위에 불과할 정도로 많지 않다”라며 “소액의 맥주세를 올려 조성된 기금을 주립대에 지원할 경우 중산층 자녀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맥주세가 가장 높은 주는 테네시주로 한 병당 1달러 29센트씩을 받고 있다. 엡스타인 의원 등 해당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현재 뉴욕주가 포도주(와인)에 부과하는 병당 30센트

정도까지 향후 단계적으로 맥주세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욕주립대는 현재 주 전역에 64개 캠퍼스를 두고 있는데 1년 예산인 전체 390억 달러의 3분의 1 정도만 주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엡스타인 의원 등은 일단 병당 3센트씩 맥주세를 올려 1년에 5000만 달러를 확보한 뒤에 추가 증세를 통해 3억 달러 정도의 지원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주의회가 맥주세 인상 움직임을 보이자 뉴욕주 전역에서 2만 명 정도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크고 작은 500개의 맥주 생산회사들은 맥주 가격을 올리고, 맥주회사들의 고용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핀란드 “부모 모두 7개월씩 출산휴가 허용, 164일씩 유급으로”

자료 서울신문(2020.02.06.)

핀란드 새 정부가 어머니와 똑같이 아버지에게도 7개

월씩 출산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산나 마린 총리가 들어선 뒤 각료 19명 가운데 12명을 여성으로 채운 새 내각은 이처럼 혁신적인 양성 평등 육아 정책을 천명해 출산율을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영국 BBC가 5일(현지 시간) 전했다. 아이노 카이사 페코넨 보건사회부 장관은 육아와 휴직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아이와 부모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가족 혜택의 급진적 개혁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방송은 이웃 나라 스웨덴이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 한 명당 240일의 출산휴가를 보내는 것에 견주면 핀란드의 정책은 조금 못 미친다고 전했다. 그래도 1억 유로(약 1301억 6000만 원)의 추가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핀란드 부모는 앞으로 동등하게 164일씩 유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나라 복지 체계는 일주일 가운데 여섯째를 보장한다. 임신 여성은 한 달 치를 더 보장받는다. 부모들은 본인 몫의 69일 치를 배우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한부모 가장은 부모 쪽에 주어진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다.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는 부모에게 6개월의 육아 휴직을 나눠 쓰게 했는데 어머니는 아이가 두 살이 되기 전에 평균 4.2개월, 아버지는 2.2개월의 출산휴가를 썼다. 아버지가 된 남성 4명 가운데 한 명만 출산휴가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핀란드의 신생아 수는 2010년에 비해 약 20% 정도 줄어 여성 1인 기준으로 1.6명 수준이었다. 1975년 핀란드 전역에 62개였던 출산 병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23개까지 줄어들었다. 핀란드의 정책 전환은 이웃 나라 스웨덴과 아이슬란드 등이 부모에게 동등한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나서 출산율이 늘어난 데 착안한 것이다.

마린 총리는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50차 세계경제포럼(WEF 회의에서 “국가와 기업이 여성의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유럽, 특히 북유럽 나라들은 이런 방향으로 꾸준히 움직여왔다. 노르웨이는 1993년 아버지들에게 양도할 수 없는 출산휴가를 세계 최초로 쓰게 했다. 덴마크 아버지들은 생후 2주 동안 휴가를 쓸 수 있고 부모 가운데 한쪽이 32주를 추가로 선택해 쓸 수 있도록 했다. 유럽연합(EU)도 올해 회원국에 앞으로 3년 동안 양도할 수 없는 두 달을 포함한 넉 달의 출산휴가를 보내라고 권고했다. 포르투갈은 이미 성별을 따지지 않고 120일 동안은 봉급의 100%를 보장하고, 추가로 30일은 봉급의 80%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유엔아동기금(UNICEF)은 가족 친화 정책을 평가는 나라로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포르투갈을 꼽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31개국의 부자 나라 가운데 가장 낮은 나라는 영국, 아일랜드, 그리스, 스위스가 선정됐다. 미국은 유일하게 정부 차원의 유급휴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연방 공무원이 사상 처음 12주짜리 유급 육아 휴가를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에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출산 전후의 여성에게 90일의 출산휴가를 줘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때 사용자는 열흘 간의 휴가를 주게 된다.

지난해 6월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유니세프가 발간한 ‘가족친화정책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한국 남성의 유급 출산·육아 휴직 실제 이용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국내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 비율은 17%에 불과했다.

지방재정 질의회신 사례

강선경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주무관

Q1 교육경비보조사업 정산 시, 각종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등)를 제외한 학교 회계시스템(에듀파인)의 통합지출부 및 지출결의서를 첨부하여 정산서류 간소화 가능 여부

A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308-08)’의 경우, 「지방재정법」제32조의6 제1항에 따라 ‘실적보고서에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계산서 등 증빙서류 원본은 보조금을 교부받아 실제로 집행하는 교육기관에 보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학교회계시스템(에듀파인)의 통합지출부 등으로 실적보고서의 집행 내역 확인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경우라면 내역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계산서 등 증빙서류는 제출받지 않아도 된다 할 것임. 다만, 「지방재정법」제32조의6 제1항에서 첨부서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산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의 종류 및 제출여부 등은 귀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면 될 것임.



**Q2 ◎◎부에서 용도를 지정하여 △△공단을 통해 교부하는 ◇◇기금을 국가로부터
교부된 경비로 보아 「지방재정법」제45조에 의한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가능 여부**

A2 「지방재정법」제45조에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고, 같은 회계연도 내 추경에 이를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사업이 ◎◎부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관련 경비가 국가(◎◎부)로부터 교부된 경비이고, △△공단은 단순 대행 기능 등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추경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Q3 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에게 회의참석수당 또는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보상을 할 수 있
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A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서 사무관리비(201-01)로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간담회 등 단순 회의 참석이라면 위원회 참석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급량비 및 교통비는 실비로서 지급할 수 있을 것이며,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라면 참석수당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Q4 예비비 사용 승인 후 예산 과목 변경 가능 여부

A4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별도의 사업이나 통계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예비비 사용 시 예

산과목을 결정하고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하고 있음. 따라서 예비비 집행 이전에 예산 과목을 잘못 설정한 경우는 자치단체장이 결재를 통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Q5 개별 법령상 근거없이 다른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비용부담을 할 수 있는지 여부

A5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치단체가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 사무에 원칙적으로 경비 지출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각 사무 주체의 경비부담 구분을 명확히 하여 소관사무에 대하여만 경비 지출을 허용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특정 사무가 당해 자치단체의 소관사무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별도로 법령의 근거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해당 자치단체의 소관 사무가 아닌 경우)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2조에 위배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Q6 교육경비 보조사업자의 기관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에 없는 경비(지도수당 등)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한지 여부

A6 「지방재정법」제32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보조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당해 기관(보조

사업자)의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한다 하더라도 당초 보조사업 계획에 없는 경비를 집행하는 등 사업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임.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 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할 수 있음.

Q7 ◇◇공단에서 추진하는 자치단체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프로그램을 추가 개설하여 세외수입이 늘어난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수입 증대로 보아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A7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7.26.)」 제12조 제2항 제3호에서 「지방공기업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경우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치단체 대행사업에 대하여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자치단체 예산이 남게 된 경우나,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 개선 등으로 세입 증대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임. 다만, 대행사업비의 절감 또는 프로그램 추가 개설에 따른 세외수입의 증대가 예산성과금의 지급대상인지 여부, 예산성과금의 지급 규모 등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제도 개선효과, 기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내용의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3조 제4항 지출절약 또는 수입 증대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 규칙에 의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성과금 제도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성과금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임.





A



with LIFE

And People

사람을 생각하는 지방재정

- | | |
|-----|-------------------------------------|
| 158 | 읽고 보고
HOT한 책과 넷플릭스 콘텐츠 |
| 162 | 건강 가이드
마스크 착용의 오해와 진실 |
| 164 | U in life
미니멀리스트 유튜버 '히조' |
| 168 | 일상의 재발견
유화 그리기 |

모든 것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 그 안의 다양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글. 백혜린

뜨거워진 머리를 식히는 일



돈을 벌기 위해, 어떤 또 다른 자신만의 꿈을 위해 달리는 동안 내 머리는 많이도 뜨거워졌다. 아무리 긍정적인 방향을 향해 달리더라도 오랫동안 집중하는 건 제법 힘이 드는 법이니까. 중간중간 조금씩 한숨을 돌리는 일이 필요하다. 보고 싶었던 책을 읽고, 영상을 보면서 뜨거워진 머리를 식히자. 그렇게 온도가 조금 낮아졌을 때, 다시 뜨겁게 달려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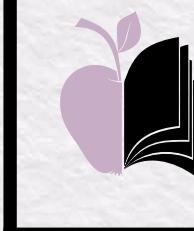
BOOK



【인문】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전승환 / 다산초당

매주 150만 명의 독자에게 좋은 글귀를 전하는 ‘책 읽어주는 남자’ 전승환이 독자의 마음을 건드리는 문장을 들고 책으로 찾아왔다. 작가는 지난 7년간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오디오 클립,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좋은 글을 꾸준히 소개해 왔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문장의 힘이 이 책에서 진가를 발휘한다. 책은 총 4부작으로 나의 ‘감정’, ‘시간’, ‘관계’, ‘세계’를 살필 수 있는 130여 편의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척박한 사막의 삶과도 같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어딘가 텅 빈 느낌이 들고 쉽게 무기력해진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솔한 공감과 위로다. 삶에 지쳤을 때, 혼자 이겨내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조언, 좋은 말에도 귀를 기울인다면 지친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어지지 않을까. 좋은 사람을 대하는 것마저 힘이 드는 당신에게 ‘책’은 더할 나위 없는 위로의 방식이다. 인생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전승환 작가의 책은 하나의 지침서가 되어준다.



【사회】 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 /창비

선량한 마음만으로는 차별을 마주할 수 없다. 일상에는 늘 소소하고도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차별과 혐오의 순간이 존재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회복지와 법을 공부하고 소수자, 인권, 차별에 관해 가르치고 연구하는 김지혜 작가는 바로 그 지점을 이 책을 통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왜 우리가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차별을 알아채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이 가진 특권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나 불편함이 없는 구조물이나 제도가 누군가에게는 큰 장벽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는 자세를 배워야 한다. 노예제 시대에는 노예를 자연스럽게 여겼고, 여성에게 투표권이 없는 시대에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처럼 생각은 시야에 갇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이는 것에도 끊임없이 '의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세상이 정말 평등한지, 내 삶은 정말 차별과 상관이 없는지 성찰해보고, 시야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 그 과정은 결코 평화롭지 않을 테지만, 평화롭게 보였던 기존 사회질서를 깨는 행위에는 충돌과 긴장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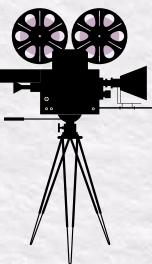


【경제】 부동산 투자로 진짜 인생이 시작됐다

허미숙 / 알에이치코리아

평균 수명 백 세 시대에 우린 마음 한구석에 늘 불안을 안고 산다. 치솟는 물가, 어마어마한 집값에 '내 집 장만'의 목표란 허황된 꿈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유일하게 그 꿈에 다가갈 수 있는 수입원인 월급은 카드값 납입일과 함께 어디론가 가버리고, 이 굴레는 첫바퀴 돌 듯 이어진다. 돈도 시간도 없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만은 없다고 재테크를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임장의 여왕' 허미숙이 희망을 전달한다. 퇴사 후 전업주부로 지내던 허미숙 작가는 소액 아파트 경매에 도전하며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고, 부동산 현장 조사, 즉 '임장' 기록을 쌓아 올리며 투자를 이어나갔다. 대한민국 각지를 발로 뛰며 아파트 정보를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결과, 투자를 시작한 지 불과 6년여 만에 40채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한 지역 분석 전문가로 거듭났다. 그야말로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것이다. 허미숙 작가가 만든 진짜 인생은 남다른 실행력과 꼼꼼한 사전조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이는 누구나 도전해 볼 만한 일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임장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 투자 과정에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현실 꿀팁들을 통해 투자의 세계에 입문해 보는 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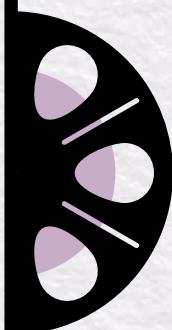


N E T F L I X



【드라마】킹덤

우리나라 스릴러·추리 드라마의 새 역사를 쓴 김은희 작가가 좀비물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일명 'K-좀비'의 귀환. 우리나라만의 좀비물은 영화 <부산행>으로도 해외 언론의 찬사를 받은 바 있다. 김은희 작가가 구현해낸 좀비 콘텐츠는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이야기는 병든 왕을 둘러싸고 흉흉한 소문이 떠도는 가운데 조선 전역으로 기이한 역병이 퍼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왕세자가 역병의 진원지로 향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좀비와 사투를 벌이는 것이 가장 큰 줄거리이지만, 조선시대라면 빼놓을 수 없는 정치 이야기도 함께 가미된다. 2019년 1월 25일에 공개된 시즌1은 많은 의문을 남겨둔 채 마무리되었는데, 이 떡밥을 해결할 시즌 2가 2020년 3월 13일에 공개되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시즌 1에서는 피와 살을 탐하는 좀비를 등장시켜 배고픈 민초들의 고충을 강조했다면, 시즌 2에서는 필요에 따라 인간을 좀비로 만드는 행동을 통해 인간들의 추악한 욕망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한다. 역병이 창궐하는 조선시대는 세월의 벽을 넘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덮친 21세기의 현실과도 어딘지 모르게 맞닿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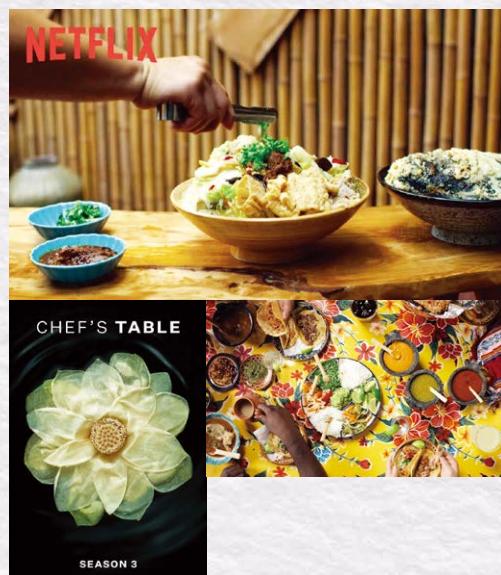


【 예능 】 넥스트 인 패션

넷플릭스 시리즈와 패션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만났다. 이 서바이벌은 온라인 패션 플랫폼인 네타포르테와 넷플릭스가 함께 기획·제작한 프로그램으로서 전 세계에서 모인 18인의 디자이너가 경쟁하여 1명의 우승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리에게 패션 디자이너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프로젝트 런웨이'로 익숙하지만, 그 프로그램과는 조금 다른 색깔의 서바이벌이 탄생했다는 평이다. 디자이너들의 갈등이나 드라마적인 부분이 강조되기보다는 정말 '옷 만들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디자이너의 옷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6회까지는 2인 1조 팀을 구성해 진행되고, 그 이후부터 개인의 역량이 더 두드러질 수 있는 주제를 통해 미션을 수행한다. MC는 패션디자이너이자 패션스타인 알렉사 청과 쿼어아이로 알려진 텐 렌스가 맡았다. 넥스트 인 패션은 유명하지는 않지만, 각기의 개성과 실력이 있는 디자이너가 빛을 볼 수 있는 자리를 선물한다. 우승자에게는 무려 25만 달러의 상금과 네타포르테 입점을 통해 자신의 컬렉션을 런칭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반가운 것은 이 개성 넘치는 18인의 디자이너 중에 한국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유일한 한국인인 김민주 디자이너의 활약을 지켜보는 것도 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다.

【 다큐멘터리 】 셰프의 테이블

다큐멘터리를 통해 국제적 명성의 유명 스타 셰프들을 조명한다. 이들의 손을 통해 피어나는 고급 요리와 재창조된 주방, 그리고 요리에 대한 독특한 생각과 철학을 들어보고자 하는 취지로 제작되었다. '셰프의 테이블'의 매력은 셰프를 다루는 다큐멘터리지만, 단순히 요리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들의 철학을 만들어준 사회적 배경, 이슈 또한 심도 있게 다룬다는 점이다. 시즌 3에서는 '정관님'의 이야기를 공개해 우리나라만의 사찰 음식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가진 성장 과정, 가치관, 고유의 성격에 따라 천차만별의 음식이 완성되는 모습을 제공함으로써 일반 요리 프로그램과는 다른 잔잔한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아무래도 다큐멘터리이다 보니 큰 흥밋거리를 전달한다고 보기是很 어렵지만, 온통 자극적인 것을 퍼부어 대는 요즘 세상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재미가 아닐까 싶다. '요리'와 '자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자연의 여러 모습을 담은 영상이 나오는 데, 이때의 영상미와 영상에 깔리는 클래식 음악이 보는 재미를 더해 준다.





마스크 착용의 오해와 진실

글. 김미나 서울아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하면서 마스크 대란은 해결될 기미가 없다. 현재 하루 마스크 생산량은 1,000만 장. 5,000만 국민이 마스크를 착용하려면 5일에 한 장씩밖에 안 돌아간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수칙을 만들고 홍보 포스터를 만들었지만,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장하지는 않는다. 세계보건기구(WHO)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아예 일반인의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정말 마스크를 늘 착용하면 코로나19가 예방될까. 일반인이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자신이 감기에 걸렸을 때 타인에게 비말을 퍼뜨리지 않기 위한 것이다. 각종 자료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덴탈마스크를 사용하라고 권장한다. 병원은 호흡기 감염 환자에게 덴탈마스크를 착용하게 한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대응 지침 또한 환자는 덴탈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콧물이 나고 기침과 가래가 끓는 환자는 고효율필터 마스크를 착용할 수도 없

고, 호흡기 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이런 마스크를 착용하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호흡기 증상이 없는 일반인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목적은 두 가지다. 자신이 무증상인 감염자로서 타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막고, 오염된 손이 자신의 얼굴을 만져서 자신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덴탈마스크가 최적의 마스크다. 필요할 때 착용하고,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어서 효과적이다. 마스크 필터 기능은 중요하지 않아서 면마스크 또한 깨끗이 빨아서 자주 교체하면 충분히 효과적이다. 면재질은 피부에 훨씬 좋고, 공기가 잘 통해서 호흡이 약한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에게도 안전하다.

비말을 차단하는 고효율필터 마스크는 누가 쓸 것인가. 당연히 환자를 돌보는 가족과 동거인, 의료진이다. 감염자를 만날 기회가 많다는 이유로 택배기사, 요식업 종사자 등 서비스 직군에게 고효율필터 마스크를 권장하는 것은 오해다. 의료진이 왜 안면보호구와 전신보호복을 함께 착용할까. 비말은 입과 코에만 묻는 것이 아니다. 어디에

묻든 결국 손을 오염시켜서 감염될 수 있다. 그래서 비말을 거르겠다는 목적으로 고효율필터 마스크를 착용하면 전신보호복과 함께 사용해야 하고 또 한번 병실에 들어갔다 나오면 안전하게 벗어서 즉시 폐기해야 한다.

좋은 마스크를 썼다고 안전한 줄 알고 하루 종일 썼다 벗었다 하는 행동이 오히려 위





험한 것이다. 오염된 손이 마스크를 오염시키고, 결국 오염된 마스크를 통해 얼굴이 오염될 위험이 커진다. CDC 전문가들은 그런 점을 우려해 일반인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고 손을 잘 씻으라고 한다. 비말 전파는 바로 앞에서 얼굴에 대고 기침하는 확진자를 만나지 않는 한 어렵다. 엘리베이터가 위험한 이유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수많은 사람이 만지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일반인들은 선별진료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밀집된 폐쇄 공간을 장시간 함께 사용해야 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면 된다. 일회용이라면 사용 후에 버리고, 면 마스크라면 세척해서 사용하면 된다.

언제 어디서든 손 씻기, 손 위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 마스크의 필요성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데 마스크 보다 휴대용 손 소독제가 더 효과적이다. 자주 손 소독을 하면 손이 거칠어지니 핸드크림도 함께 휴대하면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음과 같이 호흡기예절을 꼭 지켜야 한다.

- =====
-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리고, 사용한 휴지는 바로 휴지통에 버린다. 휴지가 없다면 옷소매를 이용하도록 한다.
- ◎ 덴탈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개를 돌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도록 한다.
- ◎ 다른 사람과 1m 이상 거리를 유지한다.

Tip.

마스크, 그 유형과 기능에 대해 제대로 알고 접근하자!



덴탈마스크는 의학드라마에서 수술장 의료진들이 착용하는 마스크와 유사한데 귀걸이 밴드가 있어 착용이 편리하고, 안면에 착 달라붙지 않아 숨쉬기 용이하다. 재채기와 기침 등으로 코와 입에서 비말을 뿜어내는 경우에도 차단효과가 충분하기에 숨 쉬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호흡기 증상의 유증상자에게도 적합하다. 이때 분비물로 오염이 된 마스크는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벗을 때도 귀걸이 밴드만 손으로 잡고 벗어서 즉시 쓰레기통에 버린다.

황사마스크는 미세먼지를 거르는 필터효과가 좋을수록 호흡기 감염자가 착용하면 숨 쉬는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유증상자에게 권장하지 않는다. 특히 의료진이 공기 매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착용하는 N95 마스크는 밀착도가 높아서 숨쉬기가 매우 힘들고 필터가 금세 막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착용할 필요도 없고, 건강에 오히려 유해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자.

글. 백혜린

몸소 실천하는 ‘비움의 미학’

미니멀리즘을 떠올렸을 때, 우리는 그것이 마냥 모든 것을 없애고 비워내기만 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진정한 미니멀리즘이란 충분히 생각해보고, 보다 신중한 선택을 통해 나에게 정말 필요한 소유물을 남기는 하나의 과정이다. 복잡한 삶에 지친 우리는 ‘미니멀라이프’에 호응하기 시작했고, 이 사회적 흐름에 따라 자신의 일상을 구축해나가는 한 유튜버를 만날 수 있었다. 미니멀리스트 유튜버, 히조의 영상을 통해 비움의 매력에 빠져든다.



유튜버 히조 heejo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감성 넘치는 영상으로 담아 구독자에게 힐링을 안겨 주는 미니멀리스트 유튜버. 현재 약 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 중이다. 자신을 ‘집순이’라고 칭한 만큼 집에 있는 생활에서의 콘텐츠가 주를 이루고, 본인이 실천 중인 미니멀라이프와 그에 관련 팁들을 공유하고 있다. 현재 프리랜서로서 친구인 유튜버 ‘슛두’와 함께 콜링우드라는 침구 브랜드를 운영해 일상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언젠가 한 책방의 주인이 될 꿈도 꾸고 있다.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heejo__o
인스타그램 @hxxjo





비움의 과정이 만들어낸 변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니멀라이프를 지향하며 살아온 '히조'가 비움의 과정을 소개한다. 비움을 시작하며 그 과정을 기록해 온 유튜버 히조. 그때의 기록을 영상으로 담았다. 미니멀라이프를 만난 후 여러 가지 물건을 수집하며 맥시멀에 가까웠던 삶에서 벗어나 재정비된 일상을 살고 있다고. 무작정 물건을 내다 버리기보다는 그 단계를 정해 하나씩 비워나갔다. 이 과정은 비움의 과정인 동시에 나를 더 잘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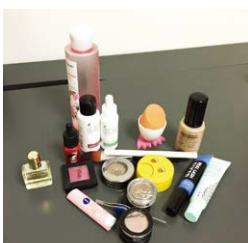
Before

소비와 수집으로 스트레스를 풀던 히조의 공간



① 쓸모없는 것 비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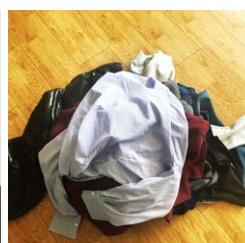
비교적 포기하기 쉬운 것들을 비움으로써 재미를 느낀다.



- 안 나오는 각종 펜
- 빈 샴푸통
- 유통 기한 지난 화장품
- 한 짹만 남은 양말
- 광고 우편물
- 예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 안 쓰는 안경
- 선물 상자
- 방치된 인형과 장난감
- 낡은 티셔츠 등

② 용도가 비슷한 것 비우기

나름의 저울질을 거쳐 비슷한 물건을 제외한 꼭 필요한 물건만을 남긴다.



- 옷과 신발
- 화장품
- 향수
- 문구
- 지갑
- 가방
- 주방 용품 등
- 쓰임새가 비슷하거나 3개 이상 있는 물건



③ 더 이상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 비우기

'비우다'보다는
'남기다'에 초점을
맞춰 내 취향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 각종 굿즈
- 철지난 잡지
- 보지 않는 책
- 인테리어 소품
- 여행에서 사온 기념품
- 스티커
- 미술 도구
- 상장
- 예쁜 쓰레기

④ 설레는 것에 집착하지 않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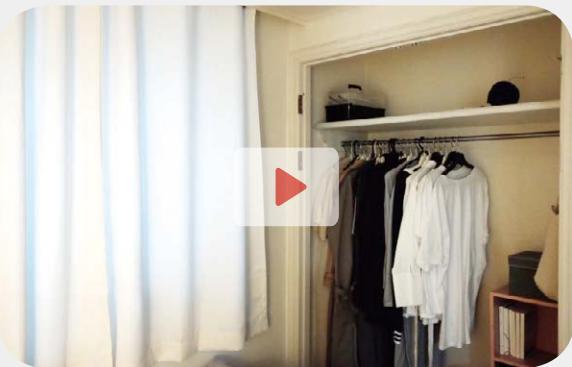
지금 내게 소중한
것도 언젠가
비울 수 있다는
마음을 유지한다.



아끼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았던 카메라와
초등학생 때부터 모아온
추억상자를 비움으로써
마무리했다.

After

비움으로써 완성된 히조의 또 다른 공간





미니멀라이프를 지속할 수 있는 생활습관

원하는 생활 방식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니멀라이프를 확실히 구축하기 위해 세운 히조만의 생활습관이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환기를 하고 청소를 시작한다는 히조. 온전한 나만의 공간, 편안한 휴식의 공간을 위해 항상 깨끗한 집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그 노력의 과정에서 비움을 위한 생활습관도 자연히 생겨났다. 무심코 할 수 있는 행동에 의식을 더해가면서 '더 나은 삶'을 위한 루틴을 만든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나의 일상이 조금 더 소중해진다.



1

물건의 표면에는 물건을 놓지 않기

청소하기도 쉽고 공간을 더 넓어 보이게 만든다. 추가로 수납할 공간을 없애는 것도 도움이 된다.

2



비움 박스 만들기

비울까 말까 고민이 되는 물건들을 비움 박스에 넣어 한두 달 동안 그 물건 없이 살아본다. 박스에 넣어 두면 금세 잊히기 쉽기 때문에 비움을 실천하는 데 있어 좋은 방법이다.

3



하나의 물건을 여러 용도로 쓰기

주기적으로 소독하는 깨끗한 천은 식기건조대로 쓰이며, 그릇의 물기를 닦는 용도뿐만 아니라 뜨거운 냄비의 손잡이를 잡을 때도 쓴다.



4

하나의 물건이 생기면 하나의 물건을 비우기

물건은 조금만 방심해도 금방 늘어나기 때문에 '1인 1아웃' 방법을 사용해 그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한다.



글. 백혜린

거칠 없는 터치로 완성한 ‘유화’



자유로운 시간 속
탄생한

나만의 예술 작품



일상에 치인 직장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시간’이다. 일이 끝나면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행복지수가 달라지는 법. 세세하게 정해진 틀이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흐트러진 것이 더 멋스러워 보이기도 하는 유화는 미술에 ‘미’자도 모르는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취미이다. 한 번에 완벽한 그림을 만들 어 낼 필요는 없다. 몇 번이고 덧바르면서 수정할 수 있으니. 겹겹이 쌓인 유화물감은 처음과는 전혀 다른 색감으로 캔버스에 꽂 피운다.

유화 그리기

유화를 그리기에 앞서, 자신이 그리고 싶은 대상을 정해준다.

가장 기초인 정물부터, 풍경, 인물까지 자유롭게 대상을 정해 참고할 수 있는 사진이나 그림을 찾아놓을 것.

Step. 1



Step. 2



Step. 1 배경색 칠하기

백붓을 이용해 배경이 될 색을 캔버스 전체에 칠해준다. 이는 꼭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밑그림을 먼저 그리고 칠해주는 방법도 있다.

Step. 2 밑그림 그리기

찾아놓은 사진을 참고해 밑그림을 그린다.

이때, 연필이나 목탄 콩테로 그리게 되면 흑연이 그림에 번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연필보다는 그려줄 그림과 비슷한 색의 색연필로 가볍게 그릴 것을 추천한다. 엘로우오커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색이나 건조가 빠른 유화물감을 이용해 그리기도 한다.

유화 준비물

1 캔버스, 캔버스 집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캔버스가 1순위 준비물이다. 캔버스는 크게 십자가 있는 정약구와 십자가 없는 가약구로 나뉜다. 톤튼한 정약구는 가격이 비싸서 습작용으로는 가약구를 많이 쓰는 편. 추가로 유화물감이 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간격을 두고 떨어지게끔 하는 캔버스 집게가 필요하다. 캔버스가 부담스럽다면 유화용 스케치북을 써도 된다.



2 유화물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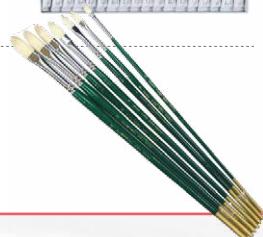
캔버스를 나만의 멋으로 채워줄 갖가지 색의 유화물감. 신한, 르프랑, 원저앤판튼, 쉬민케, 훌베인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브랜드별로 가지고 있는 발색, 점도, 농도가 조금씩 다르므로 자신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자. 기본 24세트를 구매하고 자신이 자주 쓰는 색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

tip 팔레트는 종이 팔레트를 사용해 따로 씻거나 닦을 필요 없이 찢어서 버리면 편하다.



3 봇

유화물감을 캔버스에 올려줄, 필수 도구. 화홍이나 루벤스의 세트봇이 가장 기본적이다. 세밀한 묘사를 위해서는 세밀봇을 사용하고, 넓은 면을 바르거나 젯소를 바를 때는 백붓을 사용한다.





Step. 3



Step. 4

Step. 3 1차 채색

팔레트에 덜거나 섞어 준비해 둔 물감으로 채색을 시작한다. 처음부터 채색을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 물감이 마른 후에 다시 덧바를 수 있으니. 차분히 빈 부분을 없애준다는 느낌으로 꼼꼼히 채워 1차 채색을 완성한다.

Step. 4 2차 채색

1차로 색칠해준 그림이 마른 뒤, 2차 채색을 시작한다. 이번에는 입체감과 원근감에 좀 더 집중해 세밀하게 표현해 준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 그림에서 강조해야 할 부분에 신경을 써 채색한다.



Step. 5

Step. 5 완성하기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림의 밀도를 높여주는 작업을 한다. 채색이 끝난 그림에 멋을 더해주는 작업이다. 유화만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질감 표현을 더해 그림을 완성한다.

4 _____ 봇 세척제, 석유통

유화를 그리는 봇은 물이 아닌 특수 세척 용액으로 헹궈 낸다. 이때 세척액을 부어 봇을 세척할 수 있는 세척통도 필요하다.



5 _____ 용해유, 유통

유화는 말 그대로 기름을 사용해서 그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유화물감에 용해유를 섞어 그려주어야 한다. 용해유는 휘발성유(테라핀)와 건성유(린시드)로 나뉘는데, 이 둘을 어떻게 섞어서 그려주느냐에 따라 그림의 느낌이 달라진다. 그리고 이 용해유를 섞어줄 통도 있어야 한다. 유통에 오일을 섞고 필요한 만큼만 찍어 쓰면 된다.



6 _____ 젯소

석고와 아교가 섞인 혼합물로, 그림을 변형 없이 보존해주는 역할을 한다. 유화를 그리기 전 캔버스에 젯소와 물을 7:3의 비율로 섞은 것을 수평-수직-수평의 순으로 발라준다. 이 작업은 총 세 번을 거쳐야 하는데, 한 번 바르고 마르는 데 30분 정도 소요되므로 총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NEWS[®]

LOCAL FINANCE ASSOCIATION

01 1. 2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무식 및 신년 교례회 개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김동현)가 2020년 시무식을 1월 2일에 개최했다. 김동현 이사장은 시무식에서 경자년 흰쥐의 해인 2020년을 맞아, 현명하고 강인한 흰쥐의 기운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모든 사업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며, 임직원의 노력을 강조함과 동시에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One Team”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인화와 소통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1월 22일에 개최된 전임 이사장 신년교례회에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공제회의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전임 이사장들의 조언을 받는 자리를 가졌다. 전임 이사장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공제회의 모습이 기쁘고 앞으로도 회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축사하였다.



02 2.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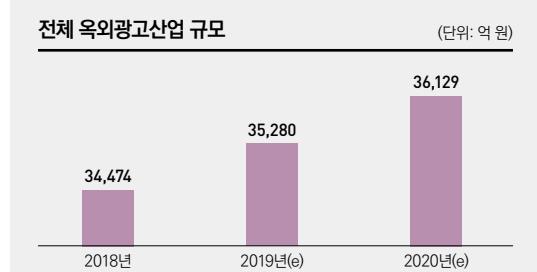
올해 옥외광고산업 시장 규모 3조 6129억 원 전망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옥외광고산업의 시장 규모(매출액)는 3조 4474억 원이었으며 2019년은 3조 5280억 원, 2020년은 3조 6129억 원으로 규모가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김동현)는 옥외광고산업의 시장 규모와 행정 실태를 담은 ‘2019 옥외광고통계’(2018년 기준)를 6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옥외광고통계에 따르면 옥외광고의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디지털 옥외광고 시장 규모는 9661억 원으로, 전체 시장 대비 28.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날로그 옥외광고 시장 규모는 2조 4814억 원(72.0%)으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광고물 부착·이용 대상으로 분류해 살펴보면 건물 부착 광고의 매출액이 1조 2689억 원(36.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여가시설 광고 4041억 원(11.7%), 철도역사 등 교통시설 이용 광고 3986억 원(11.6%), 버스 등 교통수단 이용 광고 3421억 원(9.9%)의 순으로 나타났다. 옥외광고 통계자료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및 법령·조례 개정 등 다양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체 옥외광고산업 규모

(단위: 억 원)





03 2. 26.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리스크 관리위원회 개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김동현)는 2월 26일 2020년 제1차 리스크 및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다. 2019년 자산 운용 성과 평가와 대체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내용에 대한 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증 관련 거시경제 전망과 운용 전략에 대해서 내실 있게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건인 자산운용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전략적 자산배분안에 따른 자산군별 목표 비중에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대체투자자산 공정가치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부실자산에 대한 Exit전략 방안과 연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구조화 상품의 경우 쓸림현상에 유의하여 투자할 것을 주문하였다. 공제회는 이번 리스크 및 성과평가 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등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대응하고, 회원인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공제사업, 회원지원사업, 회계통계사업 등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자산건전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04 3. 20.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20년 최고의 경영대상 수상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김동현)가 제5회 2020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을 수상하였다. 공제회는 리더십경영에서 작년 한해 동안 5대 신사업 등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을 지속적으로 경영해 온 노력을 인정 받아 매경미디어그룹, 매경닷컴, 매경 비즈가 주최하고, 매일경제 M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기술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제5회 2020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에 3월 20일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공제회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5대 신사업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한 후속 조치전략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고유 목적사업인 공제사업을 비롯하여, 자산 운용, 육외광고사업, 회원지원사업, 회계통계사업의 내실화와 사업 확대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 나은 〈지방재정〉을 만듭니다.

열린 마음으로 독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업무개선에 대한 의견,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 에세이 등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만한 글들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글 중 채택된 원고는 〈지방재정〉에 반영되고, 집필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Q U I Z

2020. vol 49

해당 호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문제의 정답을 맞춰주세요.

정답을 5월 15일까지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Q1

지자체가 밸주 계약을 하기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만 888억 원에 다다르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공제회가 지자체 밸주 계약을 대행하여 신속한 계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달 수수료 비용을 절감하며 절감된 수수료는 회원지원 사업의 형태로 지자체에 환원하는 형태의 신사업은 무엇일까?

*힌트: 공제회 성공 인포그래픽

정답 : _____

Q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부서는 무엇일까?

*힌트: 특집 주제

① 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부족하고 편재된 지방세원으로 인한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해 주는 기능을 함

정답 : _____

② 지방재정 분권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를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예산편성부터 재정집행 운영 전반에 걸친 제도적인 장치를 정비하고 강화함

정답 : _____

보내실 곳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16층(공덕동, 지방재정회관)

Tel. 02-3274-2045 Fax. 02-3274-2008 E-mail. lofaevent@naver.com





2020년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뉴스레터’ 서비스**

〈지방재정〉의 뉴스레터 서비스를 통해 최신 지방재정 정책 전문 리포트와 다양한 국내외 재정 이슈, 공제회 소식들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 01** 독자가 원하는 핵심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구성해
- 02** 깔끔하고 가독성 있는 디자인으로
- 03**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전자공문 신청 방법 | 수신자 지정 → 정부 산하기관 및 위원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접수 공문 문의전화 : 02-3274-2045

이메일 신청 방법 | 신규 뉴스레터 신청 접수: 이메일 shchi@lofa.or.kr
신청 시 필수 기입 내용: 성함(소속/직급), 희망 수신 이메일
※ 일반인 독자는 소속/직급 생략 가능

※ 뉴스레터 신규 독자 목록은 격월간 단위로 작성됩니다!



OUT LOOK

새로운 해인 2020년을 맞아
그동안의 업무를 되돌아보고,
지금보다 발전할 미래를 그립니다.